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 · 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2009. 12

성명재 · 전영준



## 서 언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는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체계이다. 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인적 특성과 가구구성 특성에 기초하여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등의 인적공제제도와 함께, 소득유형에 따라 차별적·선별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 등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업소득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득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의 종류와 범위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소득유형간 소득포착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급여 지급시점에서 고용주들이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내역을 과세당국에 신고한다. 그러므로 봉급생활자로 대변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과 그에 대응하는 소득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체계이다.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소득규모를 추적할 수 있을 만큼 과세자료 또한 과세시스템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세부담 회피 또는 절감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소득을 과소신고하려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유형별로 소득자들의 행태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

고 두 가지 유형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면 상이한 소득 포착률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특히 수평적 형평성이 크게 침해된다.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하여 소득포착률이 낮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범위와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양자간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행 소득세 공제체계의 근간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소득유형간 소득세공제체계의 차이가 양자간의 소득 포착률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소득세 과표양성화를 위해 단행되었던 영수증복권제도,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소득세 공제체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공제 차등과, 과세환경 변화에 따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소득세 공제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한양대학교 금융경제대학의 전영준 교수와 함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착수하여 소득세 부담 분포와 공제제도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본원의 이준성 연구원과 변경숙 주임연구행정원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최종보고 세미나에서 값진 코멘트를 해주신 원내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종점검 단계에서 익명의 원외 평가자 두 분으로부터 귀중한 검토의견을 받아 연구보고서의 질적 개선 및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학문적 소신에 의거하여 기술되었는바,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적공제의 비중이 작은 반면에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 등 가구규모 등과 관련이 적은 공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인적공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출산 및 다가구원가구 장려 효과도 작은 편이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도 소득의 종류,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규모 등의 차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유형간 소득공제의 차이에 따른 실효소득세부담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사업소득세에 인적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사업소득포착률이 낮기 때문이다. 즉, 평균적으로 사업소득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수준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근로소득과의 소득세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차등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신고 성실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공제체계는 한 때 소득유형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컸으나 최근 그러한 필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및 사업소득 양성화 문제 등과 연계하여 인적공제 체계를 중심으로 소득세 공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해 가구규모별 세부담의 형평 제고 및 소득종류별 소득세 과세의 형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 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1인당 합산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여타의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사실상 종결된다.

상기의 경우에서 총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소득금액,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차감하고, 비용공제적 성격의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 나. 소득세 공제체계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라는 큰 틀로 정의된다. 세부 구성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로 세분된다. 공제대상의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면, 인적공제와 비용공제적 성격의 공제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소득자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특성(연령, 수, 특정 조건의 충족 여

부)을 기준으로 공제수준이 결정되는 인적공제 항목이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항목이다. 그 밖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다.

### 3.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 가.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구조

##### 1) 소득계층별 소득 및 세부담 분포: 근로·사업 합산 소득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0원 이상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2009년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계층별 합산소득의 분포와 근로·종합소득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합산소득은 소득자 1인당 평균 2,1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519만원으로 합산소득의 70.2%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소득은 646만원으로 합산소득의 29.8%로 추정되었다.

##### 2) 근로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2009년 자료로 환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62만원이고, 근로소득세 부담은 평균 64만 8천원으로 실효근로소득세부담률은 3.14%로 추정되었다.

### 3) 사업소득계층별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사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하였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총액기준으로 2,409만원, 이 중 세무신고시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은 평균 1,810만원이고 그에 따른 1인당 사업소득세 부담은 약 14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 4) 소득계층별 근로·사업소득세 부담의 비교: 수평적 형평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경우 모두에서 소득 대비 세부담 액수가 전체적으로는 증가(우상향)하지만 국지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소득자별로 부양가족 수와 노인·부양가족 수,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 차이 등 소득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 나.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의 과세형평 기여도 평가

사업소득세 분포를 살펴보면서 최근 과표양성화의 급진전이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 형평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개인소득세가 누진과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신고율의 상승은 곧 사업소득세 누진분포구조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층별로 사업소득세 부담의 증가패턴도 비대칭(또는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의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한편,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 증가폭의 절대수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 다. 소득종류별 소득세 과세의 형평 효과 분석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중·저소득층에서는 두 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격차가 축소되어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미 최고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은 최고소득층에서의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더욱 저해하는 형태로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특별공제의 허용이라는 하나의 정책대안이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의 형평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중·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줌으로써 양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

## 4. 정책대안, 모의실험 및 기대효과

### 가. 정책시나리오와 분석 틀

소득공제 개편 시나리오는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문제, 근로소득공제율 조정문제,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부분적 축소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노동공급 효과를 반영한 소득변화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Y &= w \cdot L & (1) \\ &= (1-t) \cdot w \cdot L + t \cdot w \cdot L = DY + TY \end{aligned}$$

단,  $Y$ : 세전소득

$w$ : 세전(시간당)임금률 (분석의 편의상  $w = \bar{w}$  (고정)이라고 가정)

$L$ : 노동공급시간

$t$ : 소득세율

$DY = (1-t) \cdot w \cdot L = (1-t) \cdot Y$ : 세후소득

$TY = t \cdot w \cdot L = t \cdot Y$ : 소득세

세후임금률  $(1-t) \cdot w$ 를  $w^*$ 라고 표시하면  $DY = w^* \cdot L$ 이라고 표현된다.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세후소득함수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ln(w^*)$ 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frac{\partial \ln DY}{\partial \ln w^*} = 1 + \frac{\partial \ln L}{\partial \ln w^*} = 1 + \epsilon, \quad (2)$$

$\epsilon$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소득세율의 변화에 관계없이 세전임금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화율과 노동공급 변화율은 항상 일치한다. 그러므로 소득세 (한계)세율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세후임금률의 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 효과(변화율 기준:  $\frac{\Delta Y}{Y}$ )는 임금탄력성에 세후임금률 변화율을 곱한 꼴로 표현된다.

식 (1)로부터  $\Delta Y = \Delta DY + \Delta TY$ 이다. 그러므로 세율 변화( $t_1 \rightarrow t_2$ )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관계가 도출된다.

$$\Delta DY = \{(t_1 - t_2) + (1 - t_2) \cdot \epsilon \cdot w^o\} Y_1, \quad w^o: \text{세후임금 변화율}$$

$$\Delta TY = \{(t_2 - t_1) + t_2 \cdot \epsilon \cdot w^o\} Y_1$$

$$\Delta Y = \epsilon \cdot w^o \cdot Y_1$$

분석 시나리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시나리오

A01안: 표준공제 100만원 허용

A02안: 보험료 공제 허용

A03안: 의료비 공제 허용

A04안: 교육비 공제 허용

A05안: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근로소득자에 동일하게 적용)

※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시나리오

B01안: 8,800만원 초과 5% → 3%, 1억원 초과 5% → 1%

B02안: 8,800만원 초과 5% → 10%

B03안: 1억원 초과 5% → 10%

B04안: 3천만원 초과 10%, 5% → 10%

※ 기본공제 상향조정 + 근로소득공제 하향조정 시나리오

C01안: 기본공제 150 → 200만원

C02안: 기본공제 150 → 250만원

C03안: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 60%

C04안: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 50%

C05안: C01안 + C03안

C06안: C02안 + C04안

※ 상기 시나리오의 조합 시나리오

D01안: 사업소득세 과세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에 특별공제 허용 + 근로소득공제율 조정(B04안) + 기본공제 150만원 → 200만원 및 근로소득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 60% (C05안)

## 나. 기대효과

### 1) 사업소득자 특별공제 허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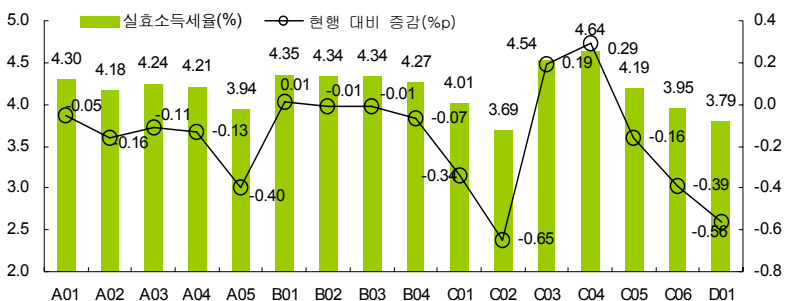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범위를 확대할수록 인별과세소득이 약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만, 약 8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무겁게 나타나는 세부담 측면에서의 역차별 현상이 더욱 확대된다.

그러므로 상기의 시나리오로부터 시사점을 찾는다면 인별과세소득 수준이 약 5천만~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화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양자간의 소득세부담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면 근로·사업소득세의 가구당 실효세부담률은 4.35%에서 3.94~4.30%([그림1] 참조)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시나리오별 실효소득세율의 변화효과

(단위: %, %p)



## 2)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방안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B01)의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양자간의 세부담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이 1억원 이상인 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여 양(+)<sup>1)</sup>의 값을 가지는 사업소득세 부담과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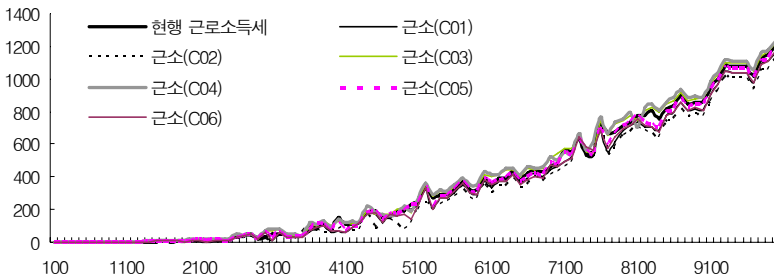
## 3)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하향조정 방안

B05~B06안을 살펴보면, 현행 세제하에서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세부담이 소폭 하락하여 각각의 세부담 곡선이 현행보다 조금 아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참조).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축소효과만 나타남으로써 현행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낮다([그림 3] 참조).

[그림 2]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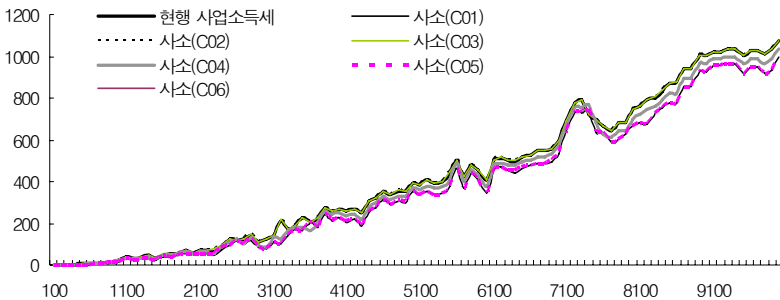
(단위: 만원)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에서 60%로 인하하는 C05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세 부담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사업소득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양자간의 세부담 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3]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I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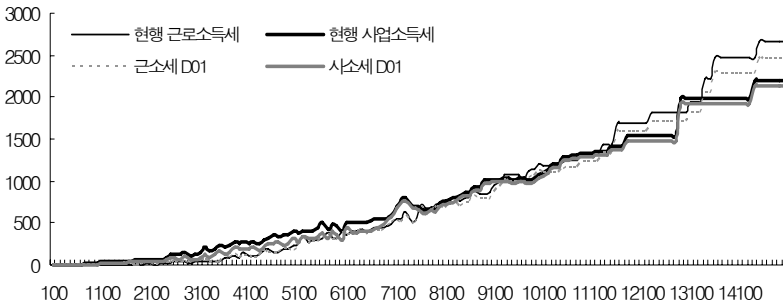
#### 4) 정책조합

최근의 과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 제고의 관점에서 공제체계의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사업소득세의 과표양성화 진전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의 차등폭 축소, 그리고 고액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 세부담 역차별 현상의 완화를 위한 최고한계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조정, 기본공제의 중하위 근로소득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 하향조정 등의 방향으로 압축된다. 이런 배경하에서 D01안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D01안에서 특징적인 점은,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근로소득자

와 동일하게 적용해주되, 고액소득자에서의 근로소득자 역차별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특별공제의 허용범위를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4] 정책조합(D01)의 효과

(단위: 만원)



#### 다. 정책시사점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는 중상위소득자 및 그 이하 구간에서의 상대적인 사업소득세 부담 과중, 고소득자에서의 상대적인 근로소득세 부담의 과중(또는 역차별) 현상이 문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공제 축소가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공제 조정을 통해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는 D01안이 논리적·실증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세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제약조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변화된 과세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유형간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화함에 있어 이 문제를 한 번의 개편으로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맺음말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제고되면서 추정소득이 대략 7천만 원 부근 및 그 이하의 소득수준에서는 사업소득 세부담이 더 무거운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범위의 확대가 요망되며, 의료비 특별공제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최고근로소득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액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 격차문제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인적공제를 확대하되 중·저소득 수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약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리만으로 소득세 소득공제 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모두 제기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양성화에 다른 세부담의 역차별 가능성과 고액근로소득자들의 역차별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 목 차

I. 서론	27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29
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29
2. 소득세 공제체계	31
가. 종류	31
나. 주요 소득공제의 내용	31
3. 소득세 세율체계	35
4. 소득세 공제 및 세율체계 개편 관련 기존 연구 검토	39
가. 세율 체계	39
나.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ation)	41
5. 소득공제의 항목별 의의 및 기존 연구 검토	44
가. 인적공제	44
나. 근로소득공제	47
다. 특별공제	48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56
1.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체계	56
가. 미국	56
나. 영국	62
다. 호주	68
라. 독일	71
마. 프랑스	74
바. 스웨덴	77

사. 핀란드 .....	80
아. 노르웨이 .....	83
자. 일본 .....	86
차. 이탈리아 .....	89
카. 캐나다 .....	91
2. 시사점 .....	95
가. 인적공제 .....	95
나. 근로소득공제 .....	97
다. 특별공제 .....	99
라. 세액공제 .....	100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	102
1. 분석자료와 범위, 방법 .....	102
가. 분석자료와 범위 .....	102
나. 분석방법 .....	108
2.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구조 .....	109
가. 소득계층별 소득 및 세부담 분포: 근로·사업 합산 소득 기준 .....	109
나. 근로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	112
다. 사업소득계층별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	114
라. 소득계층별 근로·사업소득세 부담의 비교: 수평적 형평을 중심으로 .....	115
3.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의 과세형평 기여도 평가 .....	119
가. 비교분석 .....	119
나. 원인분석 .....	121
4. 소득종류별 소득세 과세의 형평 효과 분석 .....	123
가. 문제의 제기 .....	123
나.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 허용시의 효과분석 .....	124

5. 가구규모별 소득세 부담 구조 .....	127
가.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	127
나. 가구규모별 실효소득세부담 상대구조 .....	132
6. 소득단계별 소득분포 .....	136
<b>V. 정책대안 모의실험 및 기대효과 .....</b>	<b>138</b>
1. 정책시나리오와 분석틀 .....	138
가. 공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분석틀 .....	138
나. 개편 시나리오 .....	143
2. 기대효과 .....	144
가. 사업소득자 특별공제 허용 방안 .....	144
나.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방안 .....	157
다.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하향조정 방안 .....	159
라. 정책조합 .....	163
3. 정책시사점 .....	165
<b>VI. 맺음말 .....</b>	<b>167</b>
<b>참고문헌 .....</b>	<b>171</b>
<b>부록: 기타 표 .....</b>	<b>177</b>

## 표목차

〈표 II-1〉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	32
〈표 II-2〉 근로소득 공제제도 .....	33
〈표 II-3〉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천 .....	34
〈표 II-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	35
〈표 II-5〉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	38
〈표 II-6〉 DIT(Dual Income Taxation) 실시 사례 .....	42
〈표 III-1〉 미국의 소득세액 산출과정 .....	56
〈표 III-2〉 IRA 출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적격기업연금 가입한 경우) .....	58
〈표 III-3〉 공제 한도 유무에 따른 항목 공제 .....	59
〈표 III-4〉 미국의 소득세율체계(2008) .....	60
〈표 III-5〉 영국의 소득세액 산출과정 .....	62
〈표 III-6〉 소득의 종류 및 범주 .....	63
〈표 III-7〉 연령에 따른 공제 비율 .....	65
〈표 III-8〉 공제(Allowance)의 종류 .....	66
〈표 III-9〉 영국의 소득세율(2008) .....	67
〈표 III-10〉 호주의 소득세 부과체계 .....	68
〈표 III-11〉 호주의 소득세율(2008) .....	69
〈표 III-12〉 독일의 소득세 과세체계 .....	72
〈표 III-13〉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	74
〈표 III-14〉 프랑스의 소득세율(점수 1점당) .....	76
〈표 III-15〉 획득소득세액공제 산정방식 .....	77

〈표 III-16〉 기본적 공제액 산정방식 .....	78
〈표 III-17〉 스웨덴의 국세 개인소득세율(2008) .....	79
〈표 III-18〉 Special amount 산정공식(65세 미만) .....	80
〈표 III-19〉 핀란드의 국세 개인소득세율(2008) .....	82
〈표 III-20〉 노르웨이의 개인소득 부가세율(2008) .....	84
〈표 III-21〉 보험금 공제액(생명보험, 개인연금) .....	88
〈표 III-22〉 일본의 국세 소득세율 .....	88
〈표 III-23〉 소득세 한계세율(이탈리아) .....	89
〈표 III-24〉 PAYE tax credit .....	90
〈표 III-25〉 부양가족 세액공제액 .....	90
〈표 III-26〉 캐나다의 국세소득세율 .....	91
〈표 III-27〉 지방세 소득세율(온타리오주) .....	94
〈표 IV-1〉 2009년 환산 가계조사자료의 기초통계(가구 기준) ..	107
〈표 IV-2〉 소득유형별 과세자·면세자비율 .....	107
〈표 IV-3〉 합산소득분위별 근로·사업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개인 기준) .....	110
〈표 IV-4〉 소득종류별 중위수, 평균, 표준분차(개인 기준) .....	112
〈표 IV-5〉 근로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개인 기준) .....	113
〈표 IV-6〉 사업소득분위별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개인 기준) .....	115
〈표 IV-7〉 사업소득세에도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특별공제 허용시의 소득세 부담(개인 기준) .....	126
〈표 IV-8〉 가구원 수별 근로·종합소득 분포(가구 기준) .....	128
〈표 IV-9〉 가구원 수별 가구주 평균연령 분포 .....	129
〈표 IV-10〉 가구원 수별 근로·사업소득세 분포(가구 기준) .....	130
〈표 IV-11〉 가구원 수별 과세소득 대비 근로·사업소득세	

실효세율 분포(가구 기준) .....	131
〈표 IV-12〉 가구원 수별 전체 평균 소득세 대비 소득세 상대비 ÷ 전체 평균총소득 대비 총소득 상대비의 분포(가구 기준) .....	134
〈표 IV-13〉 가구원 수별 가구당 평균 취업인 수 분포(가구 기준) .....	135
〈표 IV-14〉 소득단계별 소득 및 소득구성 항목 분포 .....	137
〈표 V-1〉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소득 및 소득변화 분포 .....	147
〈표 V-2〉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근로 ·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	149
〈표 V-3〉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근로 · 사업소득세 부담의 현행 대비 변화율 분포 .....	151
〈표 V-4〉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근로 · 사업소득세 실효세 부담률 부담 분포 .....	153
〈표 V-5〉 소득단계별 세전 · 세후소득 지니계수 및 변화율 모의 실험 결과 .....	155
〈부표 1〉 가구원 수별 전체 평균 소득세실효세율 대비 소득세실효 세율 상대비 ÷ 전체 평균총소득 대비 총소득 상대비의 분포(가구 기준) .....	177
〈부표 2〉 가구원 수별 총소득 분포(가구 기준) .....	178

## 그림 목차

[그림 II-1] 종합소득과세체계(2009) .....	30
[그림 III-1] 미국의 EIC 급여구조(부부합산신고, 적격자녀 2인, 2008) .....	61
[그림 IV-1] 가계조사자료의 개인소득자별·소득(세) 유형별 분포 · 106	
[그림 IV-2]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의 차이 (개인 기준) .....	117
[그림 IV-3] 사업소득 포착률 변화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비교 (개인 기준) .....	121
[그림 IV-4] 사업소득세 특별공제 허용시의 소득세 부담 비교 (개인 기준) .....	125
[그림 IV-5] 가구원 수별 근로·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실효세부담률 분포 (2008년 가구 기준) .....	127
[그림 V-1]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 허용시의 효과 .....	152
[그림 V-2] 시나리오별 실효소득세율의 변화효과 .....	152
[그림 V-3]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율 개편시의 효과 .....	159
[그림 V-4]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 ···	162
[그림 V-5]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I ···	162
[그림 V-6]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II ···	163
[그림 V-7] 정책조합(D01)의 효과 .....	164



# I.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적공제의 비중이 작은 반면에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 등 가구규모 등과 관련이 적은 공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가구규모(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적공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출산 및 다가구 원가구 장려 효과가 작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수준을 극복하고 노인문제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 공제체계의 기본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도 소득의 종류,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규모 등의 차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유형간 소득공제의 차이에 따른 실효소득세 부담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를테면 사업소득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별로 없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크게 과중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소득세에 인적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 그에 대한 근본 이유는 사업소득포착률이 낮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사업소득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수준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근로소득과의 소득세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차등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신고 성실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공제체계는 한 때 소득유형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컸으나, 최근 그러한 필

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즉, 2000년대 이래 과표양성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른 한계세율의 급격한 상승이 자칫 추가적인 과표양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및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문제 등과 연계하여 인적공제체계를 중심으로 소득세 공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해 가구규모별 세부담의 형평 제고 및 소득종류별 소득세 과세의 형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공제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구규모 또는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정도와 소득세 부담 간의 관계 등도 살펴본다. 아울러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공제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의 1단계로서 소득세 부담구조를 살펴본다. 가구규모와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수준과 연계하여 소득세 부담 구조의 특징과 소득유형간 과세의 형평 문제 등도 함께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시의 효과분석과 함께 사업소득 과표양성화에 따른 공제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책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울러 인적공제 확대시 예상되는 출산 및 다가구원가구 등의 장려효과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부수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세 부담 구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 봄으로써 지속적인 고령화의 세 부담 변화효과를 예측한다.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 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1인당 합산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sup>2)</sup>된다. 여타의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사실상 종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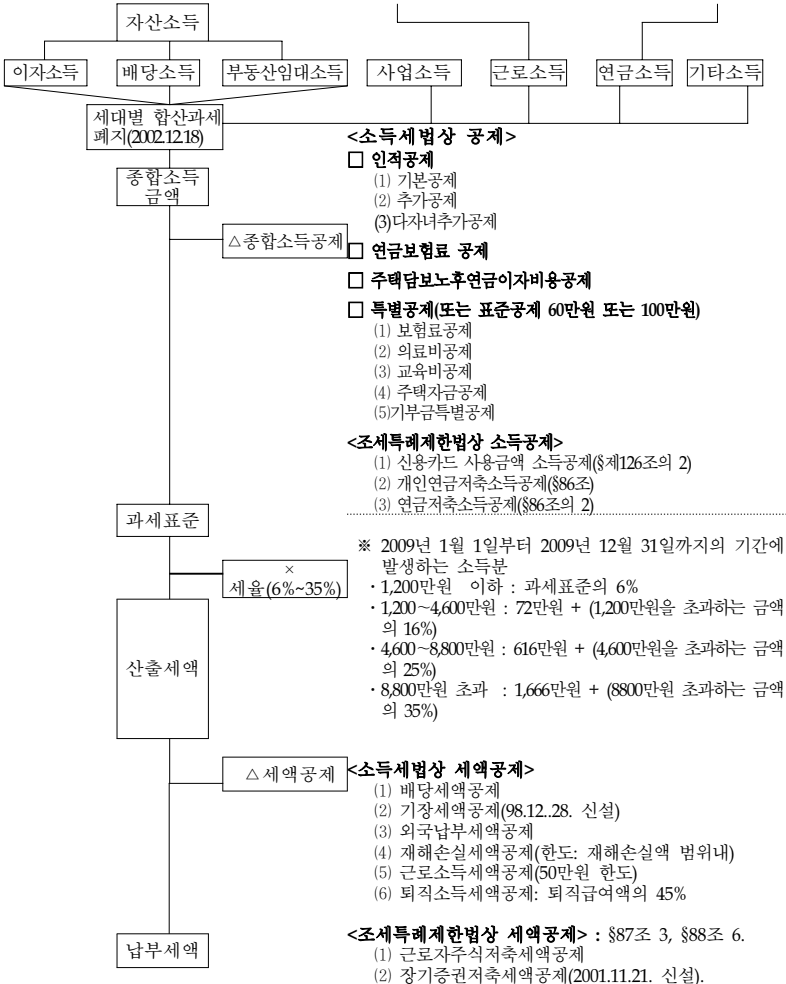
상기의 경우 중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총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소득금액,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차감하고, 비용공제적 성격의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세율 등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

2)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림 II-1] 종합소득과세체계(2009)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 일 10만원)	연금소득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80%</li> <li>500~1,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초과분의 50%</li> <li>1,500~3,0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초과분의 15%</li> <li>3,000~4,500만원 : 1,125만원+ 3000만원 초과분의 10%</li> <li>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4,500만원 초과분의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0만원 이하: 전액공제</li> <li>350~700만원: 350만원+ 350만원 초과분의 40%</li> <li>700~1,400만원: 490만원+ 700만원 초과분의 20%</li> <li>1,400만원 초과: 630만원+ 1400만원 초과분의 10%</li> </ul>



## 2. 소득세 공제체계

### 가. 종류

종합소득세의 소득구성 항목 중 소득(또는 소득세 부담) 비중이 가장 큰 소득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소득공제 체계도 이들 두 가지 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라는 큰 틀로 정의된다. 세부 구성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로 세분된다<sup>3)</sup>. 공제대상의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면, 인적공제와 비용공제적 성격의 공제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소득자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특성(연령, 수,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을 기준으로 공제 수준이 결정되는 인적공제항목이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항목이다. 이 중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성실사업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별공제를 허용해주지 않으며, 대신 60만원 정액의 표준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그 밖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체도가 있다.

### 나. 주요 소득공제의 내용

근로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또는 근로·사업소득세<sup>4)</sup>)의 공제항목에서 세수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이다. 2009년 현재 근로소득세

3) 각각의 소득공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논의한다.

4) 종합소득세 세수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차지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요에 따라 용어상 종합소득세와 근로·사업소득세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의 공제율은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5~80%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는 무제한이다. 2008년까지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100%에 이르렀으나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하향조정되었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율의 인하와 기본공제의 인상이 정확히 일치하여 상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이보다 많은 가구, 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득공제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단위: 만원)

	1982	1983~1988	1989~1990	1991~1992	1993	
구간별 공제율	88 이하: 전액 88~300: 20% 300~ : 10%	94 이하: 전액 94~300: 20% 300~ : 10%	140 이하: 전액 140~400: 25% 400~ : 15%	230 이하: 전액 230~ : 30%	250 이하: 전액 250~ : 30%	
공제한도 (상한)	170	170	230	490	600	
	1994	1995	1996	1997~1998	1999~2000	
구간별 공제율	270 이하: 전액 270~ : 30%	310 이하: 전액 310~ : 30%	~400: 전액 400~ : 30%	~500: 전액 500~ : 30%	~ 500: 전액 500~1500: 40% 1500~ : 10%	
공제한도 (상한)	620	690	800	900	1200	
	2001	2002~2003.6	2003.7~2008	2009~현재		
구간별 공제율	~ 500: 전액 500~1500: 40% 1500~4500: 10% 4500~ : 5%	~ 500: 전액 500~1500: 45%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 500: 전액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 500: 80%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공제한도 (상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2003년 7월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500만~1,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45/100에서 50/100으로 변경됨. 경과조치로 2003년 소득은 공제율을 475/1000로 함.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33

〈표 II-2〉 근로소득 공제제도

공제항목 (항목수)	내용	
근로소득 공제	· 500만원 이하 : 80%	
	· 500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	
	· 1,500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3,000 ~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인적공제 (7개)	기본공제 본인·연간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64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65세 이상 경로자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인 50만원 + 2인초과 1인당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출산·입양 당해연도 200만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부담금 전액	
특별공제 등(13개)	보험료 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500만원 한도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사이버대학 포함): 700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200만원 한도	
	주택자금(3개) (1천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불입액 : 40%, 300만원 입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40%,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전액, 1천만원	
	기부금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20%(’09년까지는 15%)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등 사용액 - 총급여액의 20%)× 20%(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의 10%	
	연금저축, 퇴직연금 (2개)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합계 3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출연금 전액(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50만원 초과분 30%(50만원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의 10/11 상당액(기부금 10만원 한도)		
기타 을근납세조합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표 II-3〉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변천

(단위: 만원)

	1982	1983~1988	1989	1990 상반기	1990.7
구간별 공제율	월급여 30~40: 10%	월급여 30~40: 20% 월급여 40~50: 10%	폐지	산출세액의 20%	월급여 ~100: 40% 월급여 100~: 30%
공제한도	-	-	-	30	80
	1991~1992	1993~1996	1997~2001	2002~2003.6	2003.7~현재
구간별 공제율	연급여액 3,60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전근로자)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 ~50: 45% 산출세액 50~: 30%	산출세액 ~50: 45% 산출세액 50~: 30%	산출세액 ~50: 55% 산출세액 50~: 30%
공제한도	50	50	60	40	50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55% 또는 30%의 세율로 세액공제해주는 공제항목이다. 세액공제의 상한을 50만원으로 한정하여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추가적으로 많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으로부터 공제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공제해준다.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등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차원에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 3. 소득세 세율체계

종합소득세 세율체계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소득세율 구간은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원 초과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간별 세율수준은 각각 6%, 16%, 25%, 35%이다. 2008년 말 세법개정시에 2010년부터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여 각각 6%, 15%, 24%, 33%로 조정될 예정이다.

〈표 II-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982~1988	1989~1990
기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1인당 30만원)</li> <li>· 배우자공제(1인당 42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1인당 2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1인당 48만원)</li> <li>· 배우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li> </ul>
추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3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1인당 36만원)</li> </ul>
	1991~1992	1993
기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1인당 48만원)</li> <li>· 배우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1인당 60만원)</li> <li>· 배우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li> </ul>
추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주공제(1인당 5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주공제(1인당 54만원)</li> </ul>
	1994	1995
기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1인당 72만원)</li> <li>· 배우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1인당 72만원)</li> <li>· 배우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li> </ul>
추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주공제(1인당 5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공제(1인당 54만원)</li> <li>· 경로우대공제(1인당 48만원)</li> <li>· 부녀자세대주공제(1인당 54만원)</li> </ul>

〈표 II-4〉의 계속

	1996~2001	2002~2003
기본 공제	1인당 100만원 · 대상 : ①본인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인자) ④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100만원 · 대상 :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공제	1인당 50만원 ·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중 ① 장애인 ② 경로자(65세 이상)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근로소득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단, ①, ②의 경우, 100만원) ·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② 장애인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소수자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96.8.14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004	2005~2006
기본 공제	1인당 100만원 · 대상 :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100만원 · 대상 :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공제	1인당 100만원(단, ①의 경우 70세 이상인 자 150만원, ③의 경우 50만원) ·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② 장애인 ③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여성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 대상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② 장애인(1인당 200만원) ③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여성(1인당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1인당 100만원)
소수자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004년과 동일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37

〈표 II-4〉의 계속

	2007	2008
기본 공제	2005~2006년과 동일	2005~2006년과 동일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대상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② 장애인(1인당 200만원)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 자가 있는 여성(1인당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1인당 1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 대상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② 장애인(1인당 200만원) ③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 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여성(1인당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1인당 100만원) 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 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 공제	· 기본공제자녀 2인인 경우 50만원 · 기본공제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	2007년과 동일
	2009~	
기본 공제	1인당 150만원 · 대상 :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 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대상 중 ① 경로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② 장애인(1인당 200만원) ③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 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여성(1인당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아, 위 탁아동 (1인당 100만원) 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 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 공제	2007년과 동일	

〈표 II-5〉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기간	1982 (17단계, 6~60%)	1983~1988 (16단계, 6~55%)
서울 및 서울 구간	120만원 이하 : 6%	180만원 이하 : 6%
	120~ 180만원 : 7만 2천원 + 7%	180~ 250만원 : 10만 8천원 + 8%
	180~ 240만원 : 11만 4천원 + 8%	250~ 350만원 : 16만 4천원 + 10%
	240~ 300만원 : 16만 2천원 + 10%	350~ 480만원 : 26만 4천원 + 12%
	300~ 390만원 : 22만 2천원 + 12%	480~ 630만원 : 42만원 + 15%
	390~ 480만원 : 33만원 + 15%	630~ 800만원 : 64만 5천원 + 18%
	480~ 600만원 : 46만 5천원 + 18%	800~1,000만원 : 95만 1천원 + 21%
	600~ 840만원 : 68만 1천원 + 22%	1,000~1,250만원 : 137만 1천원 + 24%
	840~1,140만원 : 120만 9천원 + 26%	1,250~1,550만원 : 197만 1천원 + 27%
	1,140~1,500만원 : 198만 9천원 + 30%	1,550~1,900만원 : 278만 1천원 + 31%
	1,500~1,900만원 : 306만 9천원 + 34%	1,900~2,300만원 : 386만 6천원 + 35%
	1,900~2,400만원 : 442만 9천원 + 38%	2,300~2,900만원 : 526만 6천원 + 39%
	2,400~3,000만원 : 632만 9천원 + 42%	2,900~3,700만원 : 760만 6천원 + 43%
	3,000~3,800만원 : 884만 9천원 + 48%	3,700~4,700만원 : 1,104만 6천원 + 47%
3,800~4,800만원 : 1,252만 9천원 + 50%	4,700~6,000만원 : 1,574만 6천원 + 51%	
4,800~6,000만원 : 1,752만 9천원 + 55%	6,000만원 초과 : 2,237만 6천원 + 55%	
6,000만원 초과 : 2,412만 9천원 + 60%		
기간	1989~1990 (8단계, 5~50%)	1991~1992 (5단계, 5~50%)
서울 및 서울 구간	250만원 이하 : 5%	400만원 이하 : 5%
	250~500만원 : 12만 5천원 + 10%	400~1,000만원 : 20만원 + 16%
	500~800만원 : 37만 5천원 + 15%	1,000~2,500만원 : 116만원 + 27%
	800~1,200만원 : 82만 5천원 + 20%	2,500~5,000만원 : 521만원 + 38%
	1,200~1,700만원 : 162만 5천원 + 25%	5,000만원 초과 : 1,471만원 + 50%
	1,700~2,300만원 : 287만 5천원 + 30%	
	2,300~5,000만원 : 467만 5천원 + 40%	
	5,000만원 초과 : 1,547만 5천원 + 50%	
기간	1993 (6단계, 5~50%)	1994~1995 (6단계, 5~45%)
서울 및 서울 구간	400만원 이하 : 5%	400만원 이하 : 5%
	400~ 800만원 : 20만원 + 10%	400~ 800만원 : 20만원 + 9%
	800~1,600만원 : 60만원 + 20%	800~1,600만원 : 56만원 + 18%
	1,600~3,200만원 : 220만원 + 30%	1,600~3,200만원 : 200만원 + 27%
	3,200~6,400만원 : 700만원 + 40%	3,200~6,400만원 : 632만원 + 36%
	6,400만원 초과 : 1,980만원 + 50%	6,400만원 초과 : 1,784만원 + 45%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39

〈표 II-5〉의 계속

기간	1996~2001 (4단계, 10~40%)		2002~2004 (4단계, 9~36%)	
세울 및 세울 구간	1000만원 이하	: 10%	1,000만원 이하	: 9%
	1,000~4,000만원	: 100만원 + 20%	1,000~4,000만원	: 90만원 + 18%
	4,000~8,000만원	: 700만원 + 30%	4,000~8,000만원	: 630만원 + 27%
	8,000만원 초과	: 1,900만원 + 40%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 + 36%
기간	2005~2007 (4단계, 8~35%)		2008 (4단계, 8~35%)	
세울 및 세울 구간	1,000만원 이하	: 8%	1,200만원 이하	: 8%
	1,000~4,000만원	: 80만원 + 17%	1,200~4,600만원	: 96만원 + 17%
	4,000~8,000만원	: 590만원 + 26%	4,600~8,800만원	: 674만원 + 26%
	8,000만원 초과	: 1,630만원 + 35%	8,800만원 초과	: 1,766만원 + 35%
기간	2009 (4단계, 6~35%)		2010~ (4단계, 6~33%)	
세울 및 세울 구간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72만원 + 16%	1,200~4,600만원	: 72만원 + 15%
	4,600~8,800만원	: 616만원 + 25%	4,600~8,800만원	: 582만원 + 24%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35%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 33%

### 4. 소득세 공제 및 세율체계 개편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가. 세율 체계

세율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구단위 과세와 개인단위 과세 선택의 문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또는 분류과세) 선택의 문제, 누진과세와 비례과세의 문제, 그리고 누진과세시 세율구조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구단위 과세와 개인단위 과세 선택의 문제는 공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의 단위가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단위 과세가 타당하다. 가구별 과세는 부부합산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구원별 점수제를 통해 가구별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구소득을 경제적 측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구단위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다 공정한 취급이 가능하다. 재산의 침실이전(bedroom shift)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이혼율을 고려하면 재산의 침실이전 현상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합산과세는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부부합산과세와 개별신고에 대한 세율 및 공제항목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결혼 유무가 소득세 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부부합산과세보다는 개인단위과세가 합당할 수 있다. 부부합산과세하에서는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한계세율이 부과된다. 반면에 개별과세하에서는 주소득자보다 보조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주소득자보다 보조소득자의 노동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경우 개별과세가 램지규칙(Ramsey Rule)에 부합되는 과세일 수 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의 문제 역시 공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상이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세원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다. 즉, 근로소득, 자본소득을 유발하는 경제행위의 가격탄력성이 다르다. 자본소득 내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을 발생하는 노동공급, 저축, 자산 거래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다. 최근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형평성을 중요시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구국가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DIT)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나.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ation)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배경은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누진과세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자본에 대해서 저율 단일과세 함으로써 자본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르딕(Nordic) 국가에서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덴마크(1987), 핀란드(1992), 노르웨이(1992), 스웨덴(1991)). 2001년에 네덜란드에 DIT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본소득세 대신 부유세(wealth tax)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는 2003년에 DIT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자본소득과 개인소득으로 분리한다.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사업이윤(주식수익), 배당금, 자본이득(capital gain), 이자소득, 임대료 등이 해당되며 비례세로 과세한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wage and salary), 부가급여, 연금소득, 사회보장급여 등이 해당되며 누진과세한다.

전통적으로 공평성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노르딕(Nordic) 국가에서 DIT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르딕국가들은 소득개방경제에 가까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세가 과중할 경우 자본의 국외유출에 취약하고, 누진과세의 왜곡을 줄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민간저축의 증대 필요성이 있으며, 각종 비과세, 공제 등을 줄여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조세회피(tax arbitrage)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누진과세와 비례과세의 선택 문제에 있어 소득세제는 전통적으로 누진과세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단일세율체계를 중심으로 단일세율 소득세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평률세제(Flat Tax)와 같은 단일세율체계가 도입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징세비용의 절감효과로서 조세체계의 단순화, 납세자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Postcard Tax Return Form)등을 기대

할 수 있다. 효율성 제고의 효과로서 과세표준 확대에 따른 단일 한계세율의 하락은 노동공급 증가 등 경제적 효율성 증진,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자본축적에 도움을 주며, 자본과세의 문제점을 완화(이중과세, 투자재원의 유형에 따른 차등과세, 법인과 비법인 소득의 차등과세, 자산종류별로 차등적인 투자유인책,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현행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시켜 준다.

〈표 II-6〉 DIT(Dual Income Taxation) 실시 사례

(단위: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도입 연도	1987	1992	1992	1991
자본소득세				
법인	32	28	28	28
비법인	39.7~59	28	28	30
개인소득세	39.7~59	22.5~54.5	28~41.5	31~56
법인이윤 증과세방지 여부				
배당	Yes	Yes	Yes	No
사내유보	No	No	Yes	No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	Yes	Yes	Yes	Yes
이자	No	No	No	No
로열티	Yes	Yes	No	No

그렇지만 평률세제와 같은 단일세율체계가 도입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대폭 허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부담이 거의 불변하게 된다. 중산층은 한계세율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43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낮아진다.

누진과세시 한계세율 구조에 대해서 Edgeworth(1959/1897)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를 상정하여 최적 한계세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용한 소득의 양이 고정되어 있어 소득세는 가처분소득을 사회구성원간 분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고, 개인의 소득에 대한 효용은 동일하며,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Stern(1987)은 선형소득세제를 상정하여 한계소득세율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소득이 0일 경우 일정 수준의 음(-)의 소득세를 허용하는 최적선형소득세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근로유인을 고려한다. 즉, 총소득이 주어진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세제에 따른 근로소득 규모 효과를 명시적으로 감안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여가와 소득간의 대체관계가 약하게 존재하며, 필요한 세수가 소득의 약 20%라는 가정하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한계세율은 19%가 된다. 둘째,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형평성을 더 많이 고려할수록 최적한계세율은 높아지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Mirrlees(1971)는 최적한계세율 구조는 소득의 증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계세율의 상향조정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선형 누진세제를 제안하였다. 이때 한계세율을 높이면 효용수준이 하락한다. 효용수준이 하락하므로 사회후생이 높은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즉,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면 안 된다. 또한 인구분포가 높은 소득구간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낮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한계소득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조세수입이 클수록 높은 한

계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한계세율을 높임으로써 조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한계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은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소득 상승에 따른 한계세율 구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경우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중간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Gruber and Saez(2002)은 가장 높은 소득구간의 사람들에게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선형 누진세제를 주장하였다. 극단적인 경우로 최고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이 0이 되면,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최고한계세율이 0이 되면 여가와 소득 사이에 왜곡이 없어진다. 또한 최고소득 구간에서 한계세율이 0이 되면 낮은 소득구간보다 높은 소득구간까지 노동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최고소득계층의 후생수준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최고소득계층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 소득구간에서 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낮은 소득구간에서 과세를 하므로) 소득세 수입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원을 늘릴 수 있어 전 소득계층에 걸쳐서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 5. 소득공제의 항목별 의의 및 기존 연구 검토

### 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공제이며, 이는 가구원의 증가에 따른 생계비 지출에 의한 필요지출액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비재량적 지출 즉, 어쩔 수 없이 지출하여야 하는 지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45

비재량적 생계비의 증가를 반영하여 인적공제 금액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인적공제의 이유를 주로 자녀양육비로 인한 지불능력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sup>5)</sup>. 자녀양육에는 비재량적 비용이 소요되며 과세표준이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적공제(1인당 100만원<sup>6)</sup>)와 미국의 인적공제(3,500달러) 수준은 자녀양육비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용이 왜 비재량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종교는 산아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휴가를 선택한 납세자와 자녀양육을 선택한 납세자 중에서 왜 후자만 조세감면 대상이되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다<sup>7)</sup>.

인적공제는 과세단위 이슈와 관련하여 최적조세이론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가구별 과세체계, 예들 들어 부부합산과세체계하에서는 인적공제가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부담의 감소효과가 일정하다. 그러나 개별과세체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주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향이 있다<sup>8)</sup>. 따라서 주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주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공급이 높은 부소득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

---

5) Rosen and Gayer(2007) 참조.

6) 2008년 현재 수치이다. 2009년부터는 1인당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7) 자녀양육에서 양(+)<sup>5)</sup>의 외부성이 발생한다면, 인적공제가 일종의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보조금의 형태가 소득공제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진세제하에서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액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이러한 현상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공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증진 측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공제의 증액은 이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인적공제제도를 합리화하기 어려우나, 수평적 공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가구소득은 두 가구가 동일하나 주소득자의 소득과 부소득자의 소득 차이가 각기 다른 경우를 상정해보자. 인적공제 금액은 대부분 소득이 많은 주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가구 전체의 소득세 부담액은 인적공제 적용 후 그 차이가 줄어들어 수평적 공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인적공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의 의미도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누진도가 낮은 세율체계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누진도가 높은 세율체계하에서는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누진도가 약해짐에 따라 이러한 세부담 경감효과의 차이가 줄어든다. 극단적으로 세율체계가 단일세율체계라면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세부담 경감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세 유효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과세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음(-)의 소득세를 적용하면 면세점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 평균유효세율이 음(-)으로 나타나게 된다<sup>9)</sup>.

최근의 인적공제제도는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운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추가공제 중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인양공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 부양, 장애인 부양, 그리고 출산 등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인적공제는 기회비용을 경감하여 해당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의 인적공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9) 이러한 논의는 Friedman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논의와 Hall and Rabushka (1995)에서도 이루어졌다.

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공제 금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비재량적 생계비 증가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양인구 수가 증가하더라도 생계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가구원 수에 비례적으로 인적공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행정비용과 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크게 근로를 위한 비용 보전과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상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사업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소득의 경우에는 비용 차감의 여지가 없다. 많은 나라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용 차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출장비용, 교통비용, 교육투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무행정비용을 불가피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관리가 충분히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영업자의 소득 과소신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이 포착되고 있다. 소득세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과도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허용된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세무행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비용공제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하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40~50%에 이르는 근로소득자가 면세자로 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과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근로장려 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저소득근로자의 소득 파악 및 세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sup>10)</sup>.

근로소득공제가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의 비교적 높은 누진도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은 매우 낮은 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면세점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였으나 소득이 면세점을 상회하여 증가함에 따라, 특히 평균소득자와 평균소득자 소득의 1.5배 정도되는 소득구간에서 소득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sup>11)</sup>.

#### 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특정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을 경감하는 의미를 지닌다. 만일 경제활동을 위해  $P$ 만큼의 기회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이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할 경우 한계세율이  $t$ 인 사람은 기회비용이  $P(1-t)$ 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공제는 공제와 관련된 활동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누진소득세제하에서는 기회비용 감소폭이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진다.

특별공제의 또 다른 의미는 특정 소비 또는 투자활동의 경우 모든

10) 전병목·이상은(2006) 참조.

11) 전영준·김재진(2001) 참조.

가구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의 가구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큰 소비 또는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인적공제의 필요성을 자녀양육비라는 비재량적 지출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과 같은 비재량적 지출 성격의 지출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를 특별공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특별공제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연금소득 공제 등을 들 수 있다. 보험료 공제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강제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지출은 일종의 비재량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의 유인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책임보험 이상의 보장성을 요구하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가입의 기회비용을 경감하는 이 공제항목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나 사망 또는 사고 등의 위험 발생이 유발하는 경제적 위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이 자신이 직면하게 될지 모른 위험의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비하지 않거나 또한 위험 공유에 대한 선호가 약할 때 정부가 나서서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sup>12)</sup>. 만일 정보가 완전하여 보험에 충분한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시장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람들이 위험

12) Rosen and Gayer(2007) 참조.

의 공유에 대한 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람들의 선호는 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므로, 만일 이에 왜곡요인, 예를 들어 위험발생시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행위가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위험발생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외부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의료비 공제는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지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질병 발생시 대규모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진료비의 경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비 지출은 많은 경우 비재량적 지출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의 필요성은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영국과 같이 국가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의 필요성이 작다. 그러나 국가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증질환 발생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은 보험자(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제3자 지불과 환자 본인부담금(out-of-pocket money)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비급여 대상 진료가 많다. 또한 건강보험비급여 대상 진료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비 공제가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비용 경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진료비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위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51

라 소규모 진료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항목의 경제적 필요성은 교육비가 비재량적 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비라면서 이 항목에 대한 공제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에 대해 재량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육비 공제를 이해할 수 있다. 교육비는 흔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간주된다. 교육비 공제는 물적 투자에 대해 허용되는 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의미의 조세 지원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을 교육비에 대해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시장에서의 시장의 실패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투자에서와 같이 교육비 지출 총액을 감가상각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곽태원·현진권(2007) 참조). 교육투자의 외부성과 관련하여서는 거시경제학 분야 특히 경제성장론에서 심도 있게 연구된 바 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임차차입금원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에 대한 공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택 마련이라는 것은 여타 자산취득과 상당히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택 거래가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택구입이 단순히 자산 증식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라면 이 공제항목의 존재 의의가 없다. 주택자금 공제의 존재 의의는 주택구입의 외부성의 존재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구입으로 주거가 안정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안정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주택저당채권 이자지불액에 대한 공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주택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 이

공제의 존재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주택에 대한 지원규모에 비하여 그 외부성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Glaeser and Shapiro(2003)).

기부금 공제는 종교, 사회봉사, 교육, 연구, 문예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의 타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사적단체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기부금 공제가 실제로 기부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므로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곽태원·현진권(2007) 참조). 기부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외부경제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자선기부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기부자의 한계세율이  $t$ 라면 기부금 공제는 기부의 기회비용을 1에서  $1-t$ 로 낮춘다. 만일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기부금 공제로 인한 국세청의 조세수입 감소액보다도 기부금 증가효과가 더 크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한 실증연구(Greene and McClelland(2001))에 의하면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0.5 정도로 1보다 작다. 만일 이 실증연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기부금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기부금 공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해당 민간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신용카드 공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들 제도의 특징은 주로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53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상향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금전적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비자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과표양성화의 압력을 가하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액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는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연금저축(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민간연금으로서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연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게 유도할 필요성은, 일반인들이 노후소비를 위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인이 노후소비를 위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근시안적인 태도, 정보의 부족, 유동성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인은 시계가 워낙 짧아서 먼 훗날의 소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노후소비수단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후소비수단을 자발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이런 경우 정부가 공적연금이라는 강제저축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노후대비 저축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노후소비수단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간연금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정부재정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민간연금시장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간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민간연금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기업연금(개인연금)제도의 발전이 조세제도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연금저축액 또는 퇴직연금보혐료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득공제로 이루어진다<sup>13)</sup>. 이 경우 여타 저축수단에 비하여 저축을 위한 기회비용이 낮아져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증가할 유인이 발생한다. 문제는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문제이다. 조세지원으로 인해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전체 저축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저축액이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의한 여타 저축 구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Diamond and Hausman(1984), Hubbard(1986), Samwick(1995), Munnell(1976), Mireaux and King(1984), Avery 외(1986), Gale(1998) 등은 연금자산의 증가에 따른 비연금자산의 구축효과 규모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구축효과 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 
- 13) 이 이외에도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적립기금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있다. 연금관련 조세는 연금보험료 납부단계-적립기금 수익 발생단계-연금급여 지급단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단계 중 1단계만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저축의 경우에는 3단계 전부 과세가 부과되므로 조세부담이 연금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다.
- 14) Diamond and Hausman(1984), Hubbard(1986), Samwick(1995) 등은 연금자산의 증가에 따라 연금자산 규모의 약 20% 또는 그 미만의 비연금자산이 구축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Munnell(1976), Mireaux and King(1984), Avery 외(1986), Gale(1998)의 구축효과 규모 추정치는 각각 62%, 27~50%, 그리고 82%로서, 구축효과의 규모가 Diamond and Hausman(1984) 등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Cagan(1965), Katona(1965), Munnell(1974), Kotlikoff(1979), Blinder 외(1980), Venti and Wise(1996) 등은 연금자산에 의한 구축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비연금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추정치가 존재하다는 것은 연금자산에 의한 비연금자산의 구축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II.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및 기존 연구 고찰 55

상황에 대한 연구로 전영준(2008)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비연금자산이 연금자산 증가분의 20% 정도를 구축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의 대체적인 경향은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여타 저축을 일부 구축하지만 100% 구축하지 않아 전체 저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비수단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대한 공제 수준은 노후소비를 위해 필요한 저축액, 공적연금과 민간연금간의 역할 분담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 Ⅲ.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본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공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림으로써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체계

##### 가. 미국

미국에서는 총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대상 항목을 차감하여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산출하고 여기에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인적공제(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로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표 Ⅲ-1〉 미국의 소득세액 산출과정

---

총소득 (gross income)
— 총소득에 적용되는 각종공제대상항목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 인적공제 (exemptions)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 세율적용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1) 조정총소득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항목

총소득(gross income)의 범위에는 임금 또는 급여 및 기타소득, 팁(tip)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법인으로부터의 기타소득, 임대소득, 연금 및 퇴직연금, 사회보장혜택 및 철도퇴직수당(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그 밖의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대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이 항목들을 공제하여 조정총소득을 산출한다.

-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우리나라 '개인연금'에 해당) 기여금<sup>15)</sup>
- 별거·이혼수당(Alimony)
- 이사비용
-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 각종 연금(pension plan)에 대한 기여금<sup>16)</sup>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로부터의 손실(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 의료저축 납입금(Contributions to a medical savings account)
-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 자영업자의 의료보험 등

---

15)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 상한선이 존재한다.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적격기업연금 가입 여부, 소득신고방식(독신, 부부합산신고, 부부개별신고)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16) SEP, SIMPLE 및 기타 플랜 불입금, 내국세법 403(b)plan에 대한 기여금(Contributions by certain chaplains to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3(b) plans), 내국세법 501(c)(18)plan에 대한 기여금(Contributions to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18) pension plans).

〈표 III-2〉 IRA 출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적격기업연금 가입한 경우)

독신자, 가장의 경우:

소득이 55,000달러 이하인 경우: 연 5,000불까지 소득공제가능

소득이 55,000달러 초과 65,000달러 이하인 경우:  $(65,000\text{달러}-\text{소득}) \times 0.5$ 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65,000달러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불허용

부부합산신고인 경우:

소득이 89,000달러 이하인 경우: 연 5000불까지 소득공제가능

소득이 89,000달러 초과 109,000달러 이하인 경우:  $(109,000\text{달러}-\text{소득}) \times 0.25$ 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109,000달러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불허용

부부개별신고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연 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능

소득이 0달러 초과 10,000달러 이하인 경우:  $(10,000\text{달러}-\text{소득}) \times 0.5$ 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10,000달러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불허용

자료: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 설명서.

## 2) 과세표준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항목공제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형태(독신자,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 부부별산신고자, 가구주)에 따라 상이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부부합산신고시는 10,900달러, 부부별산 신고시는 8,000달러, 독신의 경우에는 5,450달러의 표준공제가 허용된다.

### 인적공제(exemptions)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포함하고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대상이 된다. 모든 납세자에게 3,500달러의 개인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가 허용된다. 개인 인적공제는 물가연동제가 적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59

용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든다.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총조정소득금액이 239,9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득 2,500달러 상승마다 23.33달러씩 줄어든다. 이러한 개인 인적공제 감소는 부부별산신고(독신)의 경우 총조정소득금액 199,950달러(159,9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표 III-3〉 공제 한도 유무에 따른 항목 공제

공제한도가 있는 항목	공제한도가 없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조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득세,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es)</li> <li>· 부동산세(Real Estate Taxes)</li> <li>· 재산세(Personal Property Taxes)</li> <li>· 기타조세(외국납부세액 등)</li> </ul> </li> <li>- 기부금</li> <li>-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는 순업무관련비용</li> <li>- 개인이 가입한 업무관련 보험금</li> <li>- 고용계약 파기로 인하여 피고용인이 입은 손해액</li> <li>- 업무상 이용하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감가상각액</li> <li>- 직업과 관련된 협회의 회원비</li> <li>- 거주하는 집을 주업무상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의 업무관련 비용과 주택 감가상각액</li> <li>- 구직하는 데 소요된 비용</li> <li>-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직업세</li> <li>- 직장을 잃은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소득보조금</li> <li>- 대학교수의 연구비</li> <li>- 노조에 납부한 노조회원비</li> <li>- 소득신고준비를 위해 소요된 비용</li> <li>- 기타공제(손해사정 금액, 취미 비용, 법률비용 투자비용 및 수수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치과의료비 포함)</li> <li>- 주택담보대출(mortgage) 이자 지불액</li> <li>- 차량비용 및 기타 피고용자의 업무상 비용</li> <li>- 비업무상 상해 및 도난손실</li> <li>- 업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공제</li> </ul>

부양자녀 또는 여타 적격 부양가구원 1인당 추가적으로 3,500달러의 인적공제가 허용된다.

□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공제한도의 유무에 따라서 <표 III-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항목공제는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제로서 특정 지출에 대한 비용경감의 성격을 띠고 있다.

### 3) 세율적용

미국의 세율구조는 독신 개인, 부부합산 신고, 부부별산신고시 상이한 세율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하여 세제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세율구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구조는 결혼 유무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에게 세율이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세율구간이 물가연동제하에서 조정되어 인플레이션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I-4> 미국의 소득세율체계 (2008)

(단위: 달러, %)

세율 구간			한계 세율
독신 개인(Single Individual)	부부합산(Joint Return of Married Couple)	가장(head of the household)	
0~ 8,025	0~ 16,050	0 ~ 1,450	10
8,025~ 32,550	16,050~ 65,100	11,450~ 43,650	15
32,550~ 78,850	65,100~131,450	43,650~112,650	25
78,850~164,550	131,450~200,300	112,650~182,400	28
164,550~357,700	200,300~357,700	182,400~357,700	33
357,700~	357,700~	357,7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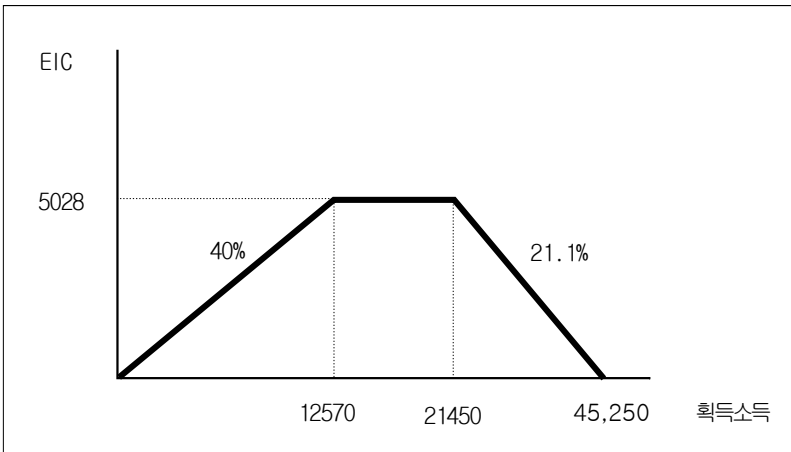
4)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획득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자녀 및 부양가족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노인 및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교육비공제(HOPE 공제, 평생교육 공제), 저소득공제 등이 있다. 기타 공제로는 양자(adoption)공제, 해외납부세액공제, 주택담보(Mortgage)이자공제, 최저한세공제, 전기자동차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는 EIC이다. 이 세액공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up>17)</sup>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생계보조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성된 획득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소득구간에서는 획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증가하고, 변함이 없고, 감소하게 된다.

[그림 III-1] 미국의 EIC 급여구조(부부합산신고, 적격자녀 2인, 2008)

(단위: 달러)



17)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 나. 영국

영국에서는 범주별 총소득(Total income)에서 공제(deductions and allowance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조정을 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표 III-5〉 영국의 소득세액 산출과정

---

범주별 총소득(Total income)
- 공제(deductions and allowances)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조정
= 결정세액

---

### 1) 주요 소득별 비용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출장비용, 업무관련 비용에 대한 고정차감액, 업무와 관련한 단체의 연간회원비 및 업무관련 자격증 유지비, 그리고 기타 업무관련 비용 등을 비용공제로 차감한다.

업무상의 출장은 거주지에서 직장으로의 출퇴근은 포함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관련 출장을 말한다. 고용주가 출장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출장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출장에 소요된 정확한 비용을 공제받는 방법이다. 둘째, 기준비용에 의거하여 출장비용을 계산하여 공제받는 방법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대신에 종업원이 업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고정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정비용 공제액'). 공제액은 국세청과 사업조합 간에 합의된 금액이다. 기타 업무관련 비용공제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63

로는 업무상 접대비와 업무관련 물품들의 감가상각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있다.

〈표 III-6〉 소득의 종류 및 범주

소득의 종류	범주
근로소득(관리자 포함)	비저축소득 및 일시불 소득
Share Option Scheme	비저축소득
자영업자	비저축소득, 저축소득(배당 제외) 및 배당
동업	비저축소득
토지 및 재산	비저축소득
해외소득	비저축소득, 일시불 소득, 저축소득(배당 제외), 배당, 일시불 소득(개념소득 포함)
신탁(Trusts and Estates)	비저축소득, 일시불 소득, 저축소득(배당 제외), 배당, 비저축소득(개념소득 포함), 저축소득(개념소득 포함)
이자소득(영국내)	저축소득(배당 제외)
배당 및 tax credit (영국내)	배당
연금 및 혜택	비저축소득
Chargeable event gains, Maintenance and Alimony	비저축소득, 일시불 소득, Chargeable event gains(개념소득 포함)
기타	비저축소득

#### 2) 조세감면(tax relief)

##### 대출금이자공제

기타 대출금이자에는 임대를 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한 금액의 이자, 업무상 사용하기 위한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한 금액의 이자, 5명 이하 규모인 회사의 지분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 그리고 동업을 위한 대출금 이자 등이 포함된다.

□ 생계비(Maintenance payment) 또는 별거·이혼수당(Alimony)

생계비(Maintenance payment) 또는 별거·이혼수당(Alimony)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의 평가(assessment), 법원의 명령, 그리고 법적으로 성립하는 문서적 합의에 따라 지출한 경우, 전 부인이나 남편에게 지출한 경우, 전 부인이나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생계비는 부인 또는 남편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조세감면의 한도액이 존재한다.

□ 기부금공제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Gift Aid scheme이나 계약증서(deed of covenant)에 따라 자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부금은 기본세율(20%)이 차감된 것으로 간주한다.

□ 생명보험공제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1984년 3월 23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생명보험료에 한하여 납입한 보험액의 12.5%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조합이 가입한 연금, 생명보험, 또는 장래 혜택이 있는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절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제공하는 사망보험 또한 납입한 금액의 절반, 고용주가 미망인이나 고아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납입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종업원은 고용주가 마련한 퇴직금 혜택에 납부한 부담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순관련비용(net relevant earnings)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다. 순관련비용은 비연금 고용으로부터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65

터의 소득, 단독 사업자로서의 자영업 소득, 동업 소득, furnished holiday letting profits 등이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순관련비용의 상한액을 매년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순관련비용의 한도액이 없다.

〈표 III-7〉 연령에 따른 공제 비율

(단위: %)

2000년 4월 6일 기준 나이	개인연금 공제 비율	퇴직연금 공제 비율
35세 이하	17.5	17.5
36~45세	20	17.5
46~50세	25	17.5
51~55세	30	20
56~60세	35	22.5
61~74세	40	27.5

#### □ 벤처캐피탈 신탁 지분 기업투자 지분

18세 이상으로서 벤처캐피탈신탁에 지분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의 출자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출자액의 20% 또는 납부세액을 0파운드로 하는 금액 중 작은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에 발행된 지분에 투자한 경우 지분(15만파운드 한도)에 대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채권손실액공제

채권 매각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하여 손실로 차감할 수는 없다.

### 3) 공제(Deduction and Allowance)

영국의 공제(Deduction and Allowance)제도는 기본인적공제가 있으며 부부공제와 맹인공제도 있다. 인적공제의 특징은 연령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고령자에게 높은 공제액을 허용하고 있다.

〈표 III-8〉 공제(Allowance)의 종류

(단위: 파운드)

공제 종류	2002~2003년	2003~2004년
기본공제		
65세 이하	4,615	4,615
65~74세	6,100	6,610
75세 이상	6,370	6,720
부부공제 <sup>1)</sup>		
2000년 4월 6일 이전 65세	5,465	5,565
75세 이상	5,535	5,635
맹인공제	1,480	1,510

주: 1) 공제상한 10%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 4) 세율 적용

영국의 세율구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20%, 40% 2단계 세율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저축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10% 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영국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32.5%이다.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67

〈표 III-9〉 영국의 소득세율(2008)

(단위 : %)

	과세표준의 0~2,320 파운드	과세표준의 2,320~ 34,800파운드	과세표준의 34,800파운드 이상
비저축소득 (예: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	20	20	40
저축소득 (은행이자 포함)	10	20	40
영국내의 배당과 세액공제소득	20	20	32.5
과세대상 생명보험 수령액 및 일시수령액	20	20	40
납세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명보험 수령액	20	20	40
자본이득	20	20	40

#### 5) 세액공제(Tax Credit)

##### □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저소득가구에 대해 허용되는 세액공제로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sup>18)</sup>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의 최소한 한 사람이 1주일에 1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지급된다. 자녀가 없는 가구라도 장애자로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거나, 비장애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급된다. 세액공제 수준은 근로시간, 자녀들의 연령, 적격자녀양육비용, 총소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 연령이 16세 이하이고, 1주일에 30시간 일하면, 1년에 최소 4,305파운드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금액에 자녀양육비용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액을 추가하며, 1년 소득이 6,420파운드를 초과하면, 소득 1파운드 상승시 세액공제액은 39펜스씩 감소한다.

18) 영국세법에서는 non-wastable tax credit이라고 지칭한다.

####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해 허용되는 세액공제로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금액은 총소득, 자녀 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세액공제액은 1년에 4,715파운드이며,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15,575파운드를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 1파운드당 39펜스씩 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만일 가구 내에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상한 금액이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최소급여액 545파운드가 주어진다. 가구소득이 5만파운드를 상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소율 6.67%가 적용된다.

### 다. 호주

호주의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조정하여 순세액을 산출한 뒤에 HECS 및 SFSS의 납부금과 의료과세(Medicare levy and surcharge)를 합쳐서 세액공제(Tax credits)를 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산출한다.

〈표 III-10〉 호주의 소득세 부과체계

---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조정
= 순세액 (net tax payable)
+ HECS 및 SFSS 납부금
+ 의료과세(Medicare levy and surcharge)
- 세액공제(Tax credits)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69

과세대상의 총소득에는 임금 및 급여, 팁, 관리자수당, 기타수당 (allowances), 일시불소득(lump sum payments), 퇴직금(eligible termination payments), 정부로부터의 수당(예: Newstart, 아동수당, austudy payment), 정부로부터의 연금, 부가급부, 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 1) 소득공제

호주의 소득공제는 업무와 관련된 차량비, 출장비, 제복, 특수복, 세탁비, 교육비와 기타 업무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이자 및 배당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에서 공제되지 않은 구입비의 공제액, 납세비용 등도 해당된다.

#### 2) 세액공제

□ 면세점 이하의 소득

6,000호주달러 이하의 연간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공제에 의해서라기보다 세율구조에 면세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호주의 소득세율(2008년)

(단위: 호주달러, %)

과세표준	세율
0~6,000	0
6,001~30,000	15
30,001~75,000	30
75,001~150,000	40
150,000 초과	45

#### □ 기혼자 공제

배우자 공제액은 부양아동이 없을 경우, 연간 2,100호주달러이고 282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4호주달러 증가에 대하여 공제액이 1호주달러 감소한다.

#### □ 아동공제

1997년 1월 1일부터 Family Tax Assistance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특정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아동보육관련 이전지출 수혜자인 경우 격주로 Family Tax Payment라고 불리는 이전지출이 지급된다. Family Tax Payment 이외의 이전지출을 받고 가구의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Family Tax Assistance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다. 먼저 part A는 부부합산소득이 91,542호주달러 이하(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아동부터 아동 당 소득상한액이 3,650호주달러씩 늘어난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아동의 수에 따라 고소득 부모의 면세점을 사유당 1,890호주달러씩 높인다. part B는 두 부부가 분리소득신고에 해당하고 16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최소한 1명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있다. 최대 급여액은 3,584호주달러이며, 소득 4,38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호주달러 소득증가시 0.2호주달러 공제액이 줄어든다.

#### □ 저소득자 공제

과세표준이 30,000호주달러 이하인 사람에게 한해서 750호주달러의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이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3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1호주달러당 4센트씩 감소하고 과세표준이 48,750호주달러를 초과하면 공제혜택이 없다.

#### □ 연금과세 감면

연금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이 일정수준(연간 2,129호주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71

달러) 이하이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관련 조세가 부가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적소득(private income)이 20,194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1호주달러 소득 증가시마다 0.125호주달러씩 세액공제가 감소한다.

#### □ 연금보험료 감면(Superannuation)

저소득 배우자의 연금보험료 납입금의 18%를 세액에서 감면하며, 세액공제 상한은 연간 3,000호주달러이다.

#### □ 건강보험과 의료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5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한다.

## 라. 독일

독일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독일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자는 독일 내외의 모든 소득, 그리고 비거주자는 독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

독일에서는 소득종류별 순소득을 합산한 총과세대상소득에서 개인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base)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과세대상소득은 총소득<sup>19)</sup>에서 특정한 비용(예: 보험액, 세무상담비용, 특정 한도 내의 선물액, 교회세)과 특별비용(예: 이혼이나 별거 비용)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는 부부합산신고 방식을 따르나 별산신고할 수도 있다.

---

19) 농업 및 임업, 산업 및 상업, 자영업, 급여고용, 자본 재산, 부동산 및 특정 동산 임대 등 7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 일정소득 범위 내에서 각 소득의 손실 상계 가능

### 〈표 III-12〉 독일의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 종류별 순소득을 합산한 총과세대상소득
－ 개인공제
= 과세표준(taxable base)
－ 세액공제(tax credit) 및 공제(allowances)
* 세율
= 결정세액

---

#### 1)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의 면세소득 및 공제

실업급여, 거주수당(logding allowance), 고용주가 지급하는 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액 등이 면세소득이 되고, 소득관련비용과 사회보험비는 단일세율로 종업원에게 공제가 허용된다.

##### 부부공제와 자녀공제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특정 수당을 두 배로 적용받는다.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게는 사유당 1,848유로가, 넷째와 그보다 많은 자녀에게는 2,148유로만큼 세액공제된다.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1,824유로가 허용되며, 교육 및 훈련 소득공제로 1,080유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경우의 세부담 경감과 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독신 부모가 최소한 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1,308유로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 사회보장분담금과 생명보험액

사회보장분담금과 생명보험액의 공제는 3단계를 거친다. 사회보장분담금과 생명보험료 납부액이 연간 2만유로 이하일 경우 사회보장분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73

담금과 생명보험료 납부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일정부분의 산정은 2005년에 60%로 매년 2%포인트 증가하여 2025년에는 100%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소득공제는 1,50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 업무관련 비용

920유로까지는 근로자 1인당 920유로를 공제하며, 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하다.

#### □ 의료비 및 업무관련 비용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공제한다.

## 2) 세율 적용

독일의 세율구조는 독신 납세자와 부부합산 과세자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양자에 대한 과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설명한 방식은 독신 납세자에 세율적용방식인데, 부부합산 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2로 나누고 독신 납세자의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에 2을 다시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독신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X를 과세표준으로, T를 산출세액으로 정의하고 세액계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Y와 Z를 정의한다(단위: 유로).

$$Y = (X - 7,664) / 10,000$$

$$Z = (X - 12,739) / 10,000$$

세액 T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T = 0 \text{ for } X \leq 7,664$$

$$T = (883.74Y + 1,500)Y \text{ for } 7,665 \leq X \leq 12,739$$

$$T=(228.74Z+2,397)Z \text{ for } 12,740 \leq X \leq 52,151$$

$$T=0.42X-7,914 \text{ for } 52,152 \leq X \leq 250,000$$

$$T=0.45X-15,424 \text{ for } 250,001 \leq X$$

독일의 세율구조 특징은 최고소득구간과 그 아래 소득구간(한계세율은 각각 45%, 42%임)을 제외한 다른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구간별로 동일한 한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구간 내에서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3) 세액공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공제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 마. 프랑스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 세대주의 배우자 소득은 반드시 세대주의 소득과 합산과세되지만 그 외 가족구성원의 소득은 개인별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표 III-13〉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 종류별 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고용소득, 사업소득, 고정자산 소득, 농업소득, 전문직 소득, 유한합작 회사의 관리자의 소득, 투자소득, 자본이득 등에서 총소득에서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예: 생계비, 노인부양비)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구함)
- 공제(deduction and allowances)
= 순총소득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75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소득종류별 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순총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 1) 소득공제

#####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근로소득 산정시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장부담금은 차감하므로,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 사회보장분담금 중 세율 2.4%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무관련 비용

소득활동에 관련된 실제 비용을 공제하거나 순임금(net pay)의 10%(최저 401유로, 최고 13,501유로)가 공제 가능하다.

#### 2) 세율적용

##### 가족점수 계산

프랑스 소득세 계산은 소득세 가족점수(family quotient)를 산정하고 가족합산 소득을 이 점수로 나누어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점수 1점당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 세액에 다시 가족점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면세점 설정

프랑스의 경우 호주의 경우와 같이 면세점을 세율구조에 명시한다.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면세점은 5,687유로이다.

〈표 III-14〉 프랑스의 소득세율(점수 1점당)

(단위: 유로, %)

세율구간	세율
0~5,687	0
5,687~11,344	5.5
11,344~25,195	14
25,195~67,546	30
67,546~	40

## 3) 세액공제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설치비용에 따라 15%, 25%, 40%, 50%가 적용된다.

 일시근로소득 세액공제

고용주가 일시금으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그 금액의 25%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는 30,500유로이다.

 자녀부양 세액공제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50%(한도 2,300유로)에 대해 세액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등

법에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할 수 있다.

 획득소득세액공제(prime pour l'emploi, or PPE)

근로소득이 3,743~26,572유로 사이에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77

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로서 미국의 EIC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 세액 공제는 개인별로 산출한 다음 가구별로 합산한다. 개인별 세액공제 산출식은 아래 <표 III-15>와 같다. 이 표에서 산출한 방식은 소득자 1인 당 금액 산정방식이며, 각각의 소득자의 세액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표 III-15> 획득소득세액공제 산정방식

(단위: 유로)

가족 형태	소득(R) 구간	세액공제 금액	2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자녀가 없는 독신	3,743<R≤12,475	R*7.7%	
	12,475<R≤17,451	(17,451-R)*19.3%	
맞벌이 부부	3,743<R≤12,475	R*7.7%	72
	12,475<R≤17,450	(17,451-R)*19.3%	72
혼벌이 부부	3,743<R≤12,475	R*7.7%+83	72
	12,475<R≤17,450	(17,451-R)*19.3%+83	72
	17,451<R≤24,950	83	36
	24,951<R≤26,572	(26,672-R)*5.1%	36
독신 부모 (자녀 2명)	3,743<R≤12,475	R*7.7%	
	12,475<R≤17,450	(17,451-R)*19.3%	
	17,451<R≤24,950	0	
	24,951<R≤26,572	0	

#### 바. 스웨덴

스웨덴의 납세자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되고 있고, 지방세에는 고용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징수되고 있다.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지방세 납부 소

득세액은 국세납부 소득세액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에서 징수되는 과세대상 총소득에는 고용보수(예: 임금, 급여, 연금 기타 보수)와 비법인사업소득이 포함되고,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에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도 국세에서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에서는 고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순고용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개인보험액, alimony, 기본 allowance를 공제한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이자지급액과 자본손실을 차감하여 구해지고 flat-rate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국세로 징수된다.

## 1) 소득공제

### □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국세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되는데 공제액은 소득에 따라 12,100~31,600크로네(SEK) 사이이다. 기본공제액은 기본금액(basic amount, BA, 41,000크로네)과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금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 외의 부부공제, 자녀공제, 업무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표 III-16〉 기본적 공제액 산정방식

BA 대비 소득 비율	공제금액(BA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 적용, BA 대비 비율)	추가공제금액(BA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 적용, BA 대비 비율)
0~0.99	0.423	
0.99~2.72	0.423	+0.2
2.72~3.11	0.77	
3.11~7.88	0.77	-0.1
7.88~	0.293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79

연금보험료, 생명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와 생명보험료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 상한은 12,000크로네이다.

연금, 생명보험 노후연금

일반 생산직 근로자들에 한하여 최고 18,200크로네까지 공제가 허용 된다.

기타

8천크로네를 초과하는 출퇴근 비용, 5천크로네를 초과하는 업무 관련 비용(예: 전화비, 도구), 출장 중 발생한 추가비용, 일시직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두 곳의 거주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 2) 세율적용

스웨덴의 경우 국세개인 소득세율은 아래 <표 III-17>과 같다. 지방 소득세는 비례세이며 지방세 소득세율은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평균 소득세율은 31.44%이고 최고세율은 34.09%, 최저세율은 28.89%이다.

<표 III-17> 스웨덴의 국세 개인소득세율(2008)

(단위: 크로네, %)

과세표준	세율
0~328,800	0
328,800~495,500	20
495,000 초과	25

### 3) 세액공제

공적연금 세액공제

근로자 자신이 납부한 공적연금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세액공제

지방세 평균세율 수준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동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한도액은 14,400크로네이다.

획득소득세액공제(EITC)

EITC 금액은 (Special amount - Basic Amount(41,000크로네))\*지방세율로 정해진다. 지방세율은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Special amount는 획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표 III-18〉 Special amount 산정공식(65세 미만)

획득소득(earned income, EI)	Special amount
~0.91 BA	EI
0.91BA~2.72BA	0.91 BA+0.2*(EI - 0.91 BA)
2.72BA~7.00BA	1.272 BA+0.033*(EI - 2.72 BA)
7.00BA~	1.413 BA

이자액 세액공제

자본이득소득에서 이자지급액을 상쇄한 순자본이득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자본손실의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사. 핀란드

핀란드의 과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징수한다. 핀란드 내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81

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총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핀란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적용한다. 배우자의 소득은 분리과세한다. 과세대상 총소득의 범주에는 임금, 급여, 연금 사회보장혜택, 실업혜택, 사업소득, 농업소득, 동업소득,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장학금, 포상금, 80%의 투자소득 등이 포함된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자본소득과 획득소득의 두 가지로 나뉜다. 자본소득은 자본이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생명보험 순소득 등이 포함되고, 자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은 획득소득으로 간주한다.

#### 1) 국세 소득세 공제

##### 업무관련 비용

업무관련 표준공제액은 임금 및 급여 중 최고 620유로까지 허용된다.

##### 이자지출액

자본소득에 대하여 이자지출액이 상쇄될 수 있다. 자본소득을 초과하는 이자지출액에 대하여 28%의 세액공제가 최고 1,400유로의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 회원비

종업원이 가입한 단체나 상업조합의 회원비가 공제 가능하다.

##### 출퇴근 비용

거주지에서 근무지 사이의 출퇴근 비용이 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7천유로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 □ 기타 업무관련 비용

도구, 전문적인 서적, 연구시설 과학서적 및 과학이나 예술에 관련된 기타 비용에 공제가 허용되고 출퇴근 비용과 기타 업무관련 비용은 표준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 2) 세율 적용

핀란드의 국세 소득세율은 <표 III-19>와 같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중앙정부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세율은 단일세율로 부과되며 평균세율은 17.63%이다. 지방세 소득납부액은 국세 소득납부액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표 III-19> 핀란드의 국세 개인소득세율(2008)

(단위: 유로, %)

과세표준	기본세액	초과세율
12,600~20,800	8	8.5
20,800~34,000	705	19
34,000~62,000	3,213	23.5
62,000~	9,793	31.5

## 3) 지방소득세공제

### □ 획득소득공제(Earned income allowance)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공제제도로서, 2,500~7,230유로 사이의 획득소득에 대해서는 획득소득의 51%를 공제하며, 7,230유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8%를 추가적으로 공제

한다. 공제율 28%는 획득소득공제액이 3,570유로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되며 14,000유로를 상회하는 획득소득에 대해서는 4.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기본공제

1,480유로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허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가 공제된다.

4) 세액공제

□ 획득소득세액공제(EITC)

근로소득금액이 2,5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6% 세액공제하며 이 세액공제율은 세액공제액이 400유로가 될 때(소득 33,000유로)까지 적용된다. 33,000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0.9%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78,000유로에 이르면 세액공제액이 0이 된다.

아.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개인소득세 체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먼저 특정한 부분에서의 개인소득(personal income)에 대하여 총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 대하여 순액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과 일반소득의 두 가지 과세소득을 가지게 된다. 개인소득은 개인적인 근로와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총소득 기준이다. 일반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및 자본소득 등을 포함하고 채무액에 대한 이자와 같은 일정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모두 포함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노르웨이 내

에서 발생한 일정 부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부부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별산신고를 원할 경우 가능하고 17세 이하의 사람은 부모와 함께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과세대상 총소득에는 고용소득, 사업 및 전문직 소득, 고정 및 비고정자산으로부터의 소득 등이 포함된다. 거주자의 전세계로부터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고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되지 않는다.

### 1) 국세 소득세 공제

국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개인소득이 과세표준이 된다.

### 2) 세율적용

노르웨이의 소득세 과세기반은 개인소득(personal income)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된다. 개인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이다. 일반소득에는 노동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포함된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로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중 13.3%가 국세로 간주된다.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에 부가하여 아래 세율로 과세된다.

〈표 III-20〉 노르웨이의 개인소득 부가세율(2008)

(단위: 크로네(NOK), %)

Class 1	Class 2	세율
0~420,000	0~840,000	0
420,000~682,500	840,000~1,365,000	9.0
682,500~	1,365,000~	12.0

주: Class 1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와 부부별산 신고자이고, Class 2는 부부합산 신고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85

#### 3) 지방세 소득세 공제

##### 기초공제

개인소득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공제로 공제 가능하다. 최소 공제금액은 4,000크로네(NOK)이며 최대 공제액은 67,000크로네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공제 대신 31,800크로네를 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모공제

자녀양육비용 공제 성격의 공제로서 자녀가 한명일 때는 25,000크로네이며, 추가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15,000크로네씩 추가된다. 이 소득 공제는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까지 적용된다.

##### 기타 공제

12,000크로네를 초과하는 업무관련 출장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2,000크로네, 노동조합가입비에 대하여는 3,150크로네까지, 개인연금에 대하여는 최고 15,000크로네까지, 직장연금과 이자지급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 4) 세액공제

##### 주택마련 지원제도 (Home savings scheme)(BSU)

주택마련 지원제도는 34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향후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고 15,000크로네 한도에서 연간 저축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저축액이 10만크로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5) 세액 한도

일반소득과 순재산(net wealth)에 대한 총세액은 일반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총세액이 일반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재산액에 대한 세액이 감소한다. 100만크로네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한 세액은 적어도 100만크로네를 초과하는 부분의 0.8%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 자. 일본

납세의무자는 일반 거주자의 경우(국내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 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지를 가진 개인) 총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고, 비영주자(거주자 중 국내에 거주할 의사 없이 현재까지 계속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일본 내 원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일본에서 지불되거나 외국에서 일본으로 송금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일본 내 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모든 개인은 별산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 1) 국세 소득공제

#### 기초공제

38만엔의 기초공제가 허용된다.

#### 배우자 공제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에 한해 38만엔의 공제가 허용되고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38만엔의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87

#### □ 부양가족 공제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의 경우 자녀나 친지가 있는 경우 사유당 38만엔의 공제가 허용되고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당 48만엔, 16세에서 23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당 63만엔이 공제 가능하다.

#### □ 사회보험액 공제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의 경우 사회보험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 □ 고용소득공제(Employment income deduction)

고용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소득이 180만엔 이하인 경우, 40%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고 최소공제 가능금액은 65만엔이다.
- 소득 180~360만엔인 경우 공제액: 72만엔 + 180만엔 초과금액의 30%
- 소득 360~660만엔인 경우 공제액: 54만엔 + 360만엔 초과금액의 20%
- 소득 660~1,000만엔인 경우 공제액: 120만엔 + 660만엔 초과금액의 10%
- 소득 1,000만엔 초과인 경우 공제액: 170만엔 + 1,000만엔 초과금액의 5%

#### □ 생명보험 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의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한 경우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일반소득, 퇴직소득 또는 산립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고 보험금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표 Ⅲ-21〉 보험금 공제액(생명보험, 개인연금) (단위: 엔)

보험금 납입액	공제액
0~25,000	총 납입액(1)
25,000~50,000	(1)*0.5 + 12,500
50,000~100,000	(1)*0.25 + 25,000
100,000 초과	50,000

의료비 공제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가 함께 거주하는 사람(본인, 배우자, 친지 포함)에 대하여 의료비(치과 포함)를 지출한 경우 보험부담금을 차감한 순지출비용에 대하여 10만엔 또는 일반소득, 퇴직소득, 산립소득 총액의 5% 금액 중 적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최대공제 허용금액은 200만엔이다.

지진보험공제

지진보험보험료는 5만엔까지 공제 가능하다.

2) 세율 적용

일본의 국세 소득세율은 아래 〈표 Ⅲ-22〉와 같으며, 지방세율은 일반소득에 대해 10% 세율(현세 6%, 자치구세 4%)로 부과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지방세 과세목적의 과세표준과 국세 과세목적의 과세표준의 차액의 5% 상당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표 Ⅲ-22〉 일본의 국세 소득세율 (단위: 엔, %)

과세표준	세율	각 구간 공제가능액
0~1,950,000	5	
1,950,000~3,300,000	10	97,500
3,300,000~6,950,000	20	427,500
6,950,000~9,000,000	23	636,000
9,000,000~18,000,000	33	1,536,000
18,000,000~	40	2,796,000

3) 세액공제

□ 주택구입 공제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의 경우 집을 짓거나 구입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해 주택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5년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세액공제액은 처음 6년 동안은 연간 50만엔 한도, 다음 5년간은 연간 37만 5천엔 한도, 나머지 4년간은 연간 25만엔 한도로 허용된다. 소득이 3천만엔을 초과하는 사람은 주택구입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과세체계에서는 거주자의 경우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소득으로는 부동산소득, 자본소득, 고용소득, 자영업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1) 소득공제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표 III-23〉 소득세 한계세율(이탈리아)

(단위: 유로, %)

구 간	세 율
~ 15,000	23
15,001~28,000	27
28,001~55,000	38
55,001~75,000	41
75,000 ~	43

## 2) 세율적용

이탈리아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23~43%이다.

## 3) 세액공제

PAYE tax credit

〈표 III-24〉 PAYE tax credit

(단위: 유로)

소득구간	
0~ 8,000	1,840
8,001~15,000	최대 세액공제액 <sup>1)</sup> + 503*(15,000-과세소득)/7000
15,001~55,000	최대 세액공제액 <sup>2)*</sup> (55,000-과세소득)/4000
55,000~	0

주: 1) 1,338유로

2)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1,338~1,378유로로 규정

부양가족 세액공제

〈표 III-25〉 부양가족 세액공제액

(단위: 유로)

부양가족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배우자 세액공제	최대 800에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적용상한소득: 80,000)
자녀 세액공제	
3세 미만	최대 900에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적용상한소득: 95,000)
3세 이상	최대 800에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적용상한소득: 95,000)
여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최대 750에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적용상한소득: 80,000)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91

#### □ 기타공제(allowance and credit)

사회보장 부담금,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정기적 소득, 유언으로 인한 정기적 소득,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1,032,91유로 한도), 장애자의 의료비, 자가주택 수리비(수리비용의 36%, 45,000유로 한도), 태양광열판 교체비용(비용의 55%, 60,000유로 한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음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19%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주택저당채권이자지불액(한도 4,000유로): 129.11유로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 보험기금기여금(한도 1,291,14유로)
- 사립 중등학교와 대학교육비(한도 주립학교비용)
- 취학전 교육비(한도 자녀 1인당 632유로) 등

## 카. 캐나다

### 1) 중앙(연방)정부 소득세

캐나다의 중앙(연방)정부소득세 과세단위는 개별과세가 원칙이나, 부부합산과세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 ① 세율

〈표 III-26〉 캐나다의 국세소득세율

(단위: 캐나다달러, %)

과세소득(taxable income)	한계세율
0~37,885	15
37,885~75,769	22
75,769~123,184	26
123,184~	29

## ② 세액공제

 기본공제

모든 캐나다 납세자는 2008년 1월 1일 현재 1,440캐나다달러의 개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하여 1,440캐나다달러씩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 1달러당 0.15달러씩 세액공제액이 감소한다.

 자녀세액공제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304.70캐나다달러씩 세액공제할 수 있다.

 재화 및 용역 세액공제(The goods and tax credit)

19세 미만의 부양자녀마다 246캐나다달러를 반환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가계 순소득이 32,091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 감소한다.

 공적연금보험료 세액공제

Canada Pension Plans과 Quebec Pension Plans에 납부한 보험료(한도 2,049.30캐나다달러)와 Employment Insurance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한도 711.03캐나다달러)가 허용되고 있다.

 Working Income Tax Credit (WITB)

3,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획득소득(earned income)에 대하여 20%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가 없을 경우 510캐나다달러, 자녀가 있을 경우 1,019캐나다달러이다. 획득소득 9,681캐나다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93

달러(독신 근로자), 14,776캐나다달러(자녀 있는 경우)를 초과하는 획득소득에 대해서는 15%로 세액공제율이 감소한다.

Canada Employment Tax Credit

152,85캐나다달러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의료비 공제: 납세자는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세액공제는 순소득의 3% 또는 1,962캐나다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적용
- 기부금 공제: 자선기부금 200캐나다달러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2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9%를 공제
- Registered pension plan 보험료 공제: 현재 또는 장래의 연금 수혜 서비스를 위해 고용인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제도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으나, 확정기여형일 경우에는 획득소득의 18%(21,000캐나다달러까지 인정)로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 퇴직연금 기여금 공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 premiums): 개인에게 연금수익 또는 이연 배당수익이 없다면, 전년도 근로소득(previous year's earned income)의 18%까지 RRSP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20,000캐나다달러 한도).
- 단체 및 업무관련 회비: 노동조합(trade union) 및 공무원협회 등에 납부하는 연회비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적 지위보장에 소요되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산정시 공제된다.
- 이사비용 공제: 근무지로 인해 최소 40km 떨어진 거리로 이사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탁아비 공제: 부모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발하기 위해 또는 부모가 직업훈련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탁아비가 드는 경우 이

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에 의해 요구되는데, 공제액은 다음에 규정되는 금액보다 클 수 없다.

- 탁아비
- 납세자 근로소득의 2/3
- 7세미만 또는 장애아인 경우 자녀 1인당 4,000캐나다달러까지, 7~14세 사이 자녀당 10,000캐나다달러 한도

## 2) 주정부 소득세

캐나다의 주정부는 독자적인 소득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소득세율의 예로 온타리오주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III-27〉 지방세 소득세율(온타리오주)

(단위: 캐나다달러, %)

과세소득(taxable income)	한계세율
0~36,020	6.05
36,020~72,041	9.15
72,041~	11.16

### ① 세액공제

□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 (non-wastable tax credit)

- 기본세액공제: 535.20캐나다달러
- 배우자 세액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737캐나다달러보다 높고 8,108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최대금액은 445.95캐나다달러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소득이 8,108캐나다달러에 도달하면 금액이 0이 된다.
- Canada Pension Plan과 Employment Insurance 보험료의 6.05%

### III. 소득세 공제체계의 국제비교 95

를 세액공제한다.

#### □ 환급가능한 세액공제(wastable tax credit)

- 판매세 세액공제(sales tax credit): 주소득자와 배우자에게 각각 100캐나다달러, 19세 미만 자녀 1인당 50캐나다달러씩 세액공제한다.
- 재산세 세액공제(property tax credit): 재산세 납부액에 대해서 shelter cost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세액감면(tax reduction)

개별 소득자들은 세액감면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최초 금액은 201캐나다달러에 19세 미만 자녀 1인당 370캐나다달러씩 증가한다. 만일 최초 세액감면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은 0이 되며, 만일 산출세액보다 작으면 세액감면금액은 '최초세액감면 × 2 - 산출세액'으로 한다.

## 2. 시사점

본장의 제1절에서는 주요국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체계를 살펴본다. 각국의 공제체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사회상황을 반영하여 발전해온 것이므로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제도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들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취지는 비재량적 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계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공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미국의 개인인적공제, 스웨덴의 기

본공제, 핀란드의 지방세 소득공제, 노르웨이의 지방소득세 기초공제 및 부모공제, 일본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형태를 취하는 나라(영국의 자녀세액공제, 호주의 기혼자 세액공제 및 아동공제, 프랑스의 자녀부양 세액공제, 이탈리아 부양가족 세액공제, 캐나다 연방소득세의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세제에 영향을 받아오면서 세제가 발전한 관계로 비재량적 지출 증가에 대응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방식을 사용하여 왔지만, 많은 나라에서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액공제방식을 비재량적 지출 증가에 대응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세액공제방식은 세부담 경감액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소득세제하에서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면 세부담 경감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절대경감액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도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액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미국의 개인인적공제, 스웨덴의 기본공제)도 있다.

비재량적 지출 증가에 대응한 세부담 경감조치로 소득공제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세율구조에 면세점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호주의 세율구조, 프랑스의 세율구조 및 가족점수제, 스웨덴의 세율구조). 호주와 프랑스의 소득세율구조는 일정 수준의 과세표준에 대해 한계세율을 0%로 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제도의 매우 특이한 점은 가족구성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하여 가족점수를 계산하고 가구의 과세소득을 이 점수로 나누어서 점수 1점당 세액을 세율구조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가족점수를 다시 곱하여 해당가구의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가구원별 점수는 가구주의 경우 1점, 가구주의 배우자 1점,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의 경우 0.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른 비재량적 지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 세율구조에 면세점을 규정하는 방식은 소득공

제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면세점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점을 세율구조에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동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반영하여 가족점수를 상정하면 소득세액 산정시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비례량적 지출 증가효과를 상당 수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비례량적 지출 증가효과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 세율구조를 이용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복합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납세자가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저소득자(세액)공제를 두어 저소득자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여러 제도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자신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인적공제의 단순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공제제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증가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동등화지수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의 가족점수제는 흥미로운 예라고 할 수 있다.

#### 나. 근로소득공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업무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공

제적인 성격과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탈루에 따른 세부담 회피가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제도는 일부 국가(일본의 '고용소득공제', 핀란드의 '획득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소득과약이 어려운 나라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의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업무 관련 비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관련 비용에는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는 순업무비용(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출퇴근비(핀란드 등), 직업 관련 협회의 회원비(미국, 영국 등), 업무 관련 교육비(미국, 호주 등), 출장비용(영국, 호주 등), 업무관련 차량유지비, 제복비(호주) 등이 포함된다. 업무 관련 비용을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활동을 위한 비용이 근로소득공제제도에 비하여 엄밀하게 산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무행정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무행정의 문제는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느 정도 그 비용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소득공제와 관련된 외국의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근로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 과약이 개선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근로소득공제의 필요성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공제 허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50%에 가까운 근로자가 면세자가 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제고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관련 비용공제 방식에 대한 선택은 제도의 단순성과 비용 산정의 엄밀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제도의 단순성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향후 정보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실질비용 산정방식의 세무행정비용이 경감될 경우 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특별공제

현행 제도하에서 특별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특별공제의 이러한 제한적인 적용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상 비용의 형태로 이미 사업소득 산정시 비용이 반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낮은 상태에서 특별공제제도를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요 외국에 대한 제도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제도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Canada Employment Tax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별공제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의 제고 추세를 감안하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에서 허용하는 항목들과 외국의 공제항목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체적으로 외국의 공제항목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재량적인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연금보험료(호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 건강보험료(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의료비(미국, 호주,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특정 정책목표(고령화 대비, 건강위험 경감, 주택보유 증대) 달성을 위해 특정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제제도인 개인연금 기업연금 보험료 공제(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생명보험료 공제(미국, 영

국, 스웨덴, 일본 등), 의료저축 공제(미국), 기부금 공제(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택담보이자 지불액 공제(미국 등), 대출금 이자(영국(주택담보대출이자금 지불액 공제는 폐지), 스웨덴, 핀란드 등), 주택마련 저축액에 대한 공제(노르웨이) 등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 공제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공제제도로는 지방세 공제(미국, 스웨덴, 캐나다), 벤처캐피털 신탁 지분 기업투자 지분(영국) 등이 있다. 지방세 납부액공제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세 납부액은 상당부분 연방소득세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정부는 비교적 용이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비용을 연방정부가 떠안게 된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과 지방세 납부액공제를 이용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두 방식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원은 주로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벤처캐피털 투자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세액공제

위에서 언급한 각종 공제에 대한 언급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공제라도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와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가 여러 국가에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서 처음 시행된 EITC제도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제도가 과거 시혜적 복지제도에서 근로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복지제도로 인해 유발된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를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한다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세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본장에서는 소득분포의 현황을 추정해보고 소득유형간, 가구규모별 소득세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진단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 V장의 소득공제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1. 분석자료와 범위, 방법

#### 가. 분석자료와 범위

계층별 소득세 부담분포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가구기준 또는 개인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기본단위가 통상적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득자의 실질후생적 관점에서 세부담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준보다는 가구단위의 소득세 부담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반면에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등의 관점이나 개인세 부담의 변화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면 개인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여 소득세 부담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 체계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모의실험을 위한 분석자료로 굳이 가계조사자료 등과 같은 서베이자료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소득유형과 가구의 크기 등을 가정하고 각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을 추계하여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2008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직접 사용하여 세부담을 비교분석하였다. 가공의 자료 대신 서베이자료를 직접 사용하

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부담은 특정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을 토대로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의 자료를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 중에서는 소비지출 분포와 그 변화추이를 토대로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공의 자료로는 의미있는 분석이 곤란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 밖에도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는 공제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공제 허용 여부 및 공제액 자체도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가공의 자료로는 소득세 부담의 추계를 통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개편방향을 염두에 두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또는 종합소득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므로 개인기준을 채택하여 분포를 살펴본다<sup>20)</sup>.

20) 전병목·안종석(2005) 등에서는 소득세 계산프로그램(tax calculator) 적용 없이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단위의 보고소득세액(reported income tax amount)을 기준으로 소득종류별로 세부담을 구분하여 상호비교를 시도하였다. 소득세 부담의 종류는 가계소득 중 사업소득이 25% 이상인 경우를 자영업자가구로 분류하고 해당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사업(종합)소득세 부담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의 가구는 근로자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구와 소득세 종류를 구분하게 되면 실제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아래의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비록 가구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25% 이하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종류별 상대적 소득 크기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담을 분할해 주어야 하지만 상기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근로소득세로 간주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상기 연구에서 분석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담은 실제의 소득 및 소득세 종류와 크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기 연구에서는 가구단위로 세부담을 비교하고 있는데 동일한 가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자의 수와 소득자간 소득 크기의 차이에 따라 가구단위의 소득세 부담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분석자료로는 통계청의 2008년 가계조사원시자료를 연간화한 자료<sup>21)</sup>를 사용한다. 가계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의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정보가 채집·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 정보에 대한 것은 소득 정보와 관련되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sup>22)</sup>.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에는 소득 관련 정보가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합)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대부분의 경

간 과세 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가구단위의 분석은 소기의 목적 달성에 있어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기 연구에서는 보고소득세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시점과 소득보고시점 간에 1개월 정도밖에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보고된 근로소득과 보고 근로소득세 부담 사이에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 사업소득세는 당해연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다. 시계열적으로 소득변동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과 보고 소득세(전년도 귀속분 세부담)를 한데 묶어 분석하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편의(bias)를 나타낸다.

- 21) 가계조사자료는 월간 단위로 분류된다. 연단위 자료는 각 분기별로 최소 1개월치 이상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1개 분기 이상의 분기에서 모든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자료의 연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가계조사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계절성(seasonality)으로 인한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잔존한 자료를 대상으로 월간자료를 분기자료로 환산한 후 각 분기자료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자료를 획득한다. 계절성 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는 최린추정법(最隣推定法, nearest neighbor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탈락한 자료의 가중치를 잔존한 최린관측치에 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런 과정성 거쳐 최종적으로 2008년 가계조사자료 중 5,158가구의 연간자료가 생성되었다.
- 22)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등과 같은 서베이자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고소득층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표본추출되거나 또는 극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응답거부 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표본선택에 의한 오류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계조사자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거의 모든 서베이자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한 편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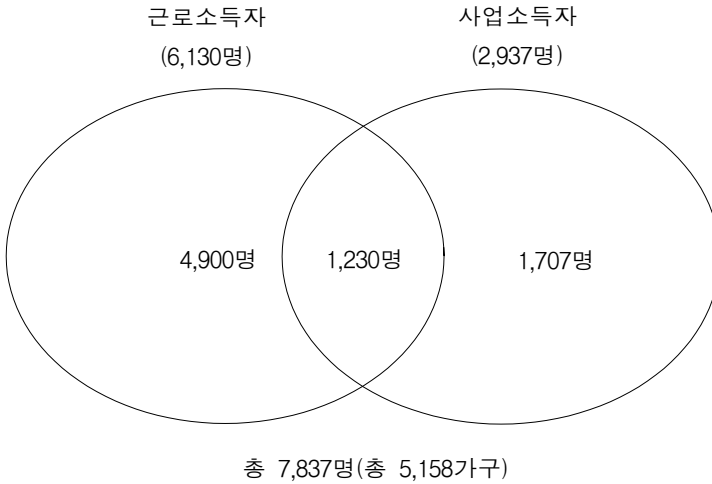
우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0원이거나 또는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론상 기타 가구원의 소득 정보가 2인 이상의 복수 소득자의 합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기타 가구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매우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있는 기타 가구를 가구당 1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즉, 가구당 소득자는 최대 3인(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의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표본가중치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인단위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분석대상 개인을 분류하여 새로운 개인표본을 구성한다. 개인표본에 포함된 각 개인의 가중치는 해당 가구의 가중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그런 연후에 모든 개인의 가중치 합이 1이 되도록 비례적으로 그 값을 재조정하였다.

본절에서는 다양한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의 두 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세부담 비교 및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분석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만 있는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되는 만큼 표본에서의 종합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7,837명 중에서 2,937명이다. 근로소득자는 6,130명인데 이 중 4,900명은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나머지 1,230명은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된다<sup>23)</sup>.

23) 본 연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존재하는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 7,837명 가운데 1,230명으로 15.7%(가중치를 미고려한 단순치)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실제 비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차이는 표본편의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통계청에서의 소득분류와 국세청의 그것 사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가 매우 많지만 통계청에서는 세법에 의하지 않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소득을 분류하

[그림 IV-1] 가계조사자료의 개인소득자별·소득(세) 유형별 분포



2008년 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가구크기(가구원 수)는 2.91인이다. 이 중 취업인 수는 1.21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은 약 50세이다. 2008년 대비 2009년의 명목소득소비의 증가율을 2%로 가정할 때, 가구당 총소득은 4,011만원이다. 이 가운데 2,449만원을 소비지출(소비성향 0.61)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가계조사자료에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소득자들 중 면세점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소득이라고 신고한 것 중에서는 상당한 정도가 국제청 신고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존재하는 소득자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세 부담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본 연구의 주제에 비추어볼 때 추정오류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07

2009년의 가상현실을 기준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 근로소득세는 과세자비율이 54.5%, 사업소득세는 60.9%, 도합 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57.0%로 추정되었다<sup>24)</sup>.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추정하는 방법 등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표 IV-1〉 2009년 환산 가계조사자료의 기초통계(가구 기준)

(단위: 명, 세, 원)

	2인 이상 가구	1인 이상 가구 포함
가구원 수	3.33	2.91
취업자 수	1.38	1.21
가구주 연령 (무직가구)	48.51 (63.17)	50.12 (64.80)
가구 총소득	44,862,495	40,110,609
가구 소비지출	27,617,133	24,493,389
평균 소비성향	0.6156	0.6106

〈표 IV-2〉 소득유형별 과세자·면세자비율

(단위: %)

	과세자	면세자
근로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	45.0
(사업소득도 있는 사람 포함)	54.5	45.5
사업소득세	60.9	39.1
근로 + 사업소득세	57.0	43.0

24) 여기서 2009년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이유는,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현행 세제하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2009년 현재 시점에서 현행 세제의 효과를 기준으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과거연도인 2008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자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만큼 가구단위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아울러 비록 개인 차원에서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소득 기준의 저소득층에 분류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타 가구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고소득층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분석방법

근로소득세와 사업(종합)소득세 사이에 세부담의 형평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정하에서 아래의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소득계층별 소득세(근로·사업소득세) 부담 분포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종류에 관계없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별 소득분포와 소득세 부담 분포를 살펴본다.

둘째, 근로소득세와 사업(종합)소득세 사이에는 상이한 소득공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호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어 각각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각각 1개 종류의 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소득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담 구조를 비교한다.

셋째,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를 개별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만 구성된 표본,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들만을 대상으로 구성된 표본을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소득분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분석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제의 소득을 100% 보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에 실제소득보다 과소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 즉 신고소득(또는 보고소득)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설정한 것이다. 사업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소득에 대한 추정소득이라는 표현으로 실제소득을 대변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사업소득자들이 자신들의 실제 사업소득 중 일부만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며, 신고율은 사업소득자별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박창균·현진권(2002)의 연구에 의하면 모의실험결과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신고율(또는 사업소득포착률)이 소득수준별로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신고율은 일정(동일)하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분석한다<sup>25)</sup>.

## 2.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구조

### 가. 소득계층별 소득 및 세부담 분포: 근로·사업 합산 소득 기준

본절에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0원 이상인

25) 개별 사업소득자별로 사업소득신고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할 때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다. 임대소득은 임대자산의 명의인에게 귀속된다. 대부분 가구주 명의의 자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대소득은 가구주에 귀속시켰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 탈루가 어렵다. 따라서 임대소득은 충분히 양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별도의 소득신고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가상신고율(0과 1 사이의 임의의 수)을 부여하여 신고사업소득을 가정한다. 신고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토대로 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 부담을 산출하여 소득자 1인당 평균세부담액을 추정한다. 국제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 1인당 평균사업소득세 결정세액과 비교한다. 양자를 일치시켜주는 임의의 가상신고율을 소득신고율에 대한 최종적인 추정치로 설정한다.

소득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합산소득의 분포와 근로·종합소득세의 분포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이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획득한 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미취업자, 비취업자(은퇴자 포함) 등 또는 연간을 통틀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3〉 합산소득분위별 근로·사업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개인 기준)

(단위: 천원, %)

분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근로소득	504	2,174	4,659	8,126	11,275	13,969	16,062	20,547	27,487	47,081	15,189
사업소득	161	829	1,789	2,249	3,056	4,763	8,042	10,815	14,177	18,721	6,460
근로+사업소득	666	3,004	6,448	10,375	14,331	18,732	24,104	31,362	41,664	65,802	21,649
근로소득세	0	0	0	12	37	75	128	303	837	3355	475
사업소득세	0	0	20	48	84	148	308	571	1002	2267	445
근로+사업소득세	0	0	20	60	118	217	421	848	1758	5079	852
실효소득세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근로소득세	0	0	0	0.15	0.33	0.53	0.8	1.48	3.05	7.13	3.13
사업소득세	0	0.04	1.11	2.16	2.76	3.1	3.83	5.28	7.07	12.11	6.89
근로+사업소득세	0	0.01	0.31	0.58	0.82	1.16	1.75	2.7	4.22	7.72	3.94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근로소득	0.33	1.43	3.07	5.35	7.42	9.20	10.57	13.53	18.10	31.00	100
사업소득	0.25	1.28	2.77	3.48	4.73	7.37	12.45	16.74	21.95	28.98	100
근로+사업소득	0.31	1.39	2.98	4.79	6.62	8.65	11.13	14.49	19.25	30.39	100
근로소득세	0	0	0	0.26	0.77	1.57	2.70	6.39	17.63	70.66	100
사업소득세	0	0.01	0.45	1.09	1.89	3.32	6.92	12.83	22.53	50.96	100
근로+사업소득세	0	0	0.23	0.71	1.39	2.54	4.94	9.95	20.64	59.60	100

주: 1.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소득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모두 포함한 경우를 모집단으로 하여 분석

####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11

〈표 IV-3〉은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합산소득은 소득자 1인당 평균 2,1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519만원으로 합산소득의 70.2%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소득은 646만원으로 합산소득의 29.8%로 추정되었다. 소득세(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는 1인당 평균 85만 2천원을 부담하여 합산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3.94%로 추정되었다. 합산소득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은 각각 3.13%와 6.89%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다. 사업소득의 비중이 합산소득의 약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이 근로소득세의 2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자 1인당 소득보다 사업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표 IV-3〉에 의하면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 구성에서는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두배 이상 크지만 이는 사업소득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소득유형별 소득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약 20% 정도 크다. 〈표 IV-5〉와 〈표 IV-6〉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062만원과 2,049만원으로 전자가 소폭 크다.

둘째,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범위와 크기가 매우 작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면 전자보다 후자의 세부담이 훨씬 크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탈루로 인해 실제보다 소득이 축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 후자의 세부담이 전자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한다.

〈표 IV-4〉 소득종류별 중위수, 평균, 표준분차(개인 기준)

(단위: 원)

	소득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추정소득	신고소득		
중위수	15,376,296	20,299,774	14,962,901	94,318	0
평균	21,277,568	24,184,407	18,133,477	698,780	1,486,231
표준편차	19,827,440	22,158,077	16,624,588	2,022,581	2,549,860

주: 1.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하여 추정한 결과임.

2. 근로소득세의 중위수(median)는 중위소득자의 중위소득세 부담을 나타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의 중위수는 실제소득에 대한 추정소득 기준 중위수 소득자의 신고소득 및 사업소득세를 나타냄.

#### 나. 근로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본항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근로소득세에만 국한하기로 한다<sup>26)</sup>.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2009년 자료로 환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62만원이고, 근로소득세 부담은 평균 64만 8천원으로 실효근로소득세부담률은 3.14%로 추정되었다.

26) 근로소득자 가운데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포함)도 함께 획득하는 소득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상호비교하여 소득공제체계의 불공평 여부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종류, 즉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을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배분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의 경우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료손실로 인한 표본의 크기 감소 정도가 작으므로 소표본 특성(small sample properties)으로 인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본항에서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분포 및 세부담 분포구조를 분석한다.

####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13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계층(개인기준)을 10분위로 분류해 본 결과, 하위 10%(1분위)의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5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소득이 0원인 사람들은 표본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1분위 근로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51만원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은, 이들 대부분이 부분취업, 불완전취업, 기간중 신규취업이나 은퇴, 실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분위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약 573만원으로 추정된다. 1~3분위의 경우에는 1명의 예외도 없이 1인당 평균근로소득이 면세 점보다 낮아 근로소득세 부담 평균이 0원으로 추정되었다. 4분위 이상부터는 근로소득세 부담 평균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2>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중 면세자 비율이 45.0%로 추정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4분위와 5분위의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면세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5> 근로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 부담 분포  
(개인 기준)

(단위: 천원, %)

분포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로소득	510	2,423	5,726	9,590	13,265	17,334	22,385	30,001	40,971	64,008	20,624
근로소득세	0	0	0	12	39	93	163	402	1250	4520	648
실효소득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로소득세	0	0	0	0.12	0.29	0.54	0.73	1.34	3.05	7.06	3.14
비중	1	2	3	4	5	6	7	8	9	10	계
근로소득	0.25	1.18	2.78	4.65	6.43	8.41	10.85	14.55	19.87	31.04	100
근로소득세	0	0	0	0.18	0.59	1.44	2.52	6.2	19.28	69.73	100

주: 1.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소득계층은 사업소득이 0원인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개인기준 근로소득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근로소득도 빠르게 증가하여 상위 10%(10분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6,401만원, 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평균 452만원, 실효근로소득세 부담률은 7.06%로 추정되었다. 10분위 근로소득 비중이 31.0%인 데 비해 근로소득세 부담 비중은 69.7%로 세부담 비중이 소득 비중의 2배를 상회할 정도로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다. 사업소득계층별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본항에서는 (근로소득이 0원인) 사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하였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총액기준으로 2,409만원, 이 중 세무신고시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은 평균 1,810만원이고 그에 따른 1인당 사업소득세 부담은 약 14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실효사업소득세부담률은 추정 총소득 대비 평균 6.17%이고 신고소득 대비 8.21%로 추정되었다.

사업소득 분위별 소득세 부담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1분위만 사업소득세 부담 평균이 0원이고 2분위부터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39.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표 IV-2〉 참조)됨에도 불구하고 분위 평균 사업소득세 부담이 0원인 분위가 1분위에 그칠 정도로 좁지만, 2~5분위의 사업소득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업소득세 면세자임을 시사해준다.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세의 경우 세부담의 집중도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세의 면세점이 낮은 것보다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27)</sup>.

27)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사업소득세의 세부담 집중도가 근로소득세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자영업자 중 최상위층의 최고소득자가 표본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최고소득 사업자들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수집시에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큰 비율로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15

〈표 IV-6〉 사업소득분위별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개인 기준)

(단위: 천원, %)

분포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사업소득(추정)	673	3,109	6,751	11,952	17,599	22,815	28,073	34,688	43,696	71,502	24,087
사업소득(신고)	512	2,496	5,319	9,189	13,165	17,065	20,966	26,166	32,661	53,452	18,100
사업소득세	0	1	93	319	533	837	1,297	2,043	2,962	6,777	1,487
실효소득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추정소득 대비	0	0.04	1.38	2.67	3.03	3.67	4.62	5.89	6.78	9.48	6.17
신고소득 대비	0	0.05	1.75	3.47	4.05	4.91	6.19	7.81	9.07	12.68	8.21
비중	1	2	3	4	5	6	7	8	9	10	계
사업소득(추정)	0.28	1.29	2.8	4.96	7.31	9.47	11.65	14.4	18.14	29.68	100
사업소득(신고)	0.28	1.38	2.94	5.08	7.27	9.43	11.58	14.46	18.04	29.53	100
사업소득세	0	0.01	0.63	2.15	3.59	5.63	8.72	13.74	19.92	45.59	100

주: 1.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소득계층은 근로소득이 0원인 사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라. 소득계층별 근로·사업소득세 부담의 비교: 수평적 형평을 중심으로

본항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현행 세제하에서 사업소득의 소득탈루를 감안한 상태에서 추정되는 각각의 소득세 부담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럼으로써 실제소득(근로소득)과 추정소득(사업소득)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세 부담의 차이를 수평적으로 비교하여 수평적 형평 여부를 분석한다.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100개 구간을 상정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추정치)의 값이 해당 구간과 일치할 경우 예상되

소득을 과소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상기의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검증할 수 없어 안타깝다.

는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부담의 국지적 평균치(local mean)를 산출하였다<sup>28)</sup>.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경우 모두에서 소득 대비 세부담 액수가 전체적으로는 증가(우상향)하지만 국지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V-1] 참조). 이는 각 소득자별로 부양가족 수와 노인·부양가족 수,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 차이 등 소득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IV-2]에서는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소득자의 실제소득(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추정소득(사업소득자의 경우)에 대한 추정소득세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적으로는 각 소득자의 실제소득(또는 추정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대체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렇지만 국지적·부분적으로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단조적(monotonic)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양가족의 규모 차이, 연령별 차이 등에 따른 인적공제의 차이, 의료비,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에 기인하는 보험료 지출 등 각종 비용공제적 성격의 공제 차이에 기인한다. 가상적으로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소득자가 보험료 지출액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세부담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달리 소득수준이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소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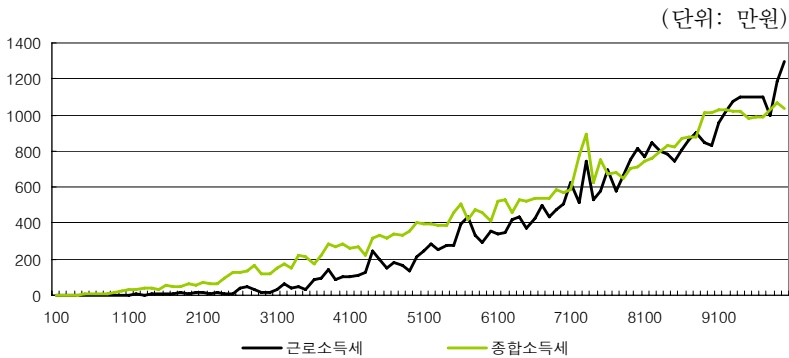
---

28) 국지적 평균소득세 부담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4,900명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1,230명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각 구간에 이웃한 관측치(nearest neighbor)를 평균한 값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 추정치는 최린추정치(nearest neighbor estimates)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총체적인 소득세 부담 중에서 어떤 비율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배분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함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납세자에 대한 소득과 세부담으로 환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소득자와 관련한 세부담 분포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이들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합산과세에 따른 편의(bias)로 인해 분석결과의 일치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17

향이 소득수준의 대소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특별공제의 차이에 의해 세부담이 국지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부 관찰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림 IV-2]와 같이 국지적으로 톱니바퀴 모형의 구조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라 우상향하면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2]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의 차이  
(개인 기준)



주: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2009년 세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이에 대해 실제의 서베이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가상적으로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테면 가상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여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톱니바퀴형 그래프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종류간 특성 차이에 의한 세부담 차이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비지출구조의 차이에 의한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체계 자체가 소득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적특성의 차이,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까지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가상적인 상황

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전제로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상태의 가공자료 대신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서베이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소득구간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 부담을 상회하지만, 7천만~8천만원 부근에서는 양자의 세부담이 비슷해지며, 9천만원 이상에서는 오히려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IV-2]에서는 그러한 것이 세부담 곡선의 교차로 나타난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서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무거운 이유는 소득공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공제의 허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의 차이에 의한 면세점 하락 요인 등이 더 크다. 암묵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에 비해 억제해온 이유가, 소득탈루에 의한 세부담 경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완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과표양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8천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에서는 사업소득의 탈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허용 억제에 따라 추정 사업소득 대비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오히려 높다.

그런 차이가 소득수준 8천만~9천만원 사이에서는 양자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부담 수준이 서로 엇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세부담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동일 액수의 소득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소득 탈루에 기인한다. 이런 관계는 소득공제나 소득탈루율 등을 모두 포괄하여 최고소득구간의 최종적인 한계소득세실효세율을 비교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이 35%이다. 5%의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효한계세율은 33.25%로 줄어든다(주민세 포함시 36.575%). 반면에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포착률을 2007년 추정치 73.41%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업소득자가 평균적으로 체감하는 실효소득세율은 명목최고세율(35%)의 73.41%, 즉 약 25.69%(주민세를 포함하면 약 28.26%)이다. 사업소득의 최고한계실효세율이 근로소득의 최고한계실효세율보다 상당히 낮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초소득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의 실효세부담이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가벼워진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사업소득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포착률이 높아진다면 사업소득자들의 최고한계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에 근접하면 양자간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만약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95%를 초과하면 항상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 3.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의 과세형평 기여도 평가

#### 가. 비교분석

본항에서는 사업소득세 분포를 살펴보면서 최근 과표양성화의 급진 진이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 형평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영수증 복권제도의 실시,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의식 제고,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과표양성화 노력 향상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또는 소득신고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는 것이 조세전문

가 및 과세당국들의 거의 공통적인 견해이다<sup>29)</sup>.

개인소득세가 누진과세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신고율의 상승은 곧 사업소득세 누진분포구조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층별로 사업소득세 부담의 증가패턴도 비대칭(또는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의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한편,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 증가폭의 절대수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IV-3]에서 보듯이 사업소득세 신고율이 가상적으로 5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상승한다고 할 때 소득수준별 종합소득세 부담 패턴, 즉 세부담 곡선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업소득신고율(포착률)이 가상적으로 50%였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추정소득이 5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경계로 하여 그 이하의 소득수준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사업소득세 부담이 더 크지만, 그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세부담 구조가 역전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과중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가상적으로 소득포착률이 60%인 경우에는 5천만원대 후반~6천만원 부근에서 세부담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포착률이 70% 초반(현행)에서는 9천만원대 부근에서 세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사업소득포착률이 80%에 이르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전현상은 1억원 부근에서 나타난다. 위의 경우 모두에서 종국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사업소득세 부담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사업소득포착률이 높아질수록 소득종류별로 소득세 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소득수준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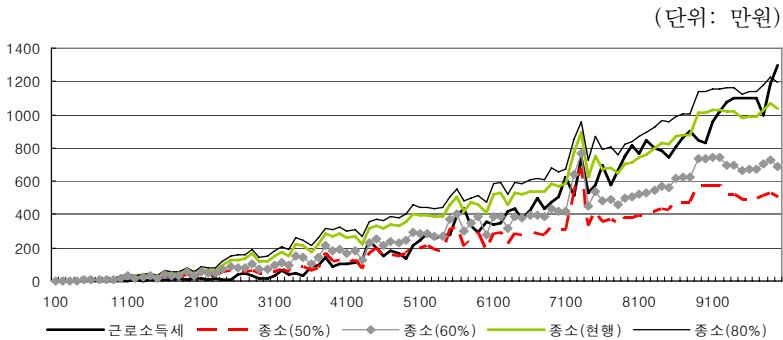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최고한계소득공제율이 5%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사업소득포착률이 95%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만 어떠한 소득수준에서도 세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업소득포착률이 95%

29) 과표양성화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과표양성화가 진전되었음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21

에 미달한다면 세부담의 역전현상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소득포착률이 95%에 도달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세부담의 역전현상은 현실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현실에서는 과표양성화율이 100%보다 낮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부담의 역전현상은 위에서 검토한 것보다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 한편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최고한계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최고한계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림 IV-3] 사업소득 포착률 변화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비교  
(개인 기준)



주: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2009년 세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 나. 원인분석

이상의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소득종류별로 실효세부담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사업소득세의 과표탈루와 소득종류별 소득공제 체계의 차별적·

차등적 적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사업소득포착률이 약 50%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30)</sup>. 현행 소득세 체계와 1990년대 중반의 근로소득세 체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사업소득세의 소득탈루로 인한 사업소득세 부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최소한으로 축소적용한 것은 소득유형별 소득세 부담의 형평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가상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업소득포착률이 50% 수준이라고 한다면 5천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에서는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설정된 현행의 사업소득세 공제체계와 근로소득세 체계가 거의 비슷한 소득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주므로 소득종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평 과세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천만원 이상의 범주에서는 사업소득세 부담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무거워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업소득포착률이 상승하면서 완화되고 있다. 최근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급진전되었다. 이는 5천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소득세 부담의 형평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작용으로 5천만원 이하의 중·저소득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과중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종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소득·동일세금의 원칙'을 통해 과세 형평을 제고해주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체계의 개편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또는 양자의 조합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공제 부분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개편의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득공제 수준이

30) 성명재(1999) 참조.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포착률의 상승 추세와 결부하여 인적공제 및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조정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소득종류별 소득세 과세의 형평 효과 분석

##### 가. 문제의 제기

2000년 이후 사업소득세의 과세자 수의 급증 및 이를 크게 상회하는 종합소득세수의 급증은 간접적으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시사한다. 앞의 제3절에서는 사업소득 과표양성화율, 즉 사업소득신고율(또는 포착률)의 상승이 세부담 분포에 미친 영향과 분배구조에 미친 형평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절에서는 암묵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공제체계가 역으로 과세소득 종류별 세부담의 형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체계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이다.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자본에 대한 비용처리를 통해 일종의 소득공제와 효과가 유사한 비용공제가 허용되고 있는 반면에 근로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되는 부분이 없다. 물론 물적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응하여 인적자본의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적자본의 형성기간과 소득발생기간 사이의 시차 등에 따라 비용 성격의 소득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소득의 물적자본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응하는, 일종의 인적자본에 대한 비용공제적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일부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부의 성실신고사업 소득자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만약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와 여타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각각 100만원과 60만원의 표준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공제상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비용공제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공제 항목, 즉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의 공제수준 차이)의 존재가 사업소득의 탈루에 기인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호간의 소득세 부담의 차별적 요소를 고려해주는 소득공제 요소로 볼 수 있다.

최근 사업소득포착률도 크게 신장되는 등 소득세의 제반 과세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실효과세율 교정을 위한 소득공제의 적정차등 수준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행의 소득종류별 소득공제의 차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소득종류별 소득세 부담의 차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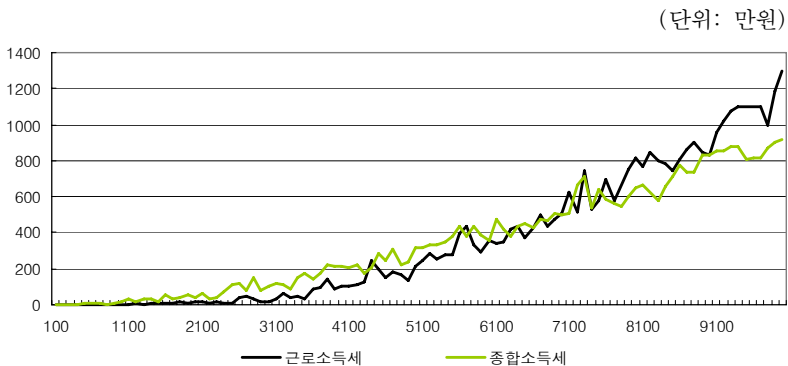
#### 나.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 허용시의 효과분석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사이의 소득수준별 세부담 차이는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만약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도 표준공제 대신 특별공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표 IV-7> 또는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소득수준이 6천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에 양자간의 소득세 부담 격차가 현저하게 축소된다. 6천만~7,500만원 사이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양자의 소득세 부담이 대동소이하다. 그 이상의 소득자들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사업소득자보다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중·저소득층에서는 두 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격차가 축소되어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된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미 최고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더 높음<sup>31)</sup>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은 최고소득층에서의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더욱 저해하는 형태로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특별공제의 허용이라는 하나의 정책대안이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의 형평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중·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에게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줌으로써 양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수준이 약 6천만원 이하(신고소득으로는 평균적으로 약 4천만원 수준) 이하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형평 제고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V-4] 사업소득세 특별공제 허용시의 소득세 부담 비교  
(개인 기준)



주: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2009년 자료로 환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소득자에게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특별공제제도를 허용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임.

31) 이런 차이는 최고소득층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과 사업소득세의 소득탈루율(2007년 현재 30% 내외 수준으로 추정)의 차이에 기인한다.

〈표 IV-7〉 사업소득세에도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특별공제 허용시의  
소득세 부담(개인 기준)

(단위: 만원)

소득 수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100	0	0
500	0	5
1,000	2	16
2,000	15	42
3,000	18	104
4,000	102	210
5,000	213	315
5,500	275	379
5,600	399	436
5,700	432	382
5,800	330	434
5,900	294	384
6,000	356	355
6,100	343	477
6,200	349	418
6,300	417	381
6,400	437	435
6,500	371	447
6,600	426	426
6,700	497	476
6,800	436	470
6,900	473	510
7,000	506	495
7,100	625	506
7,200	515	665
7,300	740	713
7,400	527	541
7,500	579	641
7,600	699	582
7,700	580	564
7,800	663	545
7,900	752	602
8,000	812	652
9,000	834	831
10,000	1,299	918

- 주: 1. 기준 소득 수준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부담은 2009년 환산자료를 토대로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된 추정치를 토대로 근린추정법(nearest neighbor estimation)을 응용하여 해당 기준금액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추정값을 평균하여 추정된 수치임.  
2. 음영처리된 부분은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중 작은 경우를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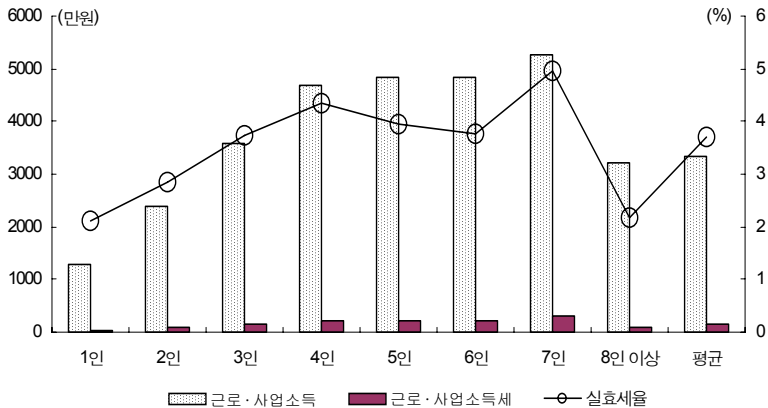
## 5. 가구규모별 소득세 부담 구조

### 가.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분포

근로·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의 가구원 수별 평균치 분포를 보면, 1~2인 가구와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평균치가 전체 평균소득을 하회하고 3~7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 평균소득이 높다. 2008년 현재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가구당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각각 1,278만원과 2,383만원으로 전체 평균치 3,337만원의 38.3%와 71.4%에 불과할 정도로 평균 소득수준이 낮다.

가구의 전체 평균연령이 50.1세이고 대부분의 가구 평균은 40대이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각각 57.4세와 55.3세로 월등하게 높다. 따라서 1~2인의 소수자가구에서는 은퇴가구 또는 고령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2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평균이 여타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5] 가구원 수별 근로·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실효세부담률 분포 (2008년 가구 기준)



〈표 IV-8〉 가구원 수별 근로·종합소득 분포(가구 기준)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평균
1982	0	160	208	227	228	253	267	229	225
1983	0	170	212	251	260	272	325	268	247
1984	0	224	224	271	315	305	333	318	276
1985	0	204	285	320	321	318	357	364	305
1986	0	245	297	358	380	397	345	397	344
1987	0	292	352	413	466	464	528	520	410
1988	0	369	409	500	572	592	552	615	495
1989	0	411	509	576	628	682	759	774	571
1990	0	449	594	701	717	846	792	961	674
1991	0	524	713	849	926	896	989	973	812
1992	0	632	786	1,011	1,068	964	945	1,181	933
1993	0	778	988	1,113	1,119	1,265	1,062	1,254	1,056
1994	0	849	1,086	1,251	1,250	1,228	1,370	1,777	1,166
1995	0	976	1,256	1,397	1,382	1,445	1,960	1,482	1,316
1996	0	984	1,380	1,580	1,545	1,651	1,764	1,806	1,449
1997	0	1,060	1,466	1,631	1,610	1,834	2,227	1,441	1,518
1998	0	946	1,216	1,420	1,426	1,696	1,419	1,440	1,309
1999	0	845	1,243	1,507	1,383	1,551	1,692	1,873	1,327
2000	0	1,023	1,271	1,612	1,528	1,423	1,621	1,443	1,413
2001	0	970	1,440	1,775	1,675	1,789	1,894	1,343	1,532
2002	0	1,106	1,599	1,893	1,896	2,151	1,277	1,222	1,657
2003	0	1,960	2,997	3,598	4,060	4,060	4,258	4,831	3,167
2004	0	2,181	3,101	3,951	4,135	4,394	4,582	6,083	3,368
2005	0	2,099	3,224	4,032	4,285	4,332	5,313	5,746	3,401
2006	1,205	2,147	3,404	4,232	4,359	4,463	3,267	4,878	3,144
2007	1,359	2,286	3,662	4,513	4,680	4,771	5,442	3,304	3,297
2008	1,278	2,383	3,588	4,689	4,849	4,848	5,258	3,199	3,337

주: 1982~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전 가구 기준임. 단,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함.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29

〈표 IV-9〉 가구원 수별 가구주 평균연령 분포

(단위: 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평균
1982	0	37.3	35.4	36.8	39.7	42.1	41.1	41.5	38.4
1983	0	36.7	36.5	37.3	40.1	42.2	43.4	40.5	38.8
1984	0	35.0	34.4	37.2	40.1	41.3	40.0	43.0	37.9
1985	0	35.8	34.5	37.5	41.5	42.0	42.6	43.0	38.5
1986	0	34.7	36.0	38.0	41.3	42.5	44.1	42.4	38.8
1987	0	36.2	35.5	38.1	40.5	41.5	42.7	43.9	38.5
1988	0	36.6	36.6	38.6	41.3	41.7	41.2	42.4	38.9
1989	0	36.6	36.1	38.1	41.6	41.5	43.9	42.4	38.7
1990	0	38.8	36.4	38.7	41.6	41.5	42.2	44.8	39.2
1991	0	40.4	37.4	39.0	42.2	43.3	43.0	42.4	39.9
1992	0	40.1	38.6	39.7	41.9	43.3	43.0	39.7	40.2
1993	0	40.5	37.7	39.6	41.8	42.9	44.1	45.5	39.9
1994	0	44.2	39.3	40.3	42.7	43.7	45.0	44.6	41.2
1995	0	44.9	40.3	40.6	42.4	44.5	45.3	42.9	41.6
1996	0	46.2	42.3	41.2	42.8	43.8	42.4	46.8	42.5
1997	0	45.6	43.6	41.5	43.2	44.4	44.6	46.9	43.1
1998	0	45.4	42.4	40.5	42.9	44.5	47.2	53.8	42.3
1999	0	47.2	43.3	41.5	43.1	44.9	46.2	48.0	43.2
2000	0	48.4	44.7	42.1	43.7	45.5	49.2	52.5	44.2
2001	0	49.7	44.9	42.4	44.0	47.1	48.1	49.1	44.8
2002	0	50.7	45.9	42.5	44.1	45.1	49.6	44.0	45.4
2003	0	52.7	45.0	42.3	43.4	45.4	46.0	36.1	45.4
2004	0	52.3	45.6	43.3	43.4	44.2	50.9	44.1	46.0
2005	0	53.8	46.8	43.5	44.1	43.6	46.4	39.0	46.9
2006	56.1	54.0	47.0	44.0	45.0	45.3	43.6	39.5	48.8
2007	55.7	54.3	47.0	44.0	44.2	47.5	45.5	60.5	49.1
2008	57.4	55.3	48.3	44.6	44.5	47.2	39.9	49.5	50.1

주: 1982~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전 가구 기준임. 단,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함.

〈표 IV-10〉 가구원 수별 근로·사업소득세 분포(가구 기준)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평균
1982	0	6.2	7.1	10.2	13.1	13.9	16.6	20.0	11.3
1983	0	4.9	6.5	9.3	12.3	14.6	15.3	12.3	10.3
1984	0	6.9	6.8	13.1	14.3	17.6	21.8	16.9	12.7
1985	0	5.1	9.6	16.4	19.8	18.5	27.8	22.2	15.7
1986	0	8.0	11.8	20.0	19.5	24.4	27.2	38.9	18.2
1987	0	9.7	15.4	22.8	28.3	32.2	27.0	27.1	22.1
1988	0	15.2	20.3	32.6	41.2	38.5	44.3	54.2	31.3
1989	0	15.8	23.2	35.2	38.9	38.0	54.9	47.1	32.3
1990	0	17.4	29.4	42.0	45.4	46.0	70.0	45.9	38.7
1991	0	19.7	25.7	42.2	56.3	51.6	52.5	59.2	40.5
1992	0	27.7	40.6	61.5	70.1	80.4	85.4	61.9	57.1
1993	0	25.5	47.0	57.6	66.4	57.5	101.8	159.0	54.4
1994	0	31.0	54.5	70.1	78.8	81.3	101.1	148.7	64.5
1995	0	39.1	62.7	84.2	85.2	82.7	138.1	146.3	74.3
1996	0	40.2	63.2	89.5	81.0	90.1	88.9	148.5	75.4
1997	0	39.0	68.9	92.7	98.2	75.4	94.7	226.5	79.2
1998	0	31.7	59.6	72.4	78.7	94.2	89.6	80.1	64.9
1999	0	29.1	57.6	83.5	82.3	86.0	86.5	111.4	68.7
2000	0	51.8	69.1	104.4	115.6	96.7	113.3	109.3	88.0
2001	0	47.1	85.7	125.9	123.8	157.6	143.4	172.7	102.4
2002	0	51.7	89.6	113.8	115.1	139.3	98.8	130.2	95.6
2003	0	51.2	96.8	127.0	146.6	124.4	142.2	136.8	105.4
2004	0	67.0	100.0	152.6	139.3	127.2	157.7	268.9	117.7
2005	0	69.1	114.8	161.0	164.3	157.6	369.7	353.0	128.6
2006	37.9	75.8	145.2	200.4	190.6	189.0	77.4	210.0	134.9
2007	43.8	86.1	178.0	230.5	205.9	201.6	454.2	86.8	152.3
2008	38.1	90.3	159.6	223.1	210.5	202.6	300.7	79.9	145.3

주: 1982~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전 가구 기준임. 단,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함.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31

〈표 IV-11〉 가구원 수별 과세소득 대비 근로·사업소득세 실효세율 분포(가구 기준)

(단위: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평균
1982	0	3.88	3.41	4.51	5.76	5.48	6.19	8.72	5.02
1983	0	2.9	3.08	3.72	4.75	5.38	4.7	4.6	4.16
1984	0	3.09	3.04	4.84	4.53	5.76	6.55	5.32	4.58
1985	0	2.52	3.36	5.13	6.16	5.8	7.8	6.1	5.15
1986	0	3.26	3.98	5.59	5.13	6.14	7.9	9.79	5.28
1987	0	3.31	4.37	5.52	6.08	6.93	5.1	5.21	5.39
1988	0	4.12	4.97	6.53	7.2	6.5	8.03	8.81	6.33
1989	0	3.85	4.55	6.11	6.19	5.56	7.23	6.08	5.65
1990	0	3.86	4.95	5.99	6.33	5.44	8.84	4.77	5.74
1991	0	3.76	3.61	4.97	6.07	5.76	5.31	6.08	4.98
1992	0	4.38	5.17	6.09	6.57	8.34	9.03	5.24	6.12
1993	0	3.27	4.76	5.17	5.93	4.54	9.59	12.68	5.16
1994	0	3.65	5.01	5.61	6.3	6.62	7.38	8.37	5.53
1995	0	4.01	4.99	6.03	6.17	5.72	7.04	9.87	5.65
1996	0	4.09	4.58	5.66	5.24	5.46	5.04	8.23	5.2
1997	0	3.68	4.7	5.68	6.1	4.11	4.25	15.71	5.22
1998	0	3.35	4.9	5.1	5.52	5.55	6.31	5.56	4.96
1999	0	3.45	4.64	5.54	5.95	5.54	5.11	5.95	5.17
2000	0	5.06	5.43	6.47	7.57	6.79	6.99	7.57	6.23
2001	0	4.85	5.95	7.09	7.39	8.81	7.57	12.85	6.68
2002	0	4.68	5.6	6.01	6.07	6.47	7.73	10.65	5.77
2003	0	2.61	3.23	3.53	3.61	3.06	3.34	2.83	3.33
2004	0	3.07	3.23	3.86	3.37	2.9	3.44	4.42	3.49
2005	0	3.29	3.56	3.99	3.84	3.64	6.96	6.14	3.78
2006	3.15	3.53	4.27	4.74	4.37	4.24	2.37	4.3	4.29
2007	3.23	3.77	4.86	5.11	4.4	4.23	8.35	2.63	4.62
2008	2.98	3.79	4.45	4.76	4.34	4.18	5.72	2.5	4.35

주: 1982~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전 가구 기준임. 단,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함.

소수자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수준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면세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쳐 최저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자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현재 가구당 평균 근로·사업소득세 부담은 145만 3천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실효소득세부담률은 과세대상 근로·사업소득 평균(3,337만원) 대비 약 4.4%로 추정된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각각 38만 1천원과 90만 4천원, 실효소득세부담률은 3.0~3.8% 수준으로 추정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평균 4,689만원인데 이 중 223만 1천원의 소득세를 부담하여 실효소득세부담률은 4.8%로 추정된다. 7인 가구 또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표본 수가 매우 적어 과세대상소득, 소득세 부담, 가구주 평균 연령 등이 시계열적으로 상당히 들쭉날쭉하여 일관된 모습과 다소 거리가 있다.

#### 나. 가구규모별 실효소득세부담 상대구조

〈표 IV-12〉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각 가구원 수별 근로·사업소득세 부담의 상대비를 전체 평균 대비 각 가구원 수별 과세대상 소득 평균의 상대비로 나눈 값을 표시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frac{\text{가구원 수별 소득세 부담}}{\text{전체 평균 소득세 부담}} \div \frac{\text{가구원 수별 평균 총소득}}{\text{전체 평균 총소득}}$$

이 식을 변형하면 아래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 \frac{\text{가구원 수별 소득세 부담}}{\text{가구원 수별 평균 총소득}} \div \frac{\text{전체 평균 소득세 부담}}{\text{전체 평균 총소득}} \\ &= \frac{\text{가구원 수별 실효세부}}{\text{전체 실효세부담률}} \end{aligned}$$

위의 식은 각 가구원 수별 실효세율을 전체 실효세율로 나눈 값이다. 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가구규모의 평균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으면 반대의 함의를 지닌다. <표 IV-12>에서는 가구원 수별로 상대비가 다양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원 수 또는 가구규모와 실효소득세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종합소득세율 체계가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커지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상대비가 점차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다줌에 따라 <표 IV-12>에서 보듯이 가구규모별로 상대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2>에 의하면 미소하나마 3~5인 가구에서 상대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2인 가구에 비해 3~5인 가구에서 고소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어우러짐으로써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구규모 또는 부양가족 수의 차이에 따른 소득공제의 차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의 변화가 가구규모의 차이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과다 또는 과소해짐에 따라 상대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표 IV-8>, <표 IV-10>, <표 IV-11>의 자료만으로는 가구규모(보다 정확히는 부양가족 공제자의 수)의 차이에 의한 인적공제 수준의 차이가 과소한지 또는 과다한지의 여부는 판별하기 곤란하다. 3~5인 가구의 경우 <표 IV-12>의 상대비가 1을 조금 초과하고 있다. 1~2인 가구에 비해 3~5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인적공제가 과소하기 때문에 가구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최적인적공제 수준과 비교하여 현행 인적공제 수준이 과소한지 또는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별하기는 곤란하다. 즉, 전자의 경우(과소)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비를 더욱 상승시켜 나타난 결과가 <표 IV-12>에 나타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최적수준에서는 상대비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적공제로 인해 상대비가 최적수준보다 작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표 IV-12〉 가구원 수별 전체 평균 소득세 대비 소득세 상대비 ÷ 전체 평균총소득 대비 총소득 상대비의 분포(가구 기준)

(단위: 배)

	1	2	3	4	5	6	7	8+	평균
1982		0.77	0.68	0.9	1.15	1.09	1.23	1.74	1
1983		0.70	0.74	0.89	1.14	1.29	1.13	1.11	1
1984		0.67	0.67	1.06	0.99	1.26	1.43	1.16	1
1985		0.49	0.65	1.00	1.20	1.13	1.52	1.19	1
1986		0.62	0.75	1.06	0.97	1.16	1.49	1.85	1
1987		0.61	0.81	1.02	1.13	1.29	0.95	0.97	1
1988		0.65	0.78	1.03	1.14	1.03	1.27	1.39	1
1989		0.68	0.81	1.08	1.10	0.98	1.28	1.08	1
1990		0.67	0.86	1.04	1.10	0.95	1.54	0.83	1
1991		0.76	0.72	1.00	1.22	1.16	1.06	1.22	1
1992		0.72	0.84	0.99	1.07	1.36	1.48	0.86	1
1993		0.63	0.92	1.00	1.15	0.88	1.86	2.46	1
1994		0.66	0.91	1.01	1.14	1.20	1.33	1.51	1
1995		0.71	0.88	1.07	1.09	1.01	1.25	1.75	1
1996		0.79	0.88	1.09	1.01	1.05	0.97	1.58	1
1997		0.71	0.90	1.09	1.17	0.79	0.82	3.01	1
1998		0.67	0.99	1.03	1.11	1.12	1.27	1.12	1
1999		0.67	0.90	1.07	1.15	1.07	0.99	1.15	1
2000		0.81	0.87	1.04	1.21	1.09	1.12	1.22	1
2001		0.73	0.89	1.06	1.11	1.32	1.13	1.92	1
2002		0.81	0.97	1.04	1.05	1.12	1.34	1.85	1
2003		0.78	0.97	1.06	1.08	0.92	1.00	0.85	1
2004		0.88	0.92	1.10	0.96	0.83	0.98	1.26	1
2005		0.87	0.94	1.06	1.01	0.96	1.84	1.62	1
2006	0.73	0.82	0.99	1.10	1.02	0.99	0.55	1.00	1
2007	0.70	0.82	1.05	1.11	0.95	0.91	1.81	0.57	1
2008	0.68	0.87	1.02	1.09	1.00	0.96	1.31	0.57	1

주: 위의 상대비는  $\frac{\text{가구원 수별 소득세 부담}}{\text{전체 평균 소득세 부담}} \div \frac{\text{가구원 수별 평균 총소득}}{\text{전체 평균 총소득}}$  을 나타냄. 이 경우 상대비는 가구원 수별 평균실효세율 ÷ 전체 평균 실효세율을 나타냄. 따라서 상대비가 1보다 크면 소득세 실효부담률이 평균보다 높고, 그 이하이면 평균보다 작음을 의미.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35

〈표 IV-13〉 가구원 수별 가구당 평균 취업인 수 분포(가구 기준)

(단위: 명)

	1	2	3	4	5	6	7	8+	평균
1982	0	0.82	0.98	1.05	1.23	1.30	1.51	1.92	1.16
1983	0	0.92	0.93	1.07	1.26	1.28	1.68	1.77	1.16
1984	0	0.96	0.94	1.16	1.29	1.40	1.74	1.74	1.20
1985	0	0.92	1.03	1.17	1.28	1.43	1.53	1.69	1.20
1986	0	0.95	1.15	1.21	1.42	1.55	1.80	2.25	1.30
1987	0	1.09	1.14	1.27	1.53	1.76	2.01	2	1.36
1988	0	1.11	1.21	1.38	1.53	1.83	2.07	2.55	1.42
1989	0	1.06	1.22	1.39	1.63	1.86	1.92	2.76	1.43
1990	0	1.04	1.14	1.34	1.59	1.78	2.10	2.26	1.38
1991	0	1.06	1.18	1.38	1.67	1.90	2.23	2.33	1.44
1992	0	1.09	1.22	1.38	1.71	1.90	2.21	2.19	1.44
1993	0	1.03	1.31	1.48	1.69	1.95	2.68	2.76	1.48
1994	0	1.02	1.32	1.45	1.75	2.05	2.47	3.02	1.47
1995	0	1.10	1.32	1.48	1.80	1.97	2.49	2.80	1.48
1996	0	1.07	1.34	1.54	1.86	2.20	2.22	2.97	1.51
1997	0	1.13	1.42	1.54	1.88	2.06	2.61	2.95	1.54
1998	0	0.99	1.30	1.44	1.77	1.92	2.44	2.87	1.42
1999	0	0.88	1.26	1.41	1.68	1.91	2.62	3.28	1.36
2000	0	1.02	1.29	1.51	1.83	1.97	2.38	2.74	1.44
2001	0	0.91	1.35	1.53	1.76	2.15	2.27	2.53	1.43
2002	0	0.97	1.42	1.54	1.83	2.12	2.22	2.49	1.45
2003	0	0.93	1.42	1.57	1.80	2.24	2.48	2.40	1.45
2004	0	0.96	1.42	1.61	1.87	2.30	2.04	2.63	1.46
2005	0	0.93	1.45	1.63	1.85	2.00	1.98	2.81	1.45
2006	0.45	0.95	1.43	1.61	1.88	2.13	2.30	2.73	1.28
2007	0.47	0.95	1.42	1.64	1.79	2.12	2.99	2.47	1.26
2008	0.44	0.90	1.37	1.62	1.78	2.13	2.43	2.54	1.21

주: 1982~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전 가구 기준임. 단,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함.

1~2인 가구와 3~5인 가구 사이의 과세대상소득의 상대비 차이를 고려할 때 소득세실효부담률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1인당 공제수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 IV-13>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취업가구원 수, 즉 근로·사업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는 취업가구원 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단선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즉, 한 가구 내에 여러 명의 소득자가 있다면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최대한 인적공제를 집중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할 것이므로 주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와 동일한 정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최적인적공제 수준하에서도 가구소득의 평균치 차이보다 작은 비율로 실효세율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 소득단계별 소득분포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소득·소비지출 관련 항목이 비례적으로 2%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가상적으로 2009년도의 소득종류별 소득 및 세부담 분포 등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 IV-14>를 얻을 수 있다.

전체 평균을 놓고 볼 때,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수취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소득은 가구당 평균 3,638.5만원이고, 각종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4,011.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세로 가구당 평균 140.6만원을 부담하고 이자·배당소득세와 재산세 등 기타 직접세 18.2만원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163.1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평균 3,689.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가처분소득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보다 50.7만원 많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시장소득보다 훨씬 더 크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배적 관점에서 이런 현

IV. 소득세 부담 구조 및 과세현황 137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전소득 분포의 역진성, 직접세 부담의 누진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표 IV-14〉 소득단계별 소득 및 소득구성 항목 분포

(단위: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544.3	1119.6	1761.5	2348.2	2899.4	3435.2	4121.7	4926.2	6055.5	9174.9	3638.5
+ 사적이전소득	188.5	251.3	239.7	189.1	192.6	234.8	186.5	216.1	167.6	251.7	211.8
민간소득	732.8	1370.9	2001.2	2537.3	3092.0	3670.1	4308.2	5142.3	6223.2	9426.6	3850.3
+ 공적연금	24.5	64.3	59.4	99.8	95.7	94.9	97.4	79.9	114.6	166.2	89.7
+ 기타사회보장수혜	143.2	107.9	80.2	65.1	68.2	57.1	53.1	34.4	65.2	36.7	71.1
+ 공적이전소득	167.7	172.2	139.5	164.9	163.9	152.0	150.5	114.3	179.8	202.9	160.8
+ 이전소득	356.2	423.5	379.2	354.0	356.5	386.8	337.0	330.5	347.4	454.6	372.6
총소득	900.5	1543.1	2140.7	2702.2	3255.8	3822.0	4458.7	5256.6	6402.9	9629.5	4011.1
- 근로·사업소득세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71.8	140.6
- 이자·배당소득세	0.4	2.0	2.6	3.1	1.9	2.3	2.4	2.0	5.1	5.6	2.7
- 소득세	1.2	7.6	17.8	33.6	50.4	72.7	114.1	176.1	282.8	677.4	143.3
- 재산세	2.7	6.5	7.7	9.1	11.3	12.4	14.0	18.5	21.3	51.3	15.5
- 직접조세	3.9	14.1	25.5	42.7	61.7	85.1	128.1	194.6	304.1	728.7	158.8
- 공적연금기여금	2.6	11.5	25.5	44.1	55.2	75.7	100.1	133.9	165	230.6	84.4
- 건강보험료	8.3	19.3	32.2	49.5	58.2	72.9	81.7	101.8	123.6	182.8	73.0
- 기타사회보장기여금	0.1	0.7	2.0	3.2	3.8	5.3	6.2	8.7	11.6	14.6	5.6
- 사회보험료	11.0	31.5	59.7	96.8	117.2	154.0	188.0	244.3	300.2	428.1	163.1
- 직접세	14.9	45.6	85.2	139.5	178.9	239.1	316.1	438.9	604.3	1156.8	321.9
가처분소득	885.6	1497.5	2055.5	2562.7	3076.9	3582.9	4142.6	4817.7	5798.6	8472.7	3689.2

## V. 정책대안 모의실험 및 기대효과

### 1. 정책시나리오와 분석틀

#### 가. 공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분석틀

현행의 소득세제하에서는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소가구와 대가구 사이의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작은 편이다. 소득세제 측면에서 인적공제체계를 중심으로 소득공제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서 공제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공제체계 개편 검토의 대상은 크게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비용공제적 성격의 특별공제,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한다.

정책의 기본 개편방향은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이 소득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포괄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체계의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책의 판단기준은 세수효과,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수직적 형평성),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균형(수평적 형평성), 과표양성화 효과와 소득세 부담의 관계에 기초한 적정 소득공제체계의 확보 등으로 한다.

첫째,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 진전에 따른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현재는 사실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적용<sup>32)</sup>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공제제도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부분적·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둘째, 제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는 일정 소득규모를 경계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일반적으로 중·저소득자 및 일부의 고소득층에서는 사업소득의 탈루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높지만 최고소득층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2009년 현재 근로소득공제의 최고한계공제율이 5%에 이르러 사실상 한계근로소득포착률이 95%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의 소득포착률은 이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사업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고한계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sup>32)</sup>에 대해서도 검토한다<sup>33)</sup>.

셋째, 저출산 또는 핵가족화 심화 문제와 소득세 공제체계 사이에는 얼핏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영향을 받으므로 저출산이나 핵가족화 문제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저출산 추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인구를 확충한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여타 부문에서의 역할을 일부 대체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핵가족화 추세 지연 또는 방지를 통해 노인보양 기능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을 일부 민간에서 더 부담해줄 수 있다면 그 역시 정부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수요를 대체해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부 역할을 대행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32) 일부의 성실사업소득자에 대해 한정하여 특별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성실사업자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33) 2009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최근한계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과 반대방향으로의 개편내용이 제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린 경우에는 저출산 또는 핵가족화 완화 기능으로서 인적공제 조정의 의미도 일부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금액의 상향조정 방안에 대한 간접적인 논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과세자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인적공제)의 확대는 곧 면세점 상승 및 면세자 비율 상승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 개편시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액이나 공제구간, 공제율 등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현재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으므로 과세자 비율 상승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최근의 과표양성화 노력 및 소득공제 수준을 상당 기간 동안 고정시켜온 덕분에 상대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에 비해 오히려 크게 후퇴하여 과세자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세자 비율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소득공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면세자에서 과세자로 전환되는 소득자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일시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점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접근은 막대한 조세저항으로 인해 실현성이 낮다. 상당기간 동안 면세점을 고정시키는 방안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감실효세부담률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각종 공제수준과 세율·공제구간, 공제한도 등을 물가 등에 연동하여 조정하되 초기에는 부분적으로만 연동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성명제·박상원(2008)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정책제언이 이루어졌으며, 정책적 판단만 남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 이 문제는 논외로 한다.

상기의 논거에 기초해 볼 때 소득공제 개편 시나리오는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문제, 근로소득공제율 조정문제,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부분적 축소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중국적으로 분석방법은 현황 및 실태분석, 정책대안의 제시, 모의실험을 통한 예상효과 추정·진단·평가 및 이에 기초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및 기대효과의 제시로 구성한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는 한계세율 변동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를 반영하여 개편에 따른 이차적인 소득 변동 효과도 함께 살펴본다<sup>34)</sup>.

노동공급효과를 반영한 소득변화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Y &= w \cdot L & (1) \\
 &= (1-t) \cdot w \cdot L + t \cdot w \cdot L = DY + TY
 \end{aligned}$$

단, Y: 세전소득

w: 세전(시간당)임금률(분석의 편의상  $w = \bar{w}$  (고정)이라고 가정)

L: 노동공급시간

t: 소득세율

DY =  $(1-t) \cdot w \cdot L = (1-t) \cdot Y$ : 세후소득

TY =  $t \cdot w \cdot L = t \cdot Y$ : 소득세

세후임금률  $(1-t) \cdot w$ 를  $w^*$ 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DY = w^* \cdot L$ 이라고 표현된다.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세후소득함수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ln(w^*)$ 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frac{\partial \ln DY}{\partial \ln w^*} = 1 + \frac{\partial \ln L}{\partial \ln w^*} = 1 + \epsilon, \epsilon: \text{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quad (2)$$

---

34) 한계세율 변동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 및 그에 따른 소득변동 효과의 절대적 크기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효과를 무시해도 연구결과에 큰 영향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한계세율 변동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자연스러운 만큼 이 부분도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다만 분석의 편의상 세전임금률은 소득세 개편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소득세율의 변화에 관계없이 세전임금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화율과 노동공급 변화율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 (한계)세율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세후임금률의 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효과(변화율 기준:  $\frac{\Delta Y}{Y}$ )는 임금탄력성에 세후임금 변화율을 곱한 꼴로 표현된다. 식 (1)로부터  $\Delta Y = \Delta DY + \Delta TY$ 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율 변화( $t_1 \rightarrow t_2$ )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관계가 도출된다.

$$\begin{aligned}\Delta DY &= \{(t_1 - t_2) + (1 - t_2) \cdot \epsilon \cdot w^o\} Y_1, \quad w^o: \text{세후임금 변화율} \\ \Delta TY &= \{(t_2 - t_1) + t_2 \epsilon \cdot w^o\} Y_1 \\ \Delta Y &= \epsilon \cdot w^o \cdot Y_1\end{aligned}$$

세후임금이 변화하면 소득자의 실질소득이 영향을 받는 만큼 소득자들은 실질소득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대신 노동공급의 (세후)임금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차용하여 분석한다<sup>35)</sup>. 임금탄력성은 연구방법 및 가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 가운데 김현숙(2009)에 의하면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추정치는 모형에 따라 남편의 경우 0.01~0.12, 배우자(부인)의 경우 0.04~0.15 수준이다. 여타 연구에 비해 추정치가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이 임금에 따라 노동공급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임금탄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김현숙(2009)의 추정결과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실제로 아래에서 모의실험을 행함에 있어서는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효과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의 범위 가운데 0.10 정도를 채용하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상 남편과

35) 노동공급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Moffitt (1986, 1990), Lee (2004), Lee & Chun(2005), 김현숙·성명재(2007), 김현숙(2009) 등 매우 다양하다.

부인의 구분은 하지 않기로 한다.

## 나. 개편 시나리오

위의 가절에서 논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사업소득세 관련 소득공제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설정한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수평적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한다. 둘째, 고액소득자들의 근로·사업소득세 간의 세부담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액구간에서의 근로소득공제율의 적정화를 통해 양자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기본(인적)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방안들을 조합한 방안을 검토한다.

※ 사업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시나리오

A01안: 표준공제 100만원 허용

A02안: 보험료공제 허용

A03안: 의료비공제 허용

A04안: 교육비공제 허용

A05안: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허용<sup>36)</sup> (근로소득자에 동일

36)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세 가지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이유는, 가계조사원시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유추해낼 수 있는 항목이 이들 세 가지 항목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특별공제 항목 중 이들 항목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기 때문에 이들 항목만을 분석하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계 적용)

※ 근로소득공제율 공제율 조정 시나리오

B01안: 8,800만원 초과 5% → 3%, 1억원 초과 5% → 1%

B02안: 8,800만원 초과 5% → 10%

B03안: 1억원 초과 5% → 10%

B04안: 3천만원 초과 10%,5% → 10%

※ 기본공제 상향조정 + 근로소득공제 하향조정 시나리오

C01안: 기본공제 150 → 200만원

C02안: 기본공제 150 → 250만원

C03안: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 60%

C04안: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 50%

C05안: C01안 + C03안

C06안: C02안 + C04안

※ 상기 시나리오의 조합 시나리오

D01안: 사업소득세 과세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에 특별  
공제 허용 + 근로소득공제율 조정(B04안) + 기본공제 150  
만원→200만원 및 근로소득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60% (C05안)

## 2. 기대효과

### 가. 사업소득자 특별공제 허용 방안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사업소득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한다<sup>37)</sup>.

현행 세제는 암묵적으로 사업소득신고율이 근로소득의 그것보다 상

37) 성명재(2008)에 의하면 사업소득자의 평균소득신고율은 2003년 63.6%에서 2006년 70.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히 낮기 때문에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에 대해서는 후자에 비해 소득공제 수준을 차등하여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역으로 사업소득신고율이 변화된다면 양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해주는 소득공제 수준도 변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경우 형평성 제고방안이라 함은 최근의 사업소득신고율 상승에 부응하여 곧 사업소득세에서의 소득공제 확대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01안은 표준공제 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고, A02~A04안은 각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 A05안은 세 가지를 모두 허용해주는 방안이다.

사업소득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주게 되면 한계세율 하락으로 인해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상 전반적으로 시간당 세전임금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노동공급의 변화율은 곧 소득 변화율로 일치하게 된다.

〈표 V-1〉에서 보듯이 특별공제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허용에 따라 소득의 변화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범위에 따라 가구당 평균 3,235만원에서 1천원~1만3천원 정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세대상 소득의 증가효과는 절대액이 크지 않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해 특별공제를 추가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 세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사업소득자들의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경감의 절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 유인효과의 절대수준도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면세자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세 부담의 경감 여력이 소진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효과와 그로 인한 소득증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인도 전체적으로 소득증가효과의 절대수준이 작게 나타나는 요인이다.

[그림 V-1]에 의하면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범위를 확대할수록 인별 과세소득이 약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만, 약 8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무겁게 나타나는 세부담 측면에서의 역차별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상기의 시나리오로부터 시사점을 찾는다면 인별 과세소득 수준이 약 5천만~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화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양자간의 소득세부담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sup>38)</sup>.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면 근로·사업소득세의 가구당 실효세부담률은 4.35%에서 3.94~4.30%([그림 V-2] 참조)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세율 하락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를 통한 소득 증가를 통해 세경감 효과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소득 증가율이 0.01~0.04%로 미미하여 보전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표 V-1> 참조).

시장소득과 총소득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37400과 0.33971이다. 현행 세제하에서 소득세후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2816으로 시장소득을 분모로 하였을 때 총소득 지니계수 대비 소득세후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하락률)은 3.09%로 추정되었다. 세제개편에 따라 노동공급이 변화한다고 할 때 소득세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본격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최대 0.13%포인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를 허용하면 수평적 형평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V-5> 참조).

38) 다만 과세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이라면, 사업소득 신고율이 약 70% 수준이므로, 신고소득은 평균 약 3,500만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1〉의 계속

변화폭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B03	0	0	0	0	0	0	0	0	0	0	0
B04	0	0	0	0	0	0	0	0	0.1	1.7	0.2
C01	0	0.2	0.5	1.1	1.8	2.4	3.2	2.4	2	4.1	1.8
C02	0.1	0.3	0.8	2.4	3.4	4.3	6.2	6.2	4.5	8.2	3.6
C03	-0.1	-0.1	-0.3	-0.7	-1.0	-0.9	-2.0	-1.3	-1.8	-2.8	-1.1
C04	-0.2	-0.2	-0.5	-1.0	-1.7	-1.5	-3.0	-1.8	-2.5	-4.6	-1.7
C05	-0.1	0	0.2	0.6	0.7	0.9	0.9	0.9	0.2	1.2	0.5
C06	0	0.1	0.4	1.5	2.4	2.9	3.6	2.6	1.5	3.5	1.8
D01	-0.1	-0.1	-0.3	-0.7	-1.0	-0.9	-2.0	-1.3	-1.8	-2.8	-1.1
변화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A01	0	0	0	0.01	0.01	0.01	0.01	0	0	0	0
A02	0	0	0.01	0.02	0.02	0.02	0.02	0	0.01	0.01	0.01
A03	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	0.01	0.01
A04	0	0	0	0.02	0.02	0.01	0.02	0	0.01	0.01	0.01
A05	0	0.01	0.02	0.06	0.07	0.06	0.04	0.02	0.03	0.04	0.04
B01	0	0	0	0	0	0	0	0	0	0	0
B02	0	0	0	0	0	0	0	0	0	0	0
B03	0	0	0	0	0	0	0	0	0	0	0
B04	0	0	0	0	0	0	0	0	0	0.02	0.01
C01	0.01	0.02	0.04	0.06	0.07	0.08	0.08	0.05	0.04	0.05	0.05
C02	0.03	0.04	0.06	0.12	0.13	0.14	0.16	0.14	0.08	0.1	0.11
C03	-0.03	-0.02	-0.02	-0.03	-0.04	-0.03	-0.05	-0.03	-0.03	-0.03	-0.03
C04	-0.05	-0.03	-0.03	-0.05	-0.07	-0.05	-0.08	-0.04	-0.04	-0.05	-0.05
C05	-0.02	0	0.01	0.03	0.03	0.03	0.02	0.02	0	0.01	0.02
C06	-0.01	0.01	0.03	0.07	0.09	0.09	0.1	0.06	0.03	0.04	0.06
D01	-0.03	-0.02	-0.02	-0.03	-0.04	-0.03	-0.05	-0.03	-0.03	-0.03	-0.03

V. 정책대안 모의실험 및 기대효과 149

〈표 V-2〉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근로 · 사업소득세 부담 분포

(단위: 만원)

소득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현행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71.8	140.6	
노동 공급 불변 가정	A01	0.7	5.2	14.5	29.1	46.8	68.6	109.6	171.8	275.5	669.0	139.1
	A02	0.6	5.1	14.0	27.5	44.5	64.8	105.0	166.6	268.7	655.8	135.2
	A03	0.6	5.1	13.9	28.5	45.4	66.5	107.5	168.9	272.1	662.8	137.1
	A04	0.6	5.2	14.2	28.6	44.8	65.7	105.4	166.4	269.3	662.3	136.2
	A05	0.6	4.8	12.6	25.0	38.4	56.5	94.6	153.5	253.9	635.9	127.5
	B01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74.0	140.8
	B02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68.5	140.3
	B03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69.5	140.4
	B04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3.0	273.5	652.6	138.1
	C01	0.6	4.6	12.9	26.0	41.2	61.0	97.5	155.1	255.4	642.0	129.6
	C02	0.4	3.7	11.0	22.2	34.8	52.5	84.5	137.2	233.7	613.4	119.3
	C03	0.9	6.3	16.4	32.5	51.6	75.3	118.8	184.2	291.1	691.8	146.9
	C04	1.1	6.7	17.2	33.6	53.3	78.1	122.6	189.7	297.9	702.6	150.2
	C05	0.7	5.2	14.0	27.7	43.6	65.1	103.7	164.8	268.7	661.7	135.5
	C06	0.5	4.5	12.5	24.5	38.1	58.2	93.0	150.9	253.4	642.2	127.8
	D01	0.5	4.5	11.6	23.0	34.6	52.4	87.3	143.8	243.7	624.5	122.6
현행과 차액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노동 공급 불변 가정	A01	-0.1	-0.4	-0.7	-1.3	-1.7	-1.9	-2.2	-2.2	-2.2	-2.8	-1.5
	A02	-0.1	-0.5	-1.2	-3.0	-4.0	-5.7	-6.7	-7.4	-9.0	-15.9	-5.4
	A03	-0.1	-0.6	-1.3	-1.9	-3.2	-3.9	-4.2	-5.1	-5.6	-8.9	-3.5
	A04	-0.1	-0.4	-0.9	-1.9	-3.7	-4.7	-6.4	-7.6	-8.4	-9.5	-4.4
	A05	-0.2	-0.8	-2.6	-5.5	-10.1	-14.0	-17.1	-20.5	-23.8	-35.9	-13.0
	B01	0	0	0	0	0	0	0	0	0	2.2	0.2
	B02	0	0	0	0	0	0	0	0	0	-3.3	-0.3
	B03	0	0	0	0	0	0	0	0	0	-2.3	-0.2
	B04	0	0	0	0	0	0	0	-1.0	-4.2	-19.2	-2.5
	C01	-0.2	-1.0	-2.3	-4.5	-7.3	-9.5	-14.3	-18.9	-22.3	-29.8	-11.0
	C02	-0.4	-1.9	-4.2	-8.3	-13.7	-18.0	-27.2	-36.9	-44.0	-58.3	-21.3
	C03	0.2	0.7	1.2	2.0	3.0	4.8	7.1	10.2	13.4	20.1	6.3
	C04	0.3	1.1	2.0	3.1	4.8	7.6	10.9	15.6	20.2	30.9	9.6
	C05	-0.1	-0.4	-1.2	-2.8	-4.9	-5.3	-8.0	-9.3	-9.0	-10.1	-5.1
	C06	-0.3	-1.1	-2.7	-5.9	-10.4	-12.2	-18.7	-23.1	-24.3	-29.5	-12.8
	D01	-0.3	-1.1	-3.5	-7.5	-13.9	-18.1	-24.4	-30.2	-34.0	-47.3	-18.0

〈표 V-2〉의 계속

소득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현행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	277.7	671.8	140.6	
노동 공급 변화 가정	A01	0.7	5.2	14.5	29.1	46.8	68.6	109.6	171.8	275.5	669.0	139.1
	A02	0.6	5.1	14.0	27.5	44.6	64.8	105.0	166.6	268.7	656.0	135.3
	A03	0.6	5.1	13.9	28.6	45.4	66.5	107.6	168.9	272.1	663.0	137.1
	A04	0.6	5.2	14.2	28.6	44.8	65.8	105.4	166.4	269.4	662.3	136.3
	A05	0.6	4.8	12.6	25.0	38.5	56.6	94.7	153.6	254.0	636.3	127.6
	B01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74.0	140.8
	B02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68.5	140.3
	B03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4.0	277.7	669.5	140.4
	B04	0.8	5.6	15.2	30.5	48.5	70.4	111.7	173.0	273.5	652.9	138.2
	C01	0.6	4.6	12.9	26.0	41.3	61.1	97.7	155.3	255.5	642.6	129.7
	C02	0.4	3.7	11.0	22.3	35.0	52.6	84.9	137.6	234.0	614.5	119.6
	C03	0.9	6.3	16.4	32.4	51.5	75.2	118.6	184.1	290.9	691.3	146.7
	C04	1.1	6.7	17.2	33.5	53.2	77.9	122.2	189.4	297.5	701.7	150.0
	C05	0.7	5.2	14.0	27.7	43.6	65.2	103.8	164.8	268.7	661.9	135.5
	C06	0.5	4.5	12.5	24.6	38.2	58.4	93.3	151.1	253.5	642.7	127.9
	D01	0.5	4.5	11.6	22.9	34.6	52.3	87.2	143.7	243.5	623.8	122.4
현행과 차액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노동 공급 변화 가정	A01	-0.1	-0.4	-0.7	-1.3	-1.7	-1.8	-2.2	-2.2	-2.2	-2.8	-1.5
	A02	-0.1	-0.5	-1.2	-3.0	-4.0	-5.7	-6.7	-7.4	-9.0	-15.8	-5.3
	A03	-0.1	-0.6	-1.3	-1.9	-3.2	-3.9	-4.2	-5.1	-5.6	-8.8	-3.5
	A04	-0.1	-0.4	-0.9	-1.9	-3.7	-4.7	-6.3	-7.6	-8.3	-9.4	-4.3
	A05	-0.2	-0.8	-2.6	-5.4	-10.1	-13.9	-17.1	-20.5	-23.7	-35.5	-13.0
	B01	0	0	0	0	0	0	0	0	0	2.2	0.2
	B02	0	0	0	0	0	0	0	0	0	-3.3	-0.3
	B03	0	0	0	0	0	0	0	0	0	-2.3	-0.2
	B04	0	0	0	0	0	0	0	-1	-4.2	-18.9	-2.4
	C01	-0.2	-1.0	-2.3	-4.5	-7.3	-9.4	-14.1	-18.7	-22.2	-29.2	-10.9
	C02	-0.4	-1.9	-4.2	-8.2	-13.6	-17.8	-26.8	-36.4	-43.7	-57.3	-21.0
	C03	0.2	0.7	1.2	1.9	3.0	4.8	6.8	10.1	13.2	19.5	6.1
	C04	0.3	1.1	2.0	3.1	4.6	7.5	10.5	15.4	19.8	30.0	9.4
	C05	-0.1	-0.4	-1.2	-2.8	-4.9	-5.3	-8.0	-9.2	-9	-9.8	-5.1
	C06	-0.3	-1.1	-2.7	-5.9	-10.3	-12.1	-18.5	-22.9	-24.2	-29.0	-12.7
	D01	-0.3	-1.1	-3.5	-7.5	-13.9	-18.1	-24.6	-30.3	-34.2	-47.9	-18.2

V. 정책대안 모의실험 및 기대효과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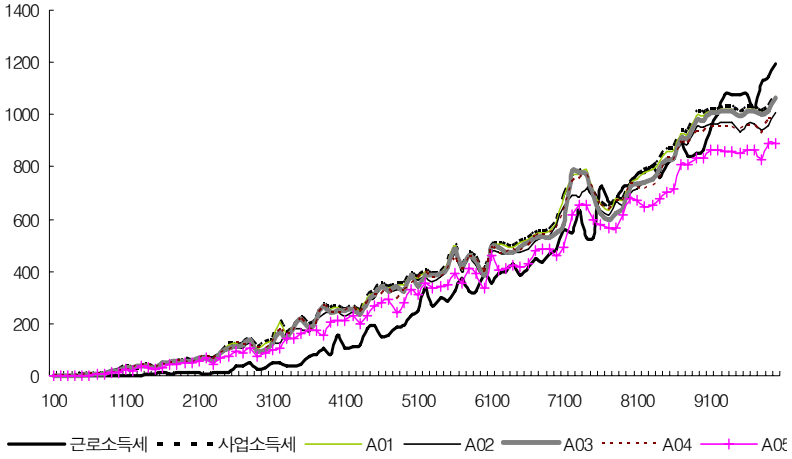
〈표 V-3〉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근로 · 사업소득세 부담의 현행 대비 변화율 분포

(단위: %)

변화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노동 공급 불변 가정	A01	-17.48	-7.42	-4.76	-4.63	-3.60	-2.70	-1.98	-1.28	-0.81	-0.42	-1.11
	A02	-19.40	-9.64	-8.45	-10.90	-8.96	-8.80	-6.42	-4.47	-3.34	-2.43	-3.96
	A03	-23.60	-11.25	-9.05	-6.75	-7.00	-5.91	-3.91	-3.04	-2.06	-1.35	-2.54
	A04	-18.18	-7.53	-6.51	-6.69	-8.33	-7.15	-6.04	-4.55	-3.10	-1.43	-3.20
	A05	-35.14	-16.35	-20.69	-21.91	-26.43	-24.74	-18.12	-13.35	-9.35	-5.65	-10.23
	B01	0	0	0	0	0	0	0	0	0	0.33	0.16
	B02	0	0	0	0	0	0	0	0	0	-0.49	-0.23
	B03	0	0	0	0	0	0	0	0	0	-0.34	-0.16
	B04	0	0	0	0	0	0	-0.04	-0.59	-1.55	-2.94	-1.77
	C01	-37.03	-21.95	-17.82	-17.35	-17.82	-15.54	-14.63	-12.19	-8.75	-4.64	-8.50
	C02	-95.97	-50.37	-38.12	-37.19	-39.3	-34.31	-32.17	-26.87	-18.84	-9.51	-17.83
	C03	19.03	10.50	7.59	6.11	5.89	6.43	5.94	5.55	4.61	2.90	4.27
	C04	30.29	15.79	11.61	9.33	8.97	9.74	8.85	8.25	6.77	4.40	6.42
	C05	-16.10	-8.28	-8.41	-10.01	-11.34	-8.15	-7.72	-5.62	-3.35	-1.52	-3.77
	C06	-50.13	-24.92	-21.85	-24.18	-27.31	-20.95	-20.12	-15.3	-9.58	-4.60	-10.04
	D01	-54.87	-25.57	-30.40	-32.73	-40.08	-34.47	-27.96	-21.03	-13.97	-7.57	-14.72
변화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노동 공급 변화 가정	A01	-17.48	-7.42	-4.76	-4.61	-3.59	-2.67	-1.97	-1.27	-0.81	-0.41	-1.11
	A02	-19.40	-9.64	-8.41	-10.80	-8.88	-8.74	-6.38	-4.46	-3.33	-2.41	-3.94
	A03	-23.55	-11.25	-9.00	-6.72	-6.97	-5.87	-3.89	-3.03	-2.06	-1.32	-2.52
	A04	-18.18	-7.53	-6.50	-6.64	-8.26	-7.12	-6.01	-4.55	-3.09	-1.42	-3.18
	A05	-35.14	-16.35	-20.62	-21.64	-26.14	-24.55	-18.03	-13.32	-9.31	-5.58	-10.15
	B01	0	0	0	0	0	0	0	0	0	0.33	0.16
	B02	0	0	0	0	0	0	0	0	0	-0.49	-0.23
	B03	0	0	0	0	0	0	0	0	0	-0.34	-0.16
	B04	0	0	0	0	0	0	-0.04	-0.59	-1.55	-2.89	-1.75
	C01	-37.03	-21.95	-17.75	-17.19	-17.61	-15.32	-14.38	-12.07	-8.68	-4.54	-8.38
	C02	-95.97	-50.37	-38.02	-36.73	-38.79	-33.85	-31.59	-26.45	-18.67	-9.32	-17.58
	C03	18.88	10.47	7.55	6.00	5.73	6.33	5.76	5.47	4.53	2.82	4.18
	C04	30.13	15.74	11.55	9.16	8.73	9.58	8.58	8.14	6.66	4.27	6.28
	C05	-16.27	-8.28	-8.38	-9.93	-11.30	-8.08	-7.68	-5.57	-3.35	-1.48	-3.74
	C06	-50.42	-24.93	-21.82	-23.93	-27.05	-20.68	-19.79	-15.14	-9.53	-4.52	-9.92
	D01	-55.18	-25.58	-30.44	-32.85	-40.26	-34.59	-28.19	-21.12	-14.05	-7.68	-1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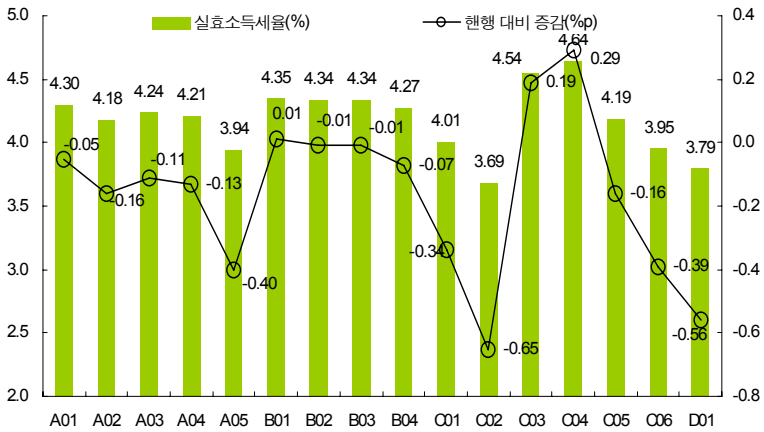
[그림 V-1] 사업소득세에 특별공제 허용시의 효과

(단위: 만원)



[그림 V-2] 시나리오별 실효소득세율의 변화효과

현행 대비 증감(%p)  
(단위: %, %p)



〈표 V-4〉 시나리오별 · 소득단계별 근로 · 사업소득세 실효세부담률  
부담 분포

(단위: %, %p)

실효세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현행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10	4.35	
노동 공급 불변 가정	A01	0.20	0.67	1.04	1.46	1.83	2.20	2.92	3.80	4.91	4.30	
	A02	0.20	0.65	1.01	1.37	1.74	2.08	2.80	3.69	4.79	4.18	
	A03	0.19	0.64	1.00	1.43	1.78	2.14	2.86	3.74	4.85	4.24	
	A04	0.20	0.67	1.03	1.43	1.75	2.11	2.81	3.68	4.80	4.21	
	A05	0.17	0.62	0.91	1.25	1.50	1.81	2.52	3.40	4.52	3.94	
	B01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12	4.35
	B02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06	4.34
	B03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07	4.34
	B04	0.23	0.72	1.09	1.52	1.90	2.26	2.97	3.83	4.87	7.86	4.27
	C01	0.17	0.59	0.93	1.3	1.61	1.96	2.59	3.43	4.55	7.73	4.00
	C02	0.12	0.48	0.79	1.11	1.36	1.68	2.25	3.03	4.16	7.39	3.68
	C03	0.29	0.8	1.18	1.62	2.02	2.42	3.16	4.08	5.19	8.34	4.54
	C04	0.34	0.85	1.24	1.68	2.09	2.51	3.27	4.20	5.31	8.47	4.65
	C05	0.20	0.66	1.01	1.39	1.71	2.09	2.76	3.65	4.79	7.97	4.19
	C06	0.16	0.57	0.90	1.23	1.49	1.87	2.47	3.34	4.51	7.74	3.95
	D01	0.15	0.57	0.84	1.15	1.36	1.68	2.33	3.18	4.34	7.53	3.79
현행과 차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노동 공급 불변 가정	A01	-0.03	-0.05	-0.05	-0.07	-0.07	-0.06	-0.06	-0.05	-0.04	-0.03	-0.05
	A02	-0.04	-0.06	-0.09	-0.15	-0.16	-0.18	-0.18	-0.16	-0.16	-0.19	-0.17
	A03	-0.04	-0.07	-0.09	-0.1	-0.12	-0.13	-0.11	-0.11	-0.10	-0.11	-0.11
	A04	-0.04	-0.05	-0.07	-0.1	-0.15	-0.15	-0.17	-0.17	-0.15	-0.11	-0.13
	A05	-0.06	-0.10	-0.19	-0.27	-0.4	-0.45	-0.46	-0.45	-0.42	-0.43	-0.40
	B01	0	0	0	0	0	0	0	0	0	0.03	0.01
	B02	0	0	0	0	0	0	0	0	0	-0.04	-0.01
	B03	0	0	0	0	0	0	0	0	0	-0.03	-0.01
	B04	0	0	0	0	0	0	0	-0.02	-0.08	-0.23	-0.08
	C01	-0.06	-0.13	-0.17	-0.23	-0.29	-0.30	-0.38	-0.42	-0.40	-0.36	-0.34
	C02	-0.11	-0.24	-0.30	-0.41	-0.54	-0.58	-0.72	-0.81	-0.78	-0.70	-0.66
	C03	0.05	0.08	0.09	0.10	0.12	0.16	0.19	0.23	0.24	0.24	0.19
	C04	0.10	0.13	0.14	0.16	0.19	0.24	0.29	0.35	0.36	0.37	0.30
	C05	-0.03	-0.05	-0.08	-0.14	-0.19	-0.17	-0.21	-0.20	-0.16	-0.12	-0.16
	C06	-0.08	-0.14	-0.20	-0.30	-0.41	-0.39	-0.50	-0.51	-0.43	-0.36	-0.40
	D01	-0.08	-0.15	-0.26	-0.38	-0.54	-0.58	-0.65	-0.67	-0.61	-0.57	-0.56

〈표 V-4〉의 계속

실효세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현행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10	4.35	
노동 공급 변화 가정	A01	0.20	0.67	1.04	1.46	1.83	2.21	2.92	3.80	4.91	8.06	4.30
	A02	0.20	0.65	1.01	1.38	1.74	2.08	2.80	3.69	4.79	7.91	4.18
	A03	0.19	0.64	1.00	1.43	1.78	2.14	2.86	3.74	4.85	7.99	4.24
	A04	0.20	0.67	1.03	1.43	1.75	2.11	2.81	3.68	4.80	7.98	4.21
	A05	0.17	0.62	0.91	1.25	1.50	1.82	2.52	3.40	4.52	7.67	3.94
	B01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12	4.35
	B02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06	4.34
	B03	0.23	0.72	1.09	1.52	1.90	2.26	2.98	3.85	4.95	8.07	4.34
	B04	0.23	0.72	1.09	1.52	1.90	2.26	2.97	3.83	4.87	7.87	4.27
	C01	0.17	0.59	0.93	1.30	1.61	1.96	2.60	3.43	4.55	7.74	4.01
	C02	0.12	0.48	0.79	1.11	1.37	1.69	2.26	3.04	4.16	7.40	3.69
	C03	0.29	0.80	1.18	1.62	2.02	2.42	3.16	4.08	5.18	8.33	4.54
	C04	0.33	0.85	1.24	1.68	2.08	2.51	3.26	4.19	5.30	8.46	4.64
	C05	0.20	0.66	1.01	1.39	1.71	2.09	2.76	3.65	4.79	7.98	4.19
	C06	0.16	0.57	0.90	1.23	1.49	1.87	2.48	3.34	4.51	7.74	3.95
	D01	0.15	0.57	0.84	1.15	1.36	1.68	2.32	3.18	4.34	7.52	3.79
현행과 차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노동 공급 변화 가정	A01	-0.03	-0.05	-0.05	-0.07	-0.07	-0.06	-0.06	-0.05	-0.04	-0.03	-0.05
	A02	-0.04	-0.06	-0.08	-0.15	-0.15	-0.18	-0.18	-0.16	-0.16	-0.19	-0.16
	A03	-0.04	-0.07	-0.09	-0.10	-0.12	-0.13	-0.11	-0.11	-0.10	-0.11	-0.11
	A04	-0.04	-0.05	-0.07	-0.09	-0.14	-0.15	-0.17	-0.17	-0.15	-0.11	-0.13
	A05	-0.06	-0.10	-0.19	-0.27	-0.39	-0.45	-0.45	-0.45	-0.42	-0.43	-0.40
	B01	0	0	0	0	0	0	0	0	0	0.03	0.01
	B02	0	0	0	0	0	0	0	0	0	-0.04	-0.01
	B03	0	0	0	0	0	0	0	0	0	-0.03	-0.01
	B04	0	0	0	0	0	0	0	-0.02	-0.08	-0.23	-0.07
	C01	-0.06	-0.13	-0.16	-0.22	-0.28	-0.3	-0.37	-0.41	-0.39	-0.35	-0.34
	C02	-0.11	-0.24	-0.3	-0.41	-0.53	-0.57	-0.71	-0.8	-0.78	-0.69	-0.65
	C03	0.05	0.08	0.09	0.10	0.12	0.15	0.18	0.22	0.23	0.24	0.19
	C04	0.10	0.13	0.14	0.15	0.18	0.24	0.28	0.34	0.35	0.36	0.29
	C05	-0.03	-0.05	-0.08	-0.14	-0.19	-0.17	-0.21	-0.20	-0.16	-0.12	-0.16
	C06	-0.08	-0.14	-0.20	-0.29	-0.4	-0.39	-0.49	-0.51	-0.43	-0.35	-0.39
	D01	-0.08	-0.15	-0.26	-0.38	-0.55	-0.58	-0.65	-0.67	-0.61	-0.58	-0.56

〈표 V-5〉 소득단계별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및 변화율 모의 실험 결과

(단위: %)

	지니계수	(GY' -MY) /MY	(DY-GY) /MY	(DY-GY) /MY	(DY-GY) /MY
시장소득	0.37400				
민간소득	0.35339				
민간소득+ 공적연금	0.34978				
총소득	0.33971	-9.17			
소득세후 소득	0.32816		-3.09		
A01	0.32815		-3.09	0.00	
A02	0.32835		-3.04	0.05	
A03	0.32823		-3.07	0.02	
A04	0.32828		-3.06	0.03	
A05	0.32865		-2.96	0.13	
B01	0.32812		-3.10	-0.01	
B02	0.32821		-3.07	0.01	
B03	0.32820		-3.08	0.01	
B04	0.32851		-2.99	0.09	
C01	0.32861		-2.97	0.12	
C02	0.32907		-2.84	0.24	
C03	0.32783		-3.18	-0.09	
C04	0.32766		-3.22	-0.13	
C05	0.32826		-3.06	0.03	
C06	0.32855		-2.98	0.10	
D01	0.32884		-2.91	0.18	

소득세후  
소득(DY)  
(노동공급  
불변  
가정)

〈표 V-5〉의 계속

		지니계수	(GY' -MY) /MY	(DY-GY) /MY	(DY-GY) /MY	(DY-GY) /MY
총소득 (GY') (노동등급 변화 가정)	A01	0.33971	-9.17			
	A02	0.33971	-9.17			
	A03	0.33971	-9.17			
	A04	0.33971	-9.17			
	A05	0.33972	-9.17			
	B01	0.33971	-9.17			
	B02	0.33971	-9.17			
	B03	0.33971	-9.17			
	B04	0.33973	-9.16			
	C01	0.33972	-9.17			
	C02	0.33975	-9.16			
	C03	0.33969	-9.17			
	C04	0.33968	-9.18			
	C05	0.33971	-9.17			
	C06	0.33970	-9.17			
	D01	0.33969	-9.17			
소득세후 소득 (DY') (노동공급 변화 가정)	A01	0.32815		-3.09	0.00	0.00
	A02	0.32835		-3.04	0.05	0.00
	A03	0.32823		-3.07	0.02	0.00
	A04	0.32828		-3.06	0.03	0.00
	A05	0.32865		-2.96	0.13	0.00
	B01	0.32812		-3.10	-0.01	0.00
	B02	0.32821		-3.07	0.01	0.00
	B03	0.32820		-3.08	0.01	0.00
	B04	0.32853		-2.99	0.09	0.00
	C01	0.32862		-2.97	0.12	0.00
	C02	0.32910		-2.85	0.24	0.00
	C03	0.32781		-3.18	-0.09	0.00
	C04	0.32764		-3.22	-0.13	0.00
	C05	0.32826		-3.06	0.03	0.00
C06	0.32854		-2.98	0.10	0.00	
D01	0.32882		-2.91	0.18	0.00	

## 나.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방안

제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소득보다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액소득자로 갈수록 전자의 소득공제율이 후자의 소득탈루율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적으로는 양자간의 세부담 역전을 통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는 본질적으로 특별공제나 현행의 근로소득공제제도만으로는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만약 고액사업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율을 거의 100% 수준으로 제고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고액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을 9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 그렇다면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한계소득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sup>39)</sup>.

최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연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60~85% 범주내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최대치로 볼 수 있는 85%를 놓고 볼 때, 고액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계)소득 공제율이 최소한 약 15%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의 문제를 한계근로소득 공제율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고액사업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한계근로소득공제율은 최대 1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액근로소득자의 범위는 시나리오별로 3천만원 초과~1억원 초과

39) 200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오히려 5%에서 1~3%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 문제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수평적 형평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 세법개정안에 나타난 부분도 B01안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B01)의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양자간의 세부담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고액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인하가 누진과세체계를 강화시켜 수직적 형평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수평적 형평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전자의 효과는 <표 V-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전·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 모두 소수점 아래 다섯 자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직적 형평 제고 효과는 실질적 의미보다는 형식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표 V-2>에서 보듯이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를 통한 세수증가 효과는 가구당 평균 2천원 수준에 남짓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의 효과는 [그림 V-3]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이 1억원 이상인 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여 양(+)<sup>1)</sup>의 값을 가지는 사업소득세 부담과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의 현행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주면 (B02~B04안), 사업소득자와 고액근로소득자간의 소득세 부담 역전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격차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뿐만 아니라 중위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도 일부 상향조정해주는 경우에 고액소득자에서의 세부담 불공평 현상이 더욱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수준에서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줄 때 그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도 그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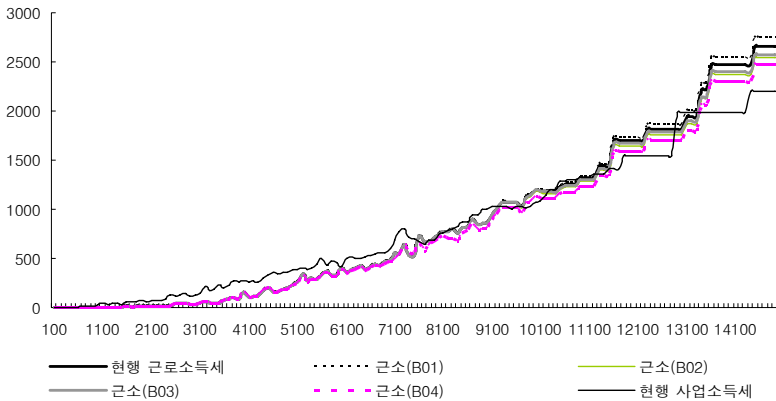
중소득 수준(약 3천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주는 경우(B04안 기준) 9~10분위에서 다소의 소득(노

동공급) 증가현상이 관찰된다(〈표 V-1〉참조). 다만 소득공제의 확대  
로 인해 근로·사업소득세의 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최대 2만 4천원 정  
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V-2〉참조). 그러나 절대 감소폭이 작  
아 실효세부담률의 변화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칠 정도로 매우 미  
미하다([그림 V-2] 참조). 따라서 소득재분배효과, 즉 지니계수 변화  
효과도 매우 미미하다(〈표 V-5〉참조).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시 노동공급의 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효과는 대부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V-3]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율 개편시의 효과

(단위: 만원)



#### 다.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하향조정 방안

가구규모<sup>40)</sup>가 커질 때 소득공제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

40) 보다 정확히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부양가족의 수(규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다만 가구규모와 소득공제허용 부양가족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편의상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조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세제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최소한 소득세제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자극하거나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거나 또는 비록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작은 수준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소득공제 수준이 가구규모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비중에 클수록 소득세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축소됨은 물론이다.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수준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차이 중 상당부분은 세부담의 수평적 공정성 제고에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득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구규모 차이에 의한 소득공제, 즉 기본공제 등의 인적공제가 공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약 7천만원 수준을 경계로 그 이하의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탈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부담이 더 과중한 반면, 그 이상의 고액소득자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더 과중해지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본항에서는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달라지는 소득공제(기본공제)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그렇지 않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의 비중을 낮추는 경우의 효과를 살펴본다<sup>41)</sup>.

이를 위해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의 15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주는 한편,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재의 80%에서 60% 또는 50% 수준으로 낮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위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제제도의 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효과 분석은 하지 않기로 한다.

는 경우의 효과를 살펴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를 확대하면 세부담이 가시적으로 감소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양자의 조합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므로 B05~B06안을 살펴보자. 이 경우 현행 세제하에서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세부담이 소폭 하락하여 각각의 세부담 곡선이 현행보다 조금 아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V-4] 참조).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축소효과만 나타남으로써 현행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낮다([그림 V-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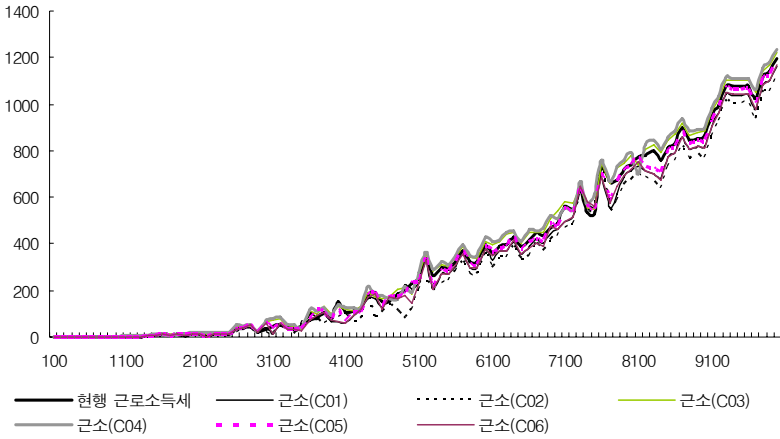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에서 60%로 인하하는 C05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부담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V-6] 참조). 그 결과 근로소득세 부담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사업소득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양자간의 세부담 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세부담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고액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부담의 경감이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대적 격차(또는 불공평)를 다소 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방안에 따른 소득 변화효과와 세수효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먼저 기본공제만을 확대하는 C01~C02안의 경우에는 한계세율 인하에 따른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가구당 평균 1.8만~3.6만원의 소득증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V-1〉참조). 소득공제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세수를 감소시켜 각각 11만원과 21만 3천원의 세수감소효과를 나타내지만, 소득증가로 인해 일부가 보전되어 최종적인 세수감소 효과는 가구당 평균 10만 9천원과 21만원으로 약간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근로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C03~C04안의 경우에는 1.1만~1.7만원의 소득감소와 6.1~9.4만원의 세수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방안을 결합한 C05~C06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어 소득은 평균 0.5만~1.8만원 증가하고 세수는 5.1만~12.7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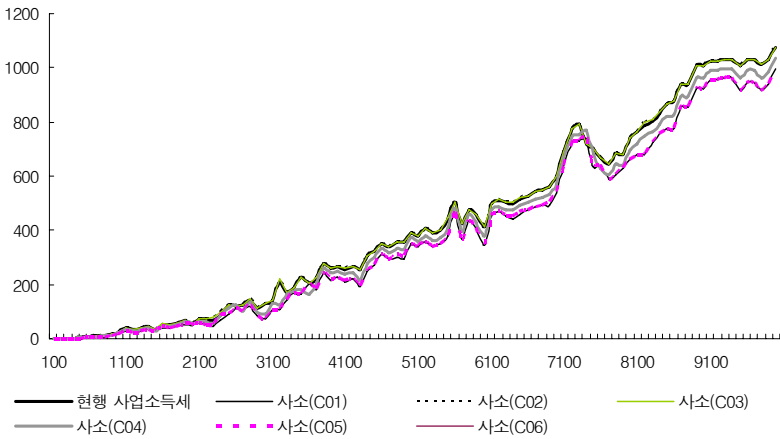
[그림 V-4]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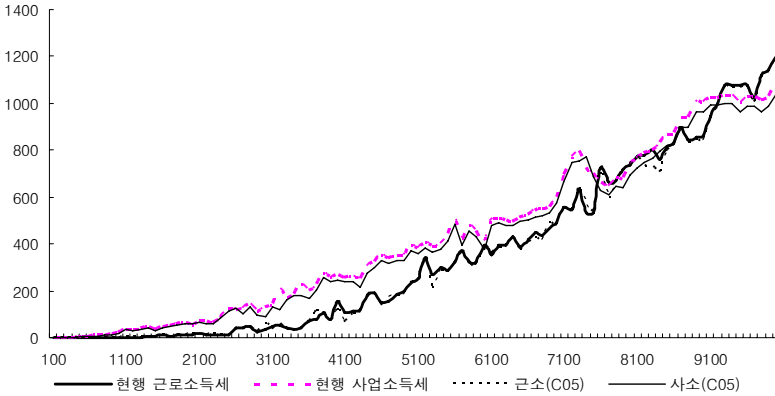
[그림 V-5]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I

(단위: 만원)



[그림 V-6]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시의 효과 III

(단위: 만원)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소득세수가 증가하는 C03~C04안의 경우에는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현행보다 작은 값을 지니게 되어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V-5〉참조).

### 라. 정책조합

위의 가~다항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최근의 과세환경 변화<sup>42)</sup>에 대응하여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 제고의 관점에서 공제체계의 개편방안을 논의한다면, 사업소득세의 과표양성화 진전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의 차등폭 축소, 그리고 고액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 세부담 역차별 현상의 완화를 위한 최고한계 근로소득공제를 상향조정, 기본공제의 중하위 근로소득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를 하향조정 등의 방향으로 압축된다. 이런 배경하에서 D01안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D01안에서 특징적인 점은, 사업소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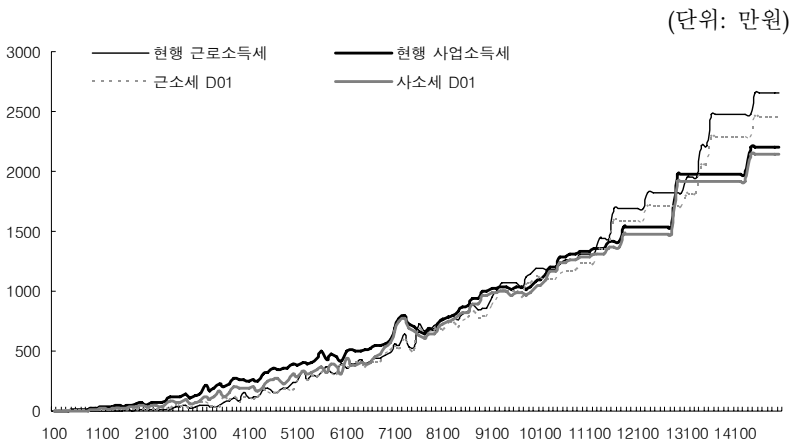
42) 사업소득세의 과표양성화 등이 대표적인 환경변화의 예이다.

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주되, 고액소득자에서의 근로소득자 역차별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특별공제의 허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조합하여 시행한 경우 노동공급의 가감현상이 복합되어 최종적으로는 가구당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3,235.0만원에서 3,233.9만원으로 1만 1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감소율로는 0.03%에 불과하며 그 차이는 상당히 작다(〈표 V-1〉참조). 그러나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사이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상당부분 공제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소득세 평균 부담액은 현행의 140.6만원에서 122.6만원으로 18만 2천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담 감소율은 14.8%로 상당히 큰 수준이다(〈표 V-2〉참조). 이에 따라 실효소득세부담률도 현행의 4.35%에서 3.79%로 0.5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V-4〉참조).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현행의 0.32816에서 0.32882로 소폭 상승하여 근로·사업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3.09%에서 2.91%로 0.1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V-5〉참조).

[그림 V-7] 정책조합(D01)의 효과



### 3. 정책시사점

앞에서는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에 주목하여 근로·사업소득세의 공제체계 개편을 위한 각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고 과세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수준의 전반적·대폭적인 축소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편이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만큼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명재·박상원(2008)에서 제안하였듯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득공제 및 세율구간 등에 대한 물가연동제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는 중상위소득자 및 그 이하 구간에서의 상대적인 사업소득세 부담 과중, 고소득자에서의 상대적인 근로소득세 부담 과중(또는 역차별) 현상이 문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공제의 축소가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공제 조정을 통해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제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세수감소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sup>43)</sup>이므로, 현재의 소득세율이 넓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조정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는 D01안이 논리적·실증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세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변

43) 세경감에 의한 노동공급 및 소득증가 현상이 매우 탄력적이라면 반대의 현상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동공급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런 경우에는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화된 과세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유형간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화함에 있어 이 문제를 한 번의 개편으로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련의 기존 연구결과와 결부시켜볼 때, 소득공제체계와 관련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위에서 분석한 공제개편 방안을 2~3차례에 나누어 점진적·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개편하면서 개편 후에는 물가연동제로 연결되어 소득종류간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VI. 맺음말

본 연구의 주된 연구목적은 소득종류간 소득세 부담의 불균형 또는 불공평 문제를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중 상당부분이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거의 대부분이 세원이 노출되어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포착률)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양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공제 체계에 차등을 둬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현저한 차이로 소득공제를 적게 허용함으로써 소득신고율 차이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 가능성을 완화하려는 것을 다분히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징세 노력이 강화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이 고양되면서 사업소득 포착률이 빠르게 상승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업소득 포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범위는 대동소이하다. 이는 곧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만약 사업소득 신고율의 상승폭이 충분히 크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의 세부담 공평성 증진을 위해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게 적용해오던 기존의 소득세체계가 역으로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근로소득에 비해 더 과중하게 하는 역차별 현상을 나타내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업소득 과표양성화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담을 병렬시켜 비교해 본 결과, 소득수준 7천만원 이하에서는 후자의 세부담이 높은 반면 9천만원 이상의 영역에서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앞의 경우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사업소득세 부담의 역차별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의 사업소득 과표양성화의 급진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은 세부담이 급증한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이 하나의 해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부만의 소득이 과세당국에 신고되기 때문에 낮은 소득공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액소득자로 갈수록 실질적 의미에서의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반영한 상태에서 법정 최고세율과 거의 동일하게 한계세율이 유진된다. 이런 점에서 세부담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소득의 탈루는 결과적인 의미에서 해석해볼 때 일종의 소득공제와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근로소득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5%의 근로소득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세법상 그에 대응한 소득공제제도는 없다. 그러나 고액사업소득자들이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과표탈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탈세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 소득탈루는 세부담상 소득공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 특히 고액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평균적으로 최소한 5%보다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최고소득층에서는 근로소

득자보다 사업소득자가 소득탈루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일종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과세소득 포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다면 소득 포착이 완전하지 않게 이루어짐에 따라 야기되는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도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액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신고포착률을 충분히 높이든가 또는 고액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줌으로써 양자간의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앞의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소득포착률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자의 방법이 단기적·잠정적으로는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출산이나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소득세의 소득공제 문제를 구체화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교한 분석에 기반하여 분석결과를 예측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 추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급진전에 대응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소득체계에서는 가구원 수, 또는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른 요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의 차이가 곧바로 정책시사점과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실효세부담률 대비 가구규모별 실효세부담률의 비율이 대가구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소득세제가 저출산 또는 고령화에 대응한 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현행 세제하에서 가구규모가 커지더라도 기본공제와 같은 인적공제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적절히 중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세원 축소를 통한 세수감소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소득공제

와 같이 공제에 따른 세원감소 효과가 큰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제고되면서 추정사업소득이 대략 7천만원 부근 및 그 이하의 소득수준에서는 사업소득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범위 확대가 요망된다. 의료비특별공제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최고소득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액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 격차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인적공제를 확대하되 중·저소득 수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약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리만으로 소득세 소득공제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두 제기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역차별 가능성과, 고액근로소득자들의 역차별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곽태원·현진권, 『조세론』 제2판, 법문사, 2007.
- 김우철·민희철·박상원,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한 동등화지수 연구』, 연구보고서 06-10,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김현숙, 「우리나라 가구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소득세를 고려한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 『재정학연구』, 제2권, 제1호(통권 제61호), 한국재정학회, 2009, pp. 1~37.
- 김현숙·성명재,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제12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7, pp. 1~43.
- 김현숙·원종학, 『여성노동공급과 조세·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04,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연구보고서 07-06,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박창균·현진권,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실험 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경제학연구』, 제50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2, pp. 145~171.
- 성명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정책보고서 99-05,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분석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7, pp. 295~336.

- \_\_\_\_\_,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통권 제56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 155~188.
- 성명재 · 박상원,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연구』, 연구보고서 08-02,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성명재 · 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98-02,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우석진 · 민희철, 『출산을 제고와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한 조세 · 재정 정책: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연구보고서 07-03,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이철인,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 · 재정정책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전병목 · 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7,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전병목 · 이상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 『EITC 정책토론회자료』, 2006.
- 전병목 · 원종학, 『근로소득세의 공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03-03,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전영준, 「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 1~36.
- 전영준 · 김재진,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 현진권 · 김용대,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2003.
- Avery, Robert B., Gregory E. Elliehausen, and Thomas A. Gustafson,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in Household

- Portfolis: Evidence from the 1983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avings and Capital Formation: The Policy Options*, edited by F. Gerald Adams and Susan M. Wachter, Lexington, Mass.:Lexington Books, 1986.
- Blinder, Alan S., Roger H. Gordon, and Donald E. Wise, “Reconsidering the Work Disincentive Effects of Social Security,” *National Tax Journal*, Vol. 33, No. 4 December, 1986, pp. 431~442.
- Cagan, Phillip, “The Effect of Pension Plans on Aggregate Savings: Evidence from a Sample Survey,” Occasional Paper, No. 9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NBER), 1965.
- Diamond, Peter A. and Jerry A. Hausman, “Individual Retirement and Savings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3, No. 1/2 (February/March), 1984, pp. 81~114.
- Dicks-Mireaux, Louis, and Mervyn A. King, “Pension Wealth and Household Savings: Tests of Robustnes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3, No. 1/2 (February/March), 1984, pp. 115~139.
- Edgeworth, “The Pure Theory of Taxation,” Reprinted in *Readings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Richard A. Musgrave and Carl S. Shoup (eds.), IL: Irwin, 1959/1897.
- Engen, Eric M., and William G. Gale, “Debt, Taxes, and the Effects of 401(k) Plans on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Unpublished Manuscript,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97.
- Gale, William G., “The Effects of Pensions on Household Wealth: A Reevaluation of Theory and Evidence,” *Journal*

-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 4, 1998, pp. 706~723.
- Greene and Mcclland, "Taxes and Charitable Giving," *National Tax Journal* 55, 2001, pp. 433~454.
- Gruber and Saez,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Evidence and Implic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4, 2002, pp. 1~33.
- Hall, Robert and Alvin Arbushka, *The Flat Tax*,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 Hausman, J., "Labor Supply," in Aaron H. and Pechman, J (eds),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Brookings, Washington D.C., 1981.
- Hubbard, R. Glenn, "Pension Wealth and Individual Saving: Some New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8, No. 2 (May), 1986, pp. 167~178.
- Kotona, George, *Private Pensions and Individual Saving*, Ann Arbor: Univ.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1965.
- Kotlikoff, Laurence J., "Testing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nd Life Cycle Accu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9, No. 3 (June), 1979, pp. 396~410.
- Kotlikoff, Laurence J., Jagadeesh Gokhale and John Sabelhaus, "Understanding the Postwar Decline in U.S. Saving: A Cohort Analysis," NBER Working Paper, No. 5571, 1996.
- Kotlikoff, Laurence and Willi Leibfritz,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enerational Accounts," Auerbach, Alan, Laurence Kotlikoff and Willi Leibfritz(ed).,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9.

- Lee , Chul-In,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Welfare: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IV Estim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20, No. 2, 2004.
- Lee, Myungheon and Young Jun Chun,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University of Incheon, 2005.
- Mirrlees, “An Exploration in the Theory of Optimum Income Taxation,” *Review of Economics Studies* 38, 1971, pp. 175 ~208.
- Moffitt, R., “The Econometrics of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 Survey and Exposition of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4, 1986, pp. 317 ~327.
- \_\_\_\_\_, “The Econometrics of Kinked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4, No. 2, 1990, pp. 119~139.
- Munnell, Alicia H.,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Personal Savings*, Cambridge, Mass. Ballinger, 1974.
- \_\_\_\_\_, “Private Pensions and Saving: New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No. 5 (October), 1976, pp. 1013~1032.
- Rosen, Harvey S.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8th edition, McGraw Hill, 2007.
- Samwick, Andrew A., “The Limited Offset between Pension Wealth and Other Private Wealth: Implications of Buffer-Stock Saving”, Manuscript, Hanover, N.H.: Dartmouth Coll, 1995.
- Stern, Nicholas, “The Theory of Opimal Comodity and Income

Taxation: An Introduction.,” in *The Theory of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David Newverry and Nicholas Stern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Venti, Steven F. and David A Wise, “The Wealth of Cohorts: Retirement Saving and the Changing Assets of Older Americans,” NBER Working Paper, No. 5609.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6.

## 부록: 기타 표

〈부표 1〉 가구원 수별 전체 평균 소득세실효세율 대비 소득세실효세율  
상대비 ÷ 전체 평균총소득 대비 총소득 상대비의 분포(가구 기준)  
(단위: 배)

	1	2	3	4	5	6	7	8+	평균
1982		1.030	0.932	0.995	1.026	0.889	0.964	1.026	1
1983		0.976	0.870	1.017	1.025	0.984	0.862	0.797	1
1984		0.970	0.805	1.066	0.970	0.980	0.999	0.803	1
1985		0.748	0.859	1.031	1.026	0.937	1.068	0.762	1
1986		0.861	0.913	1.057	0.939	0.967	0.912	1.019	1
1987		0.940	0.987	1.011	1.015	0.925	0.764	0.658	1
1988		0.965	0.968	1.037	0.986	0.843	0.844	0.739	1
1989		0.932	0.980	1.085	0.929	0.824	0.856	0.759	1
1990		0.840	1.020	1.066	0.957	0.826	0.949	0.591	1
1991		0.837	0.869	1.051	1.065	0.852	0.767	0.743	1
1992		0.827	0.954	1.071	0.967	0.861	0.880	0.726	1
1993		0.849	1.033	1.019	0.958	0.764	1.016	1.065	1
1994		0.902	0.993	1.026	0.973	0.803	0.974	0.863	1
1995		0.883	1.016	1.059	0.905	0.771	0.966	0.871	1
1996		0.953	0.986	1.082	0.856	0.715	0.714	0.789	1
1997		1.063	1.045	1.019	0.893	0.668	0.658	0.736	1
1998		1.194	1.084	0.974	0.854	0.770	0.741	0.568	1
1999		0.835	0.988	1.052	0.929	0.798	0.708	0.631	1
2000		1.023	1.003	1.006	0.947	0.723	0.861	0.753	1
2001		0.883	0.977	1.027	0.901	0.942	0.866	0.827	1
2002		0.968	0.993	1.031	0.877	0.869	0.720	0.976	1
2003		0.976	0.974	1.012	0.933	0.740	0.766	0.654	1
2004		1.061	0.956	1.043	0.827	0.673	0.584	0.821	1
2005		1.038	0.940	1.004	0.877	0.801	1.105	1.087	1
2006	1.271	0.908	0.902	0.961	0.831	0.757	0.431	0.621	1
2007	1.273	0.915	0.942	0.937	0.738	0.675	0.898	0.507	1
2008	1.236	0.953	0.924	0.907	0.793	0.751	0.869	0.622	1

주: 위의 상대비는  $\frac{\text{가구원 수별 실효세율}}{\text{전체 평균 실효세율}} \div \frac{\text{가구원 수별 평균 총소득}}{\text{전체 평균 총소득}}$  을 나타냄.

## 〈부표 2〉 가구원 수별 총소득 분포(가구 기준)

(단위: 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평균
1982	0	2,887	3,248	3,765	4,205	4,648	4,877	5,190	3,954
1983	0	3,022	3,684	4,083	4,671	5,200	5,684	5,302	4,333
1984	0	3,609	3,941	4,746	5,197	5,742	6,327	6,206	4,820
1985	0	3,320	4,240	5,064	5,579	5,644	6,475	6,858	5,030
1986	0	4,096	4,833	5,856	6,129	6,754	7,342	8,307	5,735
1987	0	4,604	5,652	6,800	7,558	8,451	8,512	9,197	6,730
1988	0	5,708	6,585	8,064	9,300	9,726	10,426	12,330	8,052
1989	0	7,108	8,402	9,845	11,174	11,729	13,832	13,597	9,813
1990	0	8,527	10,054	11,760	12,909	13,979	16,094	16,513	11,655
1991	0	10,769	12,070	14,045	16,125	17,282	18,362	19,803	14,128
1992	0	12,604	14,208	16,498	18,532	21,028	21,439	20,099	16,445
1993	0	13,205	16,250	18,121	20,067	20,917	24,127	29,443	17,771
1994	0	14,745	18,642	20,822	22,669	25,346	25,644	33,054	20,214
1995	0	17,744	20,962	23,813	25,895	27,613	31,906	34,605	23,003
1996	0	19,262	23,715	26,954	28,829	33,289	33,109	40,642	25,745
1997	0	17,913	23,999	28,209	31,006	31,403	35,441	51,860	26,299
1998	0	14,710	21,175	24,662	27,458	31,625	31,429	33,927	23,036
1999	0	18,338	23,688	27,652	29,219	32,196	34,294	41,183	25,708
2000	0	22,005	25,684	31,506	34,181	35,758	35,499	37,275	29,017
2001	0	21,937	28,125	33,259	35,197	38,858	38,621	43,405	30,376
2002	0	24,373	31,696	35,050	38,187	42,249	39,090	38,530	32,593
2003	0	25,108	34,529	38,819	43,409	44,963	47,230	50,156	35,566
2004	0	28,088	36,148	42,686	45,841	48,552	58,072	63,909	38,282
2005	0	28,619	38,818	44,420	48,042	49,254	64,222	63,241	39,804
2006	17606	29,453	40,933	46,560	48,831	50,958	43,196	59,300	37,455
2007	18354	30,346	42,965	49,032	52,207	54,017	70,328	40,887	38,602
2008	18111	31,774	42,901	51,220	53,205	53,658	60,714	37,005	39,324

주: 1982~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전가구 기준임. 단,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함.

<국문요약>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성명재 · 전영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인적공제 비중이 작은 반면에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 등 가구규모 등과 관련이 적은 공제 비중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가구규모(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인적공제 비중이 낮아 출산 및 다가구 원가구 장려 효과가 작다. 이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 공제체계의 기본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적용 범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득유형간 공제 차이에 따른 실효소득세 부담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를테면 사업소득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별로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크게 과중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신고 성실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제체계는 한 때 소득유형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컸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필요성과 공제 차등적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제고되면서 소득 7천만원 부근 및 그 이하에서는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가 요망된다. 의료비 특별공제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고액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인적공제를 확대하되 중·저소득 수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약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 Study on Income Deduction System of Personal Income Taxation in Korea

Myung Jae Sung & Young Jun Chun

Korean personal income tax (PIT)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its low levels of income deductions depending on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lso by its relatively large scales of other deductions. Therefore, PIT burdens hardly vary with the household sizes and do not show the economies of scale in Korea.

Low levels of such deductions generally yield limited effects on child-births and do not sufficiently encourage to foster big families with many young dependents, i.e. children, and/or the old. In this sense, it is recommended to reform the deduction structure of PIT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low child-births and rapid population aging.

There exists a huge differential in PIT burdens between wage/salary income and business income of self-employed due to the asymmetric applications of income deductions. Only basic deduction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allowed to business income, whereas various income deductions including basic deductions are applied to wage/salary incomes. Differentials in income deductions between various types of incomes aim to balance consequential PIT burdens between incomes, due to the much lower income reporting rates of business income earners, while almost all wage/salary incomes are reported to the tax authorities in the course

of tax filing with withholding taxes by employers.

Recently, however, the share of business income reported to the tax authorities has risen remarkably since 2000 when the National Tax Service introduced many systems to promote income reporting rates such as receipt lotteries and additional income deductions for credit card usages and cash receipts.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tax environment, PIT burden of business income becomes heavier than that of wage/salary incomes. In order to mitigate the revised differentials in PIT burdens, it is recommended to allow more income deductions to business income: a special deduction for medical expenses is a good candidate.

In the short-run, it is desirable to raise the income deduction rates applied to high wage/salary income earners, because their PIT burden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business income. Considering low-births and rapid aging problems,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basic deduction levels together with the reduction of wage/salary income deductions.

## 〈著者略歷〉

### 성명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준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研究報告書 09-02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

---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성명재·전영준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45-5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